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2년 봄(Vol. 9 No. 1) |

목 차

»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화 03
-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06

2. 미국

- 2021 회계연도 성과 및 책임 보고서 10
- 부적정 지출 데이터 업데이트 13
-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대통령 관리 의제(PMA) 발표 16
- 증거기반 정책수립: 성과정보 활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22

3. 영국

- 2021년 지출검토 28
- 정부지출평가 보고서 35

4. 호주

- 영연방 평가정책 및 수단 41
-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뉴스레터 발간 44

5. 뉴질랜드

- 2020-21년 중앙정부 성과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50
- 서비스 성과보고를 위한 새로운 기준 54
-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 60
- 성과 보고의 문제, 진행 상황 및 가능성 65

| | |
|---------------------------------|----|
| 6. 아일랜드 | |
| • 2021년 지출검토 보고서 | 71 |
| • 2021년 연례 컨퍼런스 | 75 |
| 7. 캐나다 | |
| • 2020-2021 부처별 결과보고서 발간 | 78 |
| 8. 독일 | |
| • 연방정부의 디지털 정책 전략 조정 및 관리 | 79 |

» II.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 | |
|--|----|
| 1. 국제기구 | |
| • G20 국가의 성인지 예산 | 85 |
|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 90 |
| 2. 국제회의 | |
| • 2021년 제10차 KIPF 정부성과관리 국제포럼: COVID-19 회복과정에서의 재정관리 | 94 |

» III.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 | |
|--|-----|
| 1. 국내연구 동향 | |
|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 103 |

목 차

» IV. 국가계약 동향

1. 국내 동향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022~2024년)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114
-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

2. 국외 동향

- 국방조달 연례평가와 우주 지휘통제체계 사업 연례 성과보고 향상을 위한
기회의 확인 125
- 공공조달 개혁 135
- 공공조달 개혁: 자문에 대한 답변 161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CONTENTS

- | | |
|-------|---------|
| 1. 한국 | 5. 뉴질랜드 |
| 2. 미국 | 6. 아일랜드 |
| 3. 영국 | 7. 캐나다 |
| 4. 호주 | 8. 독일 |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12.21일 공포·시행 –
– 2021. 12. 21., 기획재정부 –

■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¹⁾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12.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재정법 개정은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재정 성과관리가 최소한의 법 조항*으로만 운영되어 효율적 자원배분, 실효성 있는 제도운용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추진됨

*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 국가재정법에 재정 성과관리 핵심사항을 예산, 결산 등과 같이 별도의 장(章)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과관리 기본법으로서의 일반규정 신설(제85조2~4)>

■ (성과관리 개념 명확화)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을 명시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함

* 매년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를 관리

1) 4대 재정개혁 과제(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중기재정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 중 하나로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제도.

** 재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

- (성과관리 추진방향 제시)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성과계획서·보고서와 성과평가 제도 간 종합·연계된 정책 수립을 통해 제도 실효성과 부처 예측 가능성을 높임

〈성과관리제도 운영 효율화(제85조5~9)〉

- (평가부담 경감) 평가제도 간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평가 부처의 부담은 낮추고, 예산 환류는 강화함
 - 현재 다수의 재정평가제도가 운용 중
 - (국가재정법)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등
 - (개별 법령) 일자리사업·중소기업지원사업·복권기금사업 평가 등

- (추진체계 강화) 부처 고위급 중심의 추진체계*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

* 각 부처 내 재정성과책임관(총괄책임자), 성과운영관(책임관 보좌) 등 지정

〈성과정보의 활용 및 공개(제85조10~12)〉

- ① (성과정보 관리·공개) 부처별로 분산된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성과정보를 공개함
- ② (결과보고·활용)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성과관리 결과를 예산 등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반영, 성과관리에 따른 표창 등

-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22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효율적 추진방안을 담은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대폭 체계화됩니다」, 2021. 12. 21.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 부담 경감 및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 2021. 12. 28., 기획재정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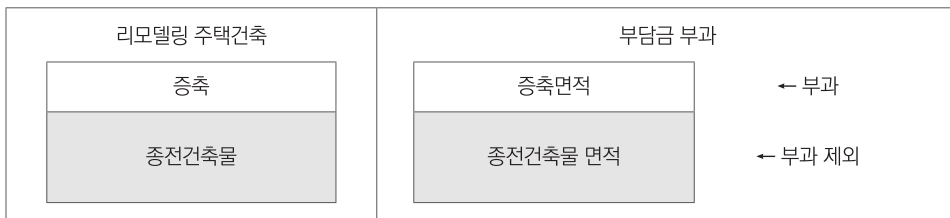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²⁾를 주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번 회의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등 의결 7건과 「'21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상정된 제도개선 안건들은 국민부담의 합리적 경감,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여건 변화 등에 맞게 부담금 부과 대상·기준 현실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마련됨

〈안건 주요내용〉

- 첫 번째,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 안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사업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금 산정 시,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중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 -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그림 1] 개정 후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금 부과



2)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 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 두 번째, 부담금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도 향상 안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의 의결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21년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22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1,914,440원, 전년대비 +5%)에 맞추어 변경고시((1,094→1,149천원)함
 - 이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동 부담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편
 - 외국환거래 촉진 및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를 보완
 - ① 공제 시 실수요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 우대* ② 위안화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 변경, ③ 공제 한도 조정 (30%→20%)
 - * 공제금액: (기존) 시장 거래금액×2 → (개편) 시장 거래금액×1.5 + 대고객 거래금액×50
 -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Le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공제 신설
 - 이번 공제제도 개편이 달러 이외로의 결제통화 다변화,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 유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세 번째, 여건 변화에 맞춰 부담금 부과기준·대상 합리화 안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추가 (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협력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개정('21.1) 함
 - 이는 시행령에서 지역계수를 개정하는 건으로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생태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범위 규정(안)’은 「지하수법」 개정('21.1)으로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감면기준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적정수준의 지하수 보전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네 번째,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안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은 매년 초지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측량비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입기준액을 변경 고시함
 - 금년에는 초지면적의 지속 감소로 기존 초지보전 및 대체초지 확보를 위해 납입기준액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3년간 동결되어 온 납입기준액을 현실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 제공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징수하며,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을 변경 고시함
 - 금년에는 ‘전년도 업무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일부 ‘기준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기준단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토록 수정의결함

〈표 1〉 부과기준 변경안

| 규제전문기관 | 부과대상 | 전년도 업무량(MD) | | | 기준단가(원) | | |
|----------------|------|-------------|---------|---------|---------|---------|---------|
| | | '21년(B) | '22년(B) | 증감(B-A) | '21년(A) | '22년(B) | 증감(B-A) |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발전용 | 94,044 | 94,464 | 420 | 975,878 | 959,774 | △16,104 |
| | 발전용외 | 14,118 | 21,484 | 7,366 | 407,200 | 400,500 | △6,700 |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발전용 | 13,447 | 13,320 | △127 | 764,121 | 768,751 | 4,630 |
| | 발전용외 | 1,724 | 1,585 | △139 | 318,800 | 320,800 | 2,000 |
| 한국원자력의학원 | 발전용 | 1,924 | 1,850 | △74 | 781,806 | 765,214 | △16,592 |
| | 발전용외 | 117 | 117 | - | 326,200 | 319,300 | △6,900 |

주: MD는 규제전문기관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Man)에 근무일수(Day)를 곱한 값

- ‘21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의 보고는 국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적절한 운용 등 점검을 위해 전체 90개 부담금 중 분야별로 매년 3분의 1씩 평가함
 - 금년은 농림, 보건, 외교, 고용, 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14명)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
 - 평가단에서는 준치 여부 재검토,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및 권리규제절차 마련 등 크게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
 - 정부에서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임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 12. 28.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2. 미국

2021 회계연도 성과 및 책임 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2021. 11. 15.,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 GAO의 주요 임무는 의회가 헌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목표로 연방 정부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본 보고서는 미 의회와 납세자를 위해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에 대한 감사원(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성과 측정, 결과 및 책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임
- 감사원의 2021 회계연도의 주요 업적은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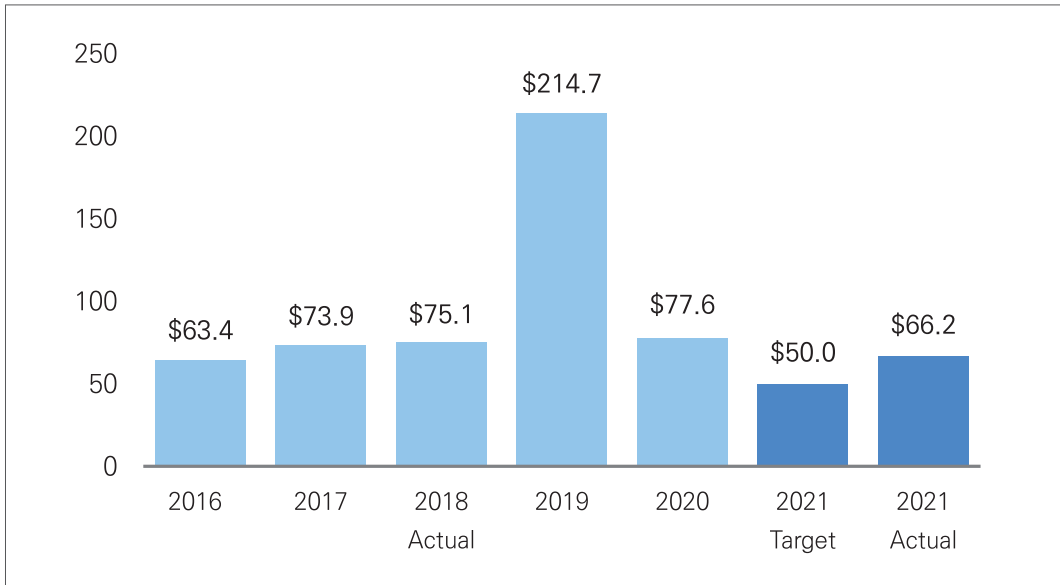
[그림 1] 숫자로 보는 2021 회계연도 업적



자료: GAO, <https://www.gao.gov/products/gao-20-1sp>, 검색일자: 2022. 1. 28

[그림 2] GAO의 재정성과

(단위: 백만달러)



자료: GA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2021, 2021, p.31

■ 2021년 GAO가 달성한 재정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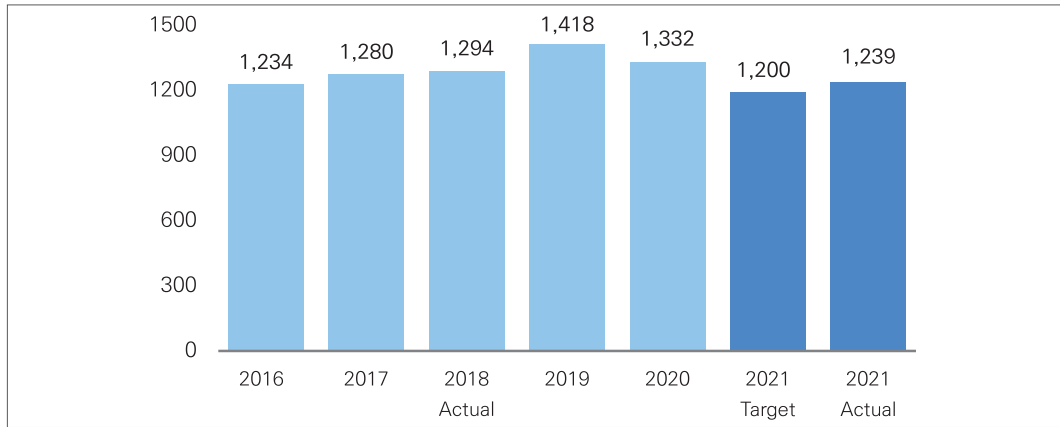
- GAO가 발견한 문제와 이에 따른 해결안을 바탕으로 의회가 적합한 조치를 하면 불필요한 정부지출의 감소나, 기금의 재할당 등 재정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2021년 GAO의 활동으로 인하여 약 662억달러의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목표치였던 500억달러를 162억달러 초과 달성한 금액임

■ 2021년 GAO가 달성한 비재정성과

- 비재정적 성과는 당초 목표했던 1,200건을 초과하여 1,239건을 달성하였으며, 목표달성건수 중 공공안전 및 보안(37%)과 비즈니스 절차 및 관리(31%)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공공안전 및 보안: 국토보안 및 사법 프로그램, 정보보안, 식품 안전, 통신 안전, 국제 식품 안전, 공중보건, 소비자 보호, 환경, 국방, 외교정책, 국제무역 등을 포함
 - 비즈니스 절차 및 관리: 연방 재무 보고, 연방 정보 시스템, 연방 부동산, 인적자본 관리 및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DOD)사업, 비즈니스 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포함

[그림 3] 연도별 비재정성과 달성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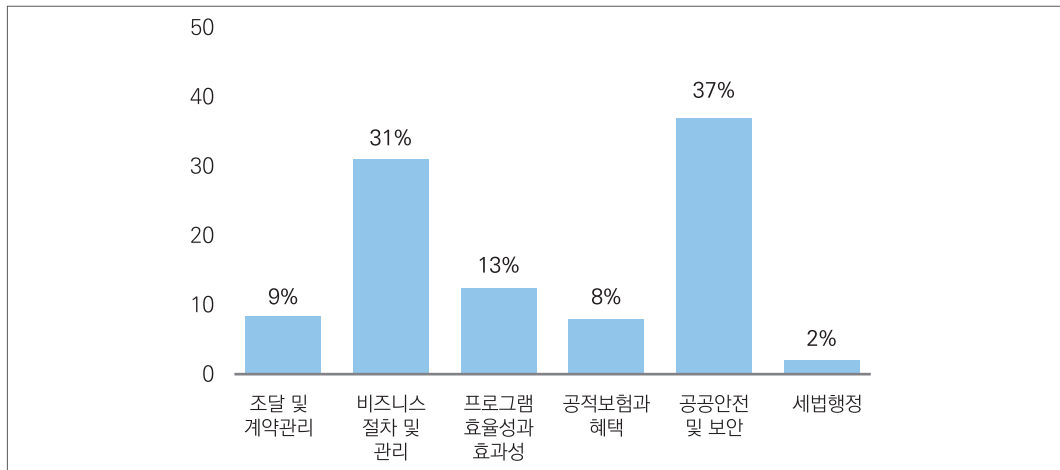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GA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2021, 2021, p,34

[그림 4] 영역별 비재정성과 달성 구성

(단위: %)



자료: GA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2021, 2021, p,34

참고자료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2021, 2021, <https://www.gao.gov/products/gao-22-4sp>, 검색일자: 2022. 1. 28.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부적정 지출 데이터 업데이트

Updated Data on Improper Payments

– 2021. 12., 미국 OMB –

1. 검토 배경

-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는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례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지출이나 잘못된 금액으로 지불된 지출을 의미함
 - 여기에는 초과지급, 과소납부 또는 적절한 수령인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지불이 포함됨
 - 담당기관이 심사 당시 특정 지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금액만 부적절하게 지급되더라도 총금액이 부적정 지출 비율에 포함됨
 - 이후 부당한 지급이 회수된 경우에도 부적절한 지급으로 간주됨
- 본 자료는 2021년 부적정 지출 데이터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로, 2021년 데이터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직면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

2. 데이터 주요 내용

- 올해 발표된 부적정 지출 데이터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된 독특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지난 정부에서 방치한 문제들을 강조함
 - 정부 전체의 부적정 지출 비율은 2020년 5.6%에서 2021년 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증가세는 ‘연방주 실업보험(Federal-State Unemployment Insurance, 이하 UI)’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급률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8.71%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는 팬데믹 상황이 아닌 12개월 동안의 수치보다 약 5~8%p 높은 수치임
- 특히 UI 시스템에서 부적정 지출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급증하였음

- 2020년 3월 청구건수는 주당 21만건에서 660만건으로 증가하였음
 -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접수된 건수보다 팬데믹 9개월 동안 더 많은 실업보험이 청구됨
 - 이러한 청구 급증은 주정부 기관의 일처리 지연을 초래함
 -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는 대부분의 청구가 2주 이내에 처리되었으나, 팬데믹 이후 2020년 10월까지 대부분의 신규청구를 처리하는 데 70일 이상이 소요됨
- 팬데믹대응책임위원회(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 이하 PRAC)가 전국 16개 주(state)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주들의 신규청구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구식 IT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정 사기(statutory fraud) 및 적격성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부적정 지출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PRA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인력기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Workforce Agencie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절반 이상의 주들이 여전히 구식 실업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21년 2월 기준)
 - 또한 PRAC는 팬데믹으로 인해 청구건수가 급증한 UI 부문이 주정부의 청구 처리 시간 지연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함
 -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경우 실업급여 감사 결과, 팬데믹 실업급여 혜택이 적격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절차와 통제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 이로 인해 초과지급 및 부적정 지출을 발견·회수·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주정부가 UI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부당지출을 줄이고, 감독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음
-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는 신원도용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주 UI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을 위한 조직인 '타이거팀(Tiger Teams)'의 배치, 구식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20억달러가 배정됨
 - 행정부는 여러 개 주들의 UI 관련 사기방지를 위해 주정부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이하 DOL)의 감찰관실(Inspector General, IG) 간 데이터 공유 협약을 체결함
 - 또한, 노동부(DOL)는 실업급여 혜택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 대응을 위해 법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또한 신원도용 방지 및 공공 혜택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및 개혁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임
 - 위와 같은 노력과 일자리 및 경제 회복에 힘입어 미국의 실업자 수는 1969년 이후 4주 최

저 평균치인 주당 약 205,000명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주정부의 재정압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OMB는 ‘지출 청렴성(payment integrity)’ 제고를 위해 감사실(Inspectors General, 이하 IG) 및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등의 감독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OMB는 2021년 12월 IG의 청렴성 및 독립성 회복,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신규 지침을 발표함
 - OMB는 기존의 청렴성(integrity)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기관들이 ‘가치가 낮은 준법 감시(low-value compliance)’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부적정 지출을 방지하는 역량 구축에 집중하도록 함
 - 또한 OMB는 최고 수준의 책임성과 지출 청렴성을 보장하고,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관련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실행 지침을 발표함

참고문헌

미국 OMB, “Updated Data on Improper Payments,” 2021. 12. 30.,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1/12/30/updated-data-on-improper-payments/>, 검색일자: 2022. 1. 21.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대통령 관리 의제(PMA) 발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aunches
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
- 2021. 11., 미국 OMB, Performance.gov -

1. 검토 배경

-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은 대통령 관리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PMC)와 함께 '바이든-해리스 관리 의제 비전(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을 발표함
 - 대통령 관리 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는 정부 운영 및 수행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연방 기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우선순위를 정의함
 -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연방정부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부의 로드맵을 설명함
- 본 자료는 2021년 11월 발표된 바이든-해리스 관리 의제 비전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2. PMA의 주요 내용

- 바이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코로나19 감염병 퇴치, 기후위기 대응, 형평성 향상 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었음
 - 새로운 우선순위는 연방정부의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맞벌이 가구를 위한 강력한 기반 마련을 강조함
 - 연방 인력 및 역량 강화
 - 우수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연방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제공
 - 더 나은 복구를 위한 정부 사업 관리
- PMA 비전은 미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형평성

을 향상시킬 것임

3. PMA 작업지침의 핵심 가치

- PMA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작업지침은 형평성, 존엄성, 책임성 및 결과를 기반으로 함
 - (형평성) 정부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 가치인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 형평성 제고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님을 강조
 - (존엄성)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정부는 모든 국민에 의해 운영되고, 모든 국민에게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함
 - (책임성) 청렴하며 모든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행동해야 함
 - (결과) 국민의 생활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를 운영해야 함.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미국의 가족들과 근로자들, 기업 및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함

4. PMA의 세 가지 우선순위

- (우선순위 1) 연방 인력 및 역량 강화
 - 국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를 끊임없이 운영해야 하며, 연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함
 - 조직의 힘은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기반함
 - 미국 정부는 미국의 최대 고용주로서, 4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음
 - 헌신적이고 유능한 전문 공무원들이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아직 직원들이 기대하는 모범 고용주가 아님
 -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인재 유치, 고용, 참여, 개발, 지원 및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세부 전략은 아래와 같음
 - 전략 1: 국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유능한 인력을 연방정부 전반에 고용 및 배치
 - 전략 2: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지원하고, 듣고, 권한을 부여받으며, 배우고, 성장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경력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전략 3: 감염병과 전국 인력·일자리 동향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연방 업무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 재구성 및 구축

- 전략 4: 광범위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범 고용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인사시스템 지원 및 구축

■ (우선순위 2) 우수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연방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제공

- 국민들은 재난 극복 및 사업 발전 지원, 기회 제공 및 권리 보호, 지역사회 재건 지원 등의 다양한 연방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장벽을 낮추며,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함
- 또한 개인과 조직이 정부와 상호작용·경험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세부 전략은 아래와 같음
 - 전략 1: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농업지원청(Farm Services Agency), 산림청(Forest Service),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농촌개발국(Rural Development) 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센서스국(Census),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s Office) 등 공공서비스 규모 및 영향력을 바탕으로 35개 기관을 ‘고영향 서비스 공급자(High Impact Service Providers 이하 HISPs)’로 규정하고 있음. HISPs의 서비스 설계,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방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
 - 전략 2: 연방 기관과 관련된 주요 생활 경험을 위한 정부 서비스 제공 및 설계, 구축, 관리
 - 전략 3: HISPs 전반에 걸쳐 간단하고 원활하며 안전한 고객 경험을 지원하는 연방 공유제품, 서비스 및 표준 개발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

■ (우선순위 3) 더 나은 복구를 위한 정부 사업 관리

- 연방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재구성하며, 주요 공급망을 지원하고, 신기술 및 솔루션 개발의 발전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에 핵심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이를 통해 연방 시스템은 양질의 노동조합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인종 및 성별, 부(wealth)와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가 직면한 기타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정부 사업을 관리
 - 또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솔루션을 촉진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세부 전략은 아래와 같음

- 전략 1: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기후 솔루션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연방 조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
- 전략 2: 미국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 관련 위험을 해결하며, 공평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을 지원

5. PMA 비전 발전을 위한 노력

- PMA 비전에 제시된 우선순위는 과감하고 광범위하며, 기관 및 기관 간의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함
 - 또한 연방정부의 필수 역량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반으로 함
 - 다음과 같은 기관 간의 지속적인 노력은 우선순위, 전략 및 새로운 작업흐름을 지원하여 PMA 비전을 더욱 발전시킬 것임
- (1) 기관 간 ‘관리실천공동체(Management Communities of Practice)’ 개발 및 지원
 - 다양한 이슈 및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관리 및 성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내외부의 데이터와 정보 및 동향을 탐색하고, 기관 내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를 대통령 관리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PMC) 중심으로 구성함
- (2) 임무 수행의 핵심 요소인 연방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을 지속적으로 강화
 - 사이버 보안 및 IT 현대화는 정부 운영의 기초가 되는 핵심 분야임
 - 코로나19 팬데믹은 IT 투자가 정부의 임무 수행 및 필수업무 지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음
 - 연방 사이버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안시스템이 정부 서비스 제공을 돕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미래를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 연방 IT 및 사이버 보안 인력 전반의 핵심 기술격차를 식별하고 해소해야 함

- (3) 연방정부 전반의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 연방 기관과 대중이 연방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방 데이터 관리 관행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과학 기술을 향상시킬 것임
 - 또한 미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연방 데이터세트(datasets)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정책입안자를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것임
 - 증거 기반 의사 결정 및 정책 입안을 지원하는 데이터 실무를 발전시킬 것임
 - 정부사업 및 연방서비스 영향 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기타 관련 요인으로 세분화된 연방 행정 데이터세트(datasets)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임

- (4) 연방 기관의 증거 기반 정책입안 및 의사결정 문화 육성
 -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은 효과적인 정부서비스 제공의 핵심요소임
 - 이를 위해 기관들이 타 기관과 협력하며 자체 학습의제(Learning Agenda)를 세우고 실천하도록 할 것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해 PMA 학습의제를 발표하고, 연방정부 운영에 대한 범정부적인(cross-cutting) 문제를 식별할 것임
 - 행정 각부를 위한 범정부적 PMA 학습의제는 주요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정부 내부, 외부 및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를 장려할 것임

- (5) 연방 성과관리 체계를 활용한 진행 상황 측정 및 계획 수립
 - OMB는 범정부적(cross-cutting) 목표를 수립하고 범부처 이슈에 대한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부처 우선목표(Cross Agency Priority Goal, CAP)를 설정할 예정임
 - 또한 기관들은 PMA 미션의 성공을 결정짓는 4개년 전략 계획 및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를 반영하는 2개년 부처 우선목표(Agency Priority Goals, 이하 APGs)를 수립하고 있음

- 본 PMA 비전에 제시된 우선순위 및 전략에 대한 모든 진행 상황과 기관 전략계획 및 APGs는 정부포털 홈페이지(Performance.gov)를 통해 보고될 것임

- 미국 정부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 계획을 대중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할 것임

참고문헌

- 미국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aunches 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 2021. 11. 18.,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1/11/18/office-of-management-and-budget-launches-biden-harris-management-agenda-vision/>, 검색일자: 2022. 1. 21.
- 미국 정부포털,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aunches 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 2021. 11. 18., <https://www.performance.gov/blog/pma-launch/>, 검색일자: 2022. 1. 21.
- 미국 정부포털, “THE 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 Toward an Equitable, Effective, and Accountable Government that Delivers Results for All,” 2021. 11., https://assets.performance.gov/PMA/Biden-Harris_Management_Agenda_Vision_11-18.pdf, 검색일자: 2022. 1. 21.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증거기반 정책수립: 성과정보 활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Results Suggest Increase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 2021. 11., 미국 GAO -

1. 검토배경

- 2010년 통과된 GPRA 현대화법과 2018년 통과된 증거기반 정책수립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에는 의사결정 시 연방정부가 성과정보 및 기타 증거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연방 의사결정자는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이 의도했던 결과를 목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함
 - 이는 의회 및 행정부 지도자가 문제를 식별 및 해결하고, 정부사업을 개선하고 기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위 두 법안 모두 GAO가 그 이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본 보고서는 2020년 정부 전역의 연방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정보 사용 관련 문항에 대해 GAO가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다룸
 - GAO는 연방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정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선별된 우수 사례 및 데이터 기반 검토와 성과정보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함

2.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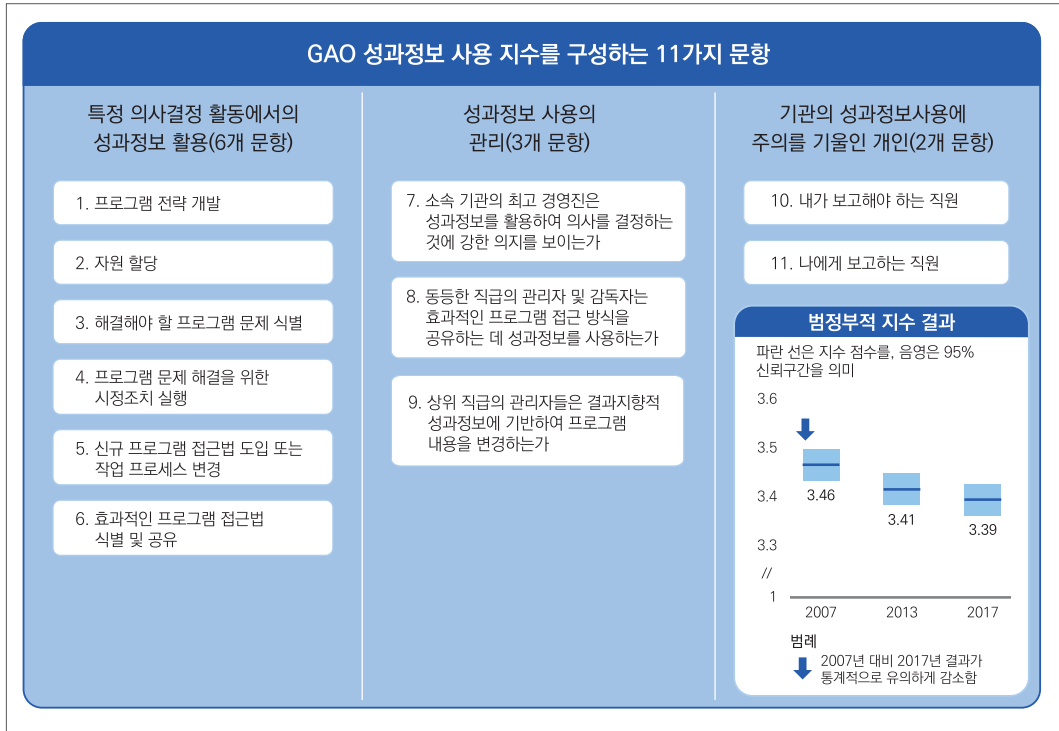
- GAO는 2020년 정부 전역의 연방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원 할당과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에서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는 기관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로 정의됨

- GAO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24개 주요 연방 기관의 관리자 약 4,000명을 무작위로 계층화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56%였으며, 기관별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은 51-83%임(법무부 27% 제외)
 - 조사결과는 정부 전체 및 각 기관의 관리자 모집단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
 - 또한 GAO는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의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OMB 직원을 인터뷰했으며, GAO가 과거 OMB에 제시했던 권장사항들의 이행실적을 조사함

- GAO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음
 - 성과정보 사용 지수([그림 1] 참조)
 - GAO는 2007년부터 정부 전체 및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정보 사용 관련 단일 지수를 산출해옴
 - 해당 지수는 기관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을 측정하는 11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산출됨
 - 성과정보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관행 및 데이터 기반 검토와 성과정보 사용 간의 관계 분석
 - 2020년 조사에는 과거 성과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식별된 5개 관리 관행³⁾을 반영하는 33개의 문항을 포함하였음
 - 다변량 회귀 모형(multivariat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성과정보 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함

3) 기관 전체의 목표 및 목적의 조정, 성과정보의 유용성 제고, 성과정보 활용 역량 개발, 관리 의지 입증, 성과정보의 효과적인·찾은 전달이 관행에 포함됨.

[그림 1] 성과정보 지수 설문 문항 및 2007년 대비 2013년, 2017년의 범정부적 성과정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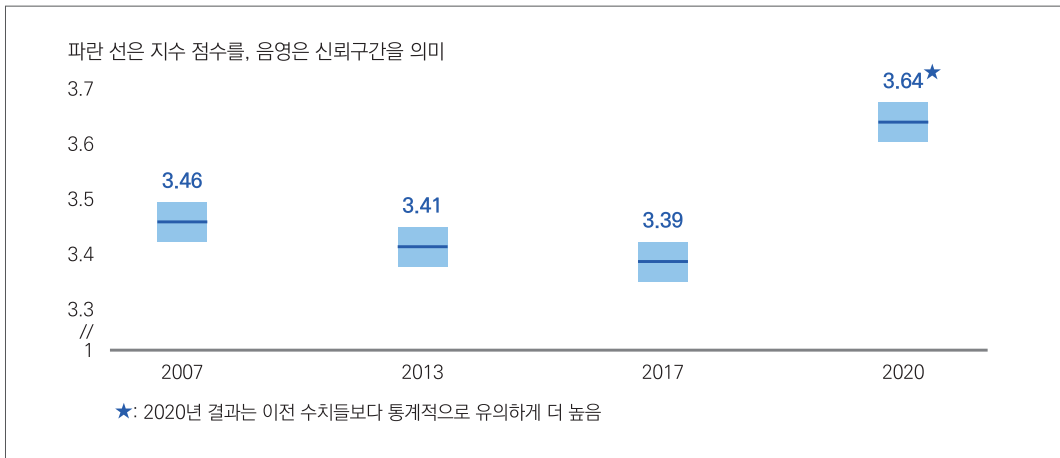


자료: GAO 보고서,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Results Suggest Increase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https://www.gao.gov/assets/gao-22-103910.pdf>, GAO 성과정보 사용 지수를 구성하는 11가지 문항, 검색일자: 2022. 1. 21

3.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기관의 관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AO가 연방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의사결정시 사용된 성과정보 사용량이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2020년 범정부 차원의 성과정보 지수가 이전 수치들보다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조)
 - 2020년 범정부 차원의 성과정보 지수는 5점 만점 중 3.6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였으며, 2017년의 경우 3.39였음

[그림 2] 관리자의 성과정보 사용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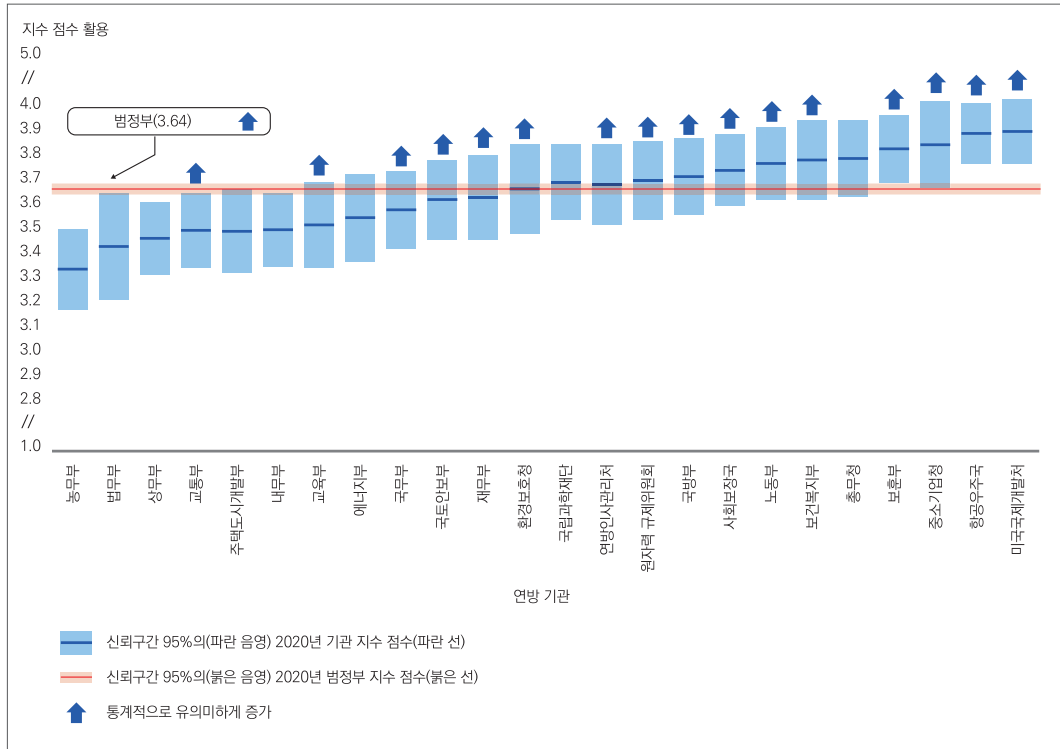


자료: GAO 보고서,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Results Suggest Increase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https://www.gao.gov/assets/gao-22-103910.pdf>, GAO 설문조사에 따른 관리자의 성과정보 사용량 지수, 검색일자: 2022. 1. 21

- 관리자의 성과정보 사용량은 대다수의 기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24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성과정보 사용량 지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이하 NASA)의 경우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GAO는 2018년 12월부터 NASA가 조달 프로젝트 관리 개선을 위해 성과정보 사용량을 늘린 점을 강조함

- 이처럼 성과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사결정자가 연방 기관의 성과를 보다 잘 이해 및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기관별 성과정보 사용량 지수(2017년 대비)



자료: GAO 보고서,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Results Suggest Increase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https://www.gao.gov/assets/gao-22-103910.pdf>, GAO 설문조사에 따른 정부 기관별 성과정보 사용량 지수, 검색일자: 2022. 1. 21

■ 또한 연방 관리자들은 의사결정 시 성과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주요 관행 및 관련된 조치가 대다수의 기관에서 증가했다고 보고함

- 성과정보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관행과 관련된 10개 문항 중 6개 문항의 점수가 2017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성과정보를 사용하여 의사를 결정하는가?
 -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관의 전략적 목표 달성과 연계하는가?
 - 관리자는 성과정보를 수집·분석 및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성과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가?
 - 소속 기관의 최고 경영진은 성과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가?
 - 소속 기관의 성과정보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특히 데이터 기반 검토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성과정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 성과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주요 관행 활용도 점수 역시 데이터 기반 검토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조사됨

참고문헌

- 미국 GAO,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Results Suggest Increase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2021. 11. 03.,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3910>, 검색일자: 2022. 1. 21.
- 미국 GAO,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Results Suggest Increase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2021. 11. 03., <https://www.gao.gov/assets/gao-22-103910.pdf>, 검색일자: 2022. 1. 21.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3. 영국

2021년 지출검토

(Spending Review 2021)

– 2021. 10. 27., 영국 재무부(HM Treasury) –

1. 개요

- 2021년 9월 7일, 영국 재무부 장관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라 2021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 2021, 이하 SR21)가 시작되었으며, 10월 27일, 2022–2023년에서 2023–2025년까지의 자원 및 자본 예산을 책정한 다년간의 지출검토와 2021년 추계 예산안(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이 발표됨
 - 2021년 가을 예산 및 지출검토는 전례없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
 -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은 예상보다 빠른 성장으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어냄
 -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국가재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번 예산안과 지출검토에 향후의 정부 계획을 요약·정리함

- 이번 SR21에 따르면 각 부처의 2024–2025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2024–25년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의 0.7%까지 달성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총지출은 연평균 3.8%의 실질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여기에는 6,000억파운드가 넘는 공공부문 총투자 계획이 포함됨

- 코로나19 대유행은 예측하지 못한 외부 충격의 위험성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지원할 것이며, 이 맥락에서 SR21에서는 국가부채의 감소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재정

규칙을 발표하고자 함

2. 지출검토의 경제적 맥락과 공공재정 현황

[1] 경제적 맥락

- 정부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가계 및 기업 대상 감염병 관련 지원, 일자리 정책, 그리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으로 영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경기침체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음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0만개의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3,780억파운드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영국의 노동시장에 강력한 회복력을 제공함
 -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와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투입수요가 산출량을 초과함에 따라 상품과 원자재 가격의 실질적인 상승으로 이어짐
 -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시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계획과 기술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경제 지원 체제에서 벗어나 경제 전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 교통·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물가안정에 특히 유의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재확인했으며, 물가 상승에 직면한 가계의 생활수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2] 공공재정 현황

- SR21에서 정부가 내놓은 회복과 조치는 예산책임청(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이하 OBR)의 3월 경제전망의 예상보다 공공재정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함
 - 추가 차입 규모는 현재 감당 가능한 수준이나, 금리 변동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공재정의 민감도 증가 및 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정규칙을 도입함
 -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재정규칙은 정부가 리스크 관리 및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효율성 제거 등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SR21에 따르면 2024-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경상예산 대비 5%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인됨

3.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지출검토

[1] 성장에 대한 투자

- 정부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임금·고숙련·고생산성 경제(a high-wage, high-skilled, high-productivity economy)를 실현시키고자 함
 - 이번 예산안과 SR21에서 공공 R&D에 약 2024-2025년까지 200억파운드, 2026-2027년까지 약 220억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2027년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의 2.4%를 R&D에 투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상당 수준 진전시킬 것으로 보임

- 기업의 혁신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직·간접적인 공공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제도가 추진될 것임
 - 기업이 혁신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R&D 집약적 기업에 성장단계 벤처캐피탈(growth-stage venture capital) 공급을 위해 약 3억 7,500만파운드의 펀드를 출시함
 - 또한 혁신성이 뛰어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유치 확정기여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to unlock institutional investment)의 규제 부담 상한제(the regulatory charge cap)를 추가하기로 협의함
 - 아울러 R&D 관련 세금 감면 계획과 최첨단 연구방법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인 공공재정 지원이 2018년 OECD 평균인 0.7%를 훨씬 웃도는 1.1%에 이를 것임

- 2020년, 정부는 국가기반전략(the National Infrastructure Strategy)을 발표, 영국기반은행(the UK Infrastructure Bank)을 출범시킴
 - 영국 전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5개 지역에 약 3억 3,500만파운드 상당의 도시계획(Towns Deals)을 추진하고, SR21 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에만 총 1,000억파운드를 투자할 것으로 밝힘

- SR21에서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보다 빠르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향후 3년간 350억파운드 이상의 철도 투자와 50억파운드 이상의 버스·자전거 통행 투자 등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도모하고,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 그레이터맨체스

터(Greater Manchester), 리버풀 시티 지역(Liverpool City Region) 및 테즈 밸리(Tees Valley)를 포함한 8개 도시 지역에 5년간 약 57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임

[2] 근로자 및 기업 지원

- 매년 지출검토에서는 연간 9억파운드 이상을 근로자 및 고령근로자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
 -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근로자가 구직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임
 -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 및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국민생활임금(the National Living Wage, 이하 NLW)을 2022년 4월부터 시간당 9.50파운드로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구당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유류세와 관세율을 동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또한 상당 규모로 진행될 예정임
 - 지역 변화가 상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2022-23년 대면 서비스업, 소매업, 레저업소에 대한 새로운 임시 영업요금 완화, 사업비(business rates bills) 할인 등에 정부는 약 17억파운드를 지원할 것임
 - 사업비 지원 정책은 향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더 유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됨

[3]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

- 영국은 G20 소속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며, 2030년에 '2018년 대비 배출량 46% 감소'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10대 계획(the Ten Point Plan)*' 이후 약 260억파운드의 공공자본 투자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정부가 녹색산업혁명(the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위해 총 300억파운드의 공공자본 투자로 이어짐
 - * 녹색산업혁명을 위해 10대 핵심 분야에서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투자계획('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영국 총리실, 2020. 11. 18.)
 - 10대 핵심 분야: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대중교통·자전거 및 도보, 탄소중립 항공기 및 선박, 친환경 건축, 탄소 저장, 환경, 혁신 및 녹색금융
 - 여기에는 향후 3년간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6억 2천만파운드의 신규 투자와

도보 및 자전거 주행 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됨

- 친환경 건축 지원을 위해 약 39억파운드를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을 줄이면서 수 만명의 저소득 가구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8억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함

■ 교통과 건물의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핵(nuclear) 기술과 해상 풍력 등 에너지 공급 및 기술혁신에도 약 15억파운드를 투자하여, 보다 탄력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폭넓은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정부는 ‘탄소 포획, 사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이하 CCUS)’에 10억파운드의 예산을 승인하고 하이넷과 동부 해안을 첫 CCUS 클러스터로 선정, 수소에너지 지원 제도를 통해 수소 생산자와 CCUS를 채택하는 중공업에 최대 1억 4천만파운드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2025년까지 영국에 매년 최소 7,500헥타르의 나무를 심고 35,000헥타르의 이탄지(peatland, 토탄이 퇴적하여 이루어진 산성토양) 복구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24-2025년까지 7억 5천만파운드 이상의 기후기금을 확대하기로 함

- 아울러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공투자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지출 계획은 환경규제 및 녹색금융에 대한 과감한 조치와 함께 전국에 녹색 일자리를 창출, 투자 유치 및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임

[4] 지역균형발전(영국 전 지역에 대한 지원 평준화)

■ 정부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평준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적 필요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년 지출검토에서는 매년 할당되는 660억파운드의 예산 외에, 지출검토 기간 동안 바넷 공식(the Barnett formula)을 통해 위임된 행정부에 연평균 87억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함
- 이를 통해 학교, 주택, 보건, 사회 복지 분야 및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역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각 지역의 강점과 상황에 맞춘 정책 자금을 조달할 것임

- 여기에는 레벨링업 및 커뮤니티 권리 펀드(the Levelling Up and Community Ownership

Funds)를 통해 모금된 38개의 성공적인 펀딩 프로젝트, 북아일랜드 펀드(the Northern Ireland fund)의 확장과 함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새로운 브리티시 비즈니스 은행 기금(new British Business Bank funds) 등이 포함됨

- 농어업 자금 배정도 확정되어 수소·풍력·원자력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전역의 선두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영국 전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 분야 선도산업에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4억파운드의 글로벌 브리튼 투자펀드(Global Britain Investment Fund)를 조성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4.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비전

[1]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행동

- 이번 예산안과 지출검토에서는 ‘세계적인 영국(Global Britain, 이하 글로벌 브리튼)’으로서의 비전으로, 문제 해결 및 부담 분담, 글로벌 경쟁력,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국제 질서를 제시함
 - 향후 몇 년 동안 영국은 가장 시급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영국이 G7에서 초강대국이자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기부국 중 하나로 남아 2022년 국민총소득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원조로 지출할 예정임
 - 여기에 정부가 세심한 공공재정 관리와 경기회복 역량을 강점으로 ODA 재정 감사에서 3월 예산책임청(OBR) 전망보다 빠른 2024-25년에 충족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21년 지출검토는 2024-25년에 국민총소득(GNI)의 0.5%와 0.7%의 차액에 대한 추가 할당되지 않은 ODA 자금을 잠정적으로 적립할 것임
 - 또한 각 부처에 배정된 ODA 사업은 여성 및 소녀 지원, 글로벌 보건, 인도주의적 대응, 기후 변화 해결 등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에 대해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영국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며 2021년부터 국제기후금융을 두 배로 늘

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

- 또한 영국의 연구자와 기업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주요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해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R&D 자금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2] 브렉시트 기회 포착

- 영국의 EU 탈퇴 과도기 종료에 따라 정부는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칙보다 더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제 개혁과 유전기술 규제에 대한 과학 기반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음

*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유럽 시민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6년 유럽 의회에서 공표

- 또한 무역의 80%를 포괄하는 거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영국의 독자적인 무역정책에 맞는 자원을 제공할 예정임
- 정부도 EU 탈퇴 후 규제·입법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 알코올관세제도(The Alcohol Duty system)는 대폭 간소화될 것이며, 모든 음료는 알코올 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임. 이는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진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대응하여 제품 혁신에 더 도움이 될 것임
 - 이와 함께 생맥주와 사이다의 관세율이 5% 인하되는 등 일반주류 음식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음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참고자료

GOV.UK,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documents*,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budget-and-spending-review-2021-documents>, 검색일자: 2022. 1. 26.

GOV.UK,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 10. 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budget-and-spending-review-2021-documents/autumn-budget-and-spending-review-2021-html#executive-summary>, 검색일자: 2022. 1. 26.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정부지출평가 보고서

(Evaluating government spending)
- 2021. 12. 2., 영국 감사원(NAO) -

1. 개요

[1] 정부지출평가(Evaluating government spending)의 개념

- 영국 감사원(NAO)은 정부 정책 전반의 평가를 위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출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지출평가는 정책의 설계, 집행, 결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평가로,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 일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수단임
 - 정부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출평가의 증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가, 담당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간 효과적인 조정이 요구됨

- NAO에서 발간한 '2013년 정부지출평가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평가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지만 평가 증거의 적용 범위는 불완전했고, 평가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또한 평가결과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가 평가 결과를 정책 효율화를 위해 활용하지 않고 있음도 발견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전 부처에 걸쳐 평가 증거의 제공, 지출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평가 집행을 위한 지침, 인센티브 및 감독 조치 등과 관련된 재무부, 의회 및 분석기능(the Analysis Function)의 역할에 대해 고찰함
 - 각 부처에서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지만 그 평가과정이 가변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여 정책 개선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결과적으로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출 및 평가를 위해 관련 지침과 분석기능 강화, 중앙집중적 평가 태스크포스(TF) 발족 등을 통해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2] 주요 정부지출 현황

| 8% | 6 | 4 |
|--|--|---|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의 8%(총 지출액 4,320억파운드 중 350억 파운드)는 2019년 평가계획 수립에 투입 됨 | 16개 부처 중 6곳은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단일 평가 전략을 가지고 있음 | 16개 부처 중 4곳은 평가 업무에 대한 지출 추정치를 쉽게 사용하였음 |
| 7 of 16 | 16명의 수석 분석가 중 7명은 평가 근거를 지지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요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
| 10 of 16 | 16명의 수석 분석가 중 10명은 학습 기회가 정책 설계 및 전달에 적절하게 내재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장벽이라고 말했다. | |
| 6 of 16 | 16명의 수석 분석가 중 6명은 일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시에 평가 자료를 발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
| 9 | 여러 영역에 걸쳐 가장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9개의 근무 센터 | |
| 9 What Works Centres | The What Works Network는 9개의 독립적인 What Works Centres, 3명의 정회원 및 1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센터는 2,500억파운드 이상의 공공지출을 차지하는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임 | |
| £ 84 million | 평가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주요 부처에서 2019-20년에 발행한 외부 계약의 가치에 대한 추정치, 8,400만파운드 | |
| £ 885 billion | 2019-20년 정부 지출(총 관리 지출), 8,850억파운드 | |

출처: 영국 감사원(NAO), 정부지출평가 보고서(Evaluating government spending).

[3] 연구 범위

-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평가에 대한 증거 제공 및 활용 관련 범정부적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평가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 인센티브 및 감독 제도를 아우르고 있으며 재무부 및 국무조정실, 분석기능 등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 각 부처가 각자의 정책 영역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책 결정 시 평가 증거를 활용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방법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 증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108개 프로젝트 중 (지출된 4,320억파운드의 8%에 해당하는) 9개 프로젝트만이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77개(지출의 64%)는 평가제도가 없는 실정임

- NAO에서 발간한 과거 보고서에는 평가 증거가 사용되었던 방식뿐만 아니라 평가되지 않은 많은 사례들과 평가 품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1] 평가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정부는 2013년 보고서 이후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음

- 2015년에는 ‘범정부 평가 자문단(the cross-government What Works Trials Advice panel)’을 설립하고, 이어서 2017년에는 분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평가와 관련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기구인 ‘분석기능팀(the Government Analysis Function)’을 설립함
- 2020년 지출검토에서 영국 재무부는 평가 증거에 기반한 자금조달 결정을 강조하였고, 2021년에는 내각과 재무부가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함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증점적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평가 자체의 복잡성, 평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각 부처의 책임이 중복되는 결과를 낳았고, 부처별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후속조치 또한 부족했음
- 이에 정부는 평가단의 미래를 2~3년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으나,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한 바가 없음
- 각 부처의 사업수행 및 평가체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무부는 2020년 지출검토에서 자금지원 승인 시 평가 요건을 강화했으며, 2021년 지출검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했음
- 그러나 재무부는 2020년 재정적 합의(financial settlements) 관련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공식적인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출검토를 제외한 평가체계 영역의 감독이나 개선조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16개 주요 부처 중 약 3분의 1인 6개 부처만이 평가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7개 부처는 일부 정책에만 평가전략이 있었고 나머지 3개 부처는 평가전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평가 활동의 전반적인 범위나 지출액, 인력 등에 대한 정보가 없고,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정부지출과 평가 활동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기존 평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지며, 평가 품질

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평가에 투자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임

[2] 장애요인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와 그 증거에 대한 장애요인은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국무총리 수행단(the Prime Minister's Implementation Unit, 이하 PMIU)은 평가에 대한 정치적 참여 부족, 역량 우려, 평가 증거를 작성한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지적을 받음
 - 2013년에 우리가 주목했던 것과 유사한 요소를 식별하는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었으나, 2021년 연구 결과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연구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재무부가 2020년 3월에 발행한 '마젠타 북'의 업데이트 버전은 분석가들이 품질 평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분석기능 경력 프레임워크는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정부 전체의 분석 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규정하고 있음
 - 정책 당국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평가 리터러시'를 갖도록 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아있음
 - 이에 분석기능팀은 정책관계자 간 분석능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2022년 3월에 계획된 조치와 함께 업무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3] 평가를 통한 변화 달성 여부

- 정부는 평가에서 얻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널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핵심 부서 16곳 중 수석분석관(15명)과 정책직 종사자(13명)의 대다수가 평가의 1차 목적이 효과를 배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나, 그 지식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제한된 수의 정책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종합 보고서와 체계적인 검토를 작성하는데, 전반적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학습을 추출하고, 서로 다른 부서에 걸쳐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평가가 어떻게 결과를 개선시키는지를 포착하여 공표하지 않고, NAO에서는 평가의 증거를 바탕으로 부서의 개입을 변화시킨 사례를 확인한 바 있음
 - 다만 현재 이와 같은 사례의 내용은 관련 부서 자체문서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음에 유의가 필요함

3. 지출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결론

- 개별 부처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였으나 평가의 사용은 계속 변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정부는 알려진 개선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데 신속하지 못하였음
 - 결과적으로 정부는 많은 정책 분야에 대한 지출이 차이를 만들고 있으며, 최근 분석기능팀과 중앙평가단 신설을 통해 평가 개선, 일부 지출결정에 평가 관련 요건 포함, 역량 강화 등을 약속하였음
 - 이러한 개입은 성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다시 집중하는 것은 증거를 더 잘 사용하고 금전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반가운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정부는 평가 증거에 대한 책임, 감독 및 부처 간 의사소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이룬 개혁과 개별 부처의 노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평가에 대한 시스템 장벽과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증거의 적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임

4. 권고사항

- 각 부처의 장관과 회계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의 지출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게 되므로, 수석 분석가와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지금까지의 발전과 추진력을 발판 삼아 모든 정부 부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확보하도록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재무부와 국무조정실의 역할

- 평가TF와 협력하여 평가에 관한 정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공표한다.
-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 시스템의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 주요 평가 증거에 대한 분석, 계획된 평가 지출 및 최근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 평가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포함하는 평가 전략을 각 부처에 요청해야 한다.
- 이는 향후 지출검토 결산에서 재검토될 것이며, 각 부처의 결산 내용에 따라 최소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 평가서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그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소명해야 하며, 평가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부처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추적하여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TF와 함께 문서화된 시스템에 대해 협력한다.

● 분석기능(The Analysis Function)의 역할

- 분석기능 표준에 제시된 평가 표준의 소유권, 유지보수, 보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한다.
- 적절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야 하며, 분석기능의 표준에 맞게 평가 이행 모니터링 및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정책결정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 평가 태스크포스(TF)의 역할

- 평가 관련 요건의 일관성을 위해 분석기능 및 평가TF는 실무 커뮤니티(CGEG) 및 정부 전문직 인력, 타 부처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평가 증거, 의도대로 평가시스템이 작동하였는지 여부,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NAO, Cabinet Office, HM Treasury, *Evaluating government spending*, 2021, 12, 2.,
<https://www.nao.org.uk/report/evaluating-government-spending/>, 검색일자:
2022. 1. 26.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4. 호주

영연방 평가정책 및 수단

(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and Toolkit)
 - 2021. 12. 1.,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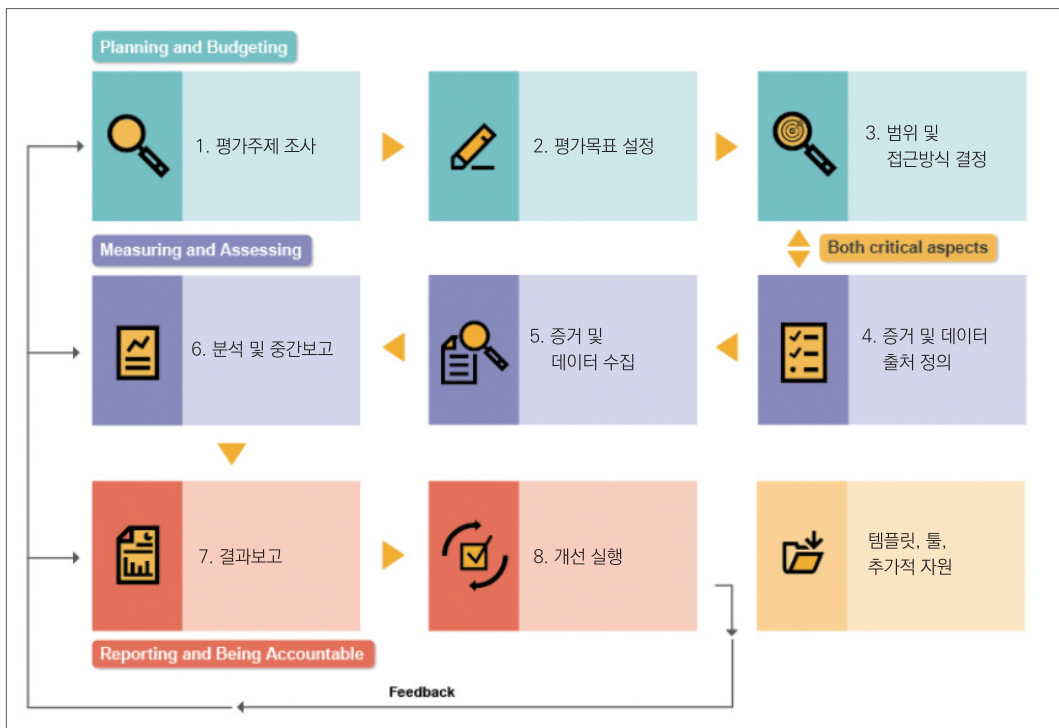
- 재정부 장관은 호주 공공서비스(Australian Public Service, APS) 개혁 의제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평가정책과 도구를 승인하였음
 - 정부는 평가정책을 통해 APS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영연방 평가정책(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 본 정책은 PGPA(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의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연방 기업에 적용되며, 평가의 관행과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본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는 것임
 - 평가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교훈을 APS에 반영, 증거 기반의 정책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 일관된 표준 및 접근 방식을 준수하여 성과 보고의 품질을 개선

- 평가수단(Evaluation Toolkit)
 - 평가란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설계·실행·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 활동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임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위험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함
 - 평가는 목적 적합성(Fit for purpose), 유용성(Useful), 윤리적 및 문화적 적합성(Ethical and Culturally appropriate), 신뢰성(Credible), 투명성(Transparent)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프로그램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평가할지 계획하고, 정책 주기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단계별 평가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음

- 계획 및 예산 책정(Planning and budgeting): 초기에 기준 데이터를 설정하여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 과거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 제안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정당화
- 실행·측정·평가(Implementing, measuring and assessing):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 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의사결정에 평가 결과를 포함한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고 및 책임(Reporting and being accountable):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의 우선순위 점검, 성과의 달성 정도 식별, 계획이 잘못된 시점을 파악하여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활동 보완

[그림 1] 평가 단계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https://www.finance.gov.au/government/managing-commonwealth-resources/planning-and-reporting/commonwealth-performance-framework/evaluation-commonwealth-rmg-130/how-evaluate>, 검색일자: 2022. 1. 28.

- 평가는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정책 담당자(Policy officer), 예산 담당자(Budget officer), 규제 담당자(Regulator),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행됨

- 평가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더 나은 작업 방법의 탐색, 결과와 혁신에 대한 검토, 지식의 공유, 모범 사례와 실패로부터의 교훈 등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평가로 인한 혜택에는 정부 프로그램 및 활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예상 결과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정부 활동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정책 설계 및 조직 효율성의 지속적인 개선에 이바지함
 - 또한,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며,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

참고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and Toolkit,”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2021/commonwealth-evaluation-policy-and-toolkit>, 검색일자: 2022. 1. 28.

Department of Finance, “Evaluation in the Commonwealth(RMG 130),” <https://www.finance.gov.au/government/managing-commonwealth-resources/planning-and-reporting/commonwealth-performance-framework/evaluation-commonwealth-rmg-130>, 검색일자: 2022. 1. 28.

Department of Finance, “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https://www.finance.gov.au/government/managing-commonwealth-resources/planning-and-reporting/commonwealth-performance-framework/commonwealth-evaluation-policy>, 검색일자: 2022. 1. 28.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뉴스레터 발간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Newsletter, No. 73; 74; 75 –

– 2021. 10~12.,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

1. 연례보고 시기(Annual Reporting Time)

- 성과보고 피크기간을 맞아 디지털 성과보고서 코디네이터에게 몇 가지 주요 지원 사항을 상기 시킴
- PGPA 지침
 - 재무부 웹사이트에는 일반적인 성과보고서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비롯한 기관별 자원관리 가이드 등의 관련 정책지침이 게재됨
 - 디지털연례보고팀은 기관들이 해당 자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PGPA법」·규칙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
- 투명성 포털(Transparency Portal) 게시
 - 성과보고서를 투명성 포털에 게시할 때 도움말 센터의 ‘투명성 포털 체크리스트’와 ‘콘텐츠 미리보기’에 따라 콘텐츠 검토 요망
 - 체크리스트와 미리보기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Digital Annual Reporting Tool에 로그인 필요
- 재무부에 건전성 검사 요청
 - 투명성 포털에 게시 이전, 디지털연례보고팀은 디지털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를 수행함
 - 본 검토는 「PGPA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웹 접근성 요구사항과 관련된 영역, 필수 데이터 템플릿의 올바른 완성 여부, 성과보고서의 디지털 버전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기타 기능 등에 대해 검토함

■ PDF에서 이미지 붙여넣기

- 투명성 포털은 의회와 국민에게 다중 기관에 대한 검색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됨
- 포털의 데이터뷰어는 다양한 기관 간의 주요 정보를 직접 비교 가능
 - 다만, 데이터가 도구에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거나 PDF에서 이미지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경우 등은 디지털 출판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음
- 콘텐츠가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디지털연례보고팀에 문의해야 함

2.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의 성과정보 제공에 대한 지침 검토

■ 재무부는 2021년 9월 16일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PBS)를 생성하는 모든 영연방 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지침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함

- 「PGPA법」 섹션36(3)에 따라 발행된 지침은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BS)의 성과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
- 재무부는 2020년 2월 개정된 「PGPA법」에 따른 개정사항과 지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 중임
 - 또한,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BS)와 부처의 성과계획 사이에 보다 긴밀한 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 COO 및 CFO에게 발송된 이메일에는 지침에 대한 개정안과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BS) section2(결과 및 계획된 성과)에 포함하기 위한 성과표 템플릿 변경 안을 첨부함
 - 피드백 제출 마감기한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임

3. RMG 업데이트: RMG-202, RMG-212

■ RMG-20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RMG-212 영연방 비법인 기관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업데이트함

- RMG-202 감사위원회: 영연방 비법인 및 법인 기관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가 개정됨
- RMG-212 비법인 영연방 기관의 별정직 공무원(Prescribing officials):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됨

4. 컴커버(Comcover)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 검토-업데이트
 - 위험관리 정책은 기관의 위험 성숙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문화와 행동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됨
 - 검토를 감독하기 위해 조직 간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호주 정부 검토, 호주 주 및 국제 정부 위험 프로세스, 민간 부문 및 학술적 통찰력을 모두 고려
 - 8개의 권고안 초안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임

5. 재무장관 지침 개정 –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 성과 정보 제공

- 매년 발표되는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PBS)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PBS 섹션2의 성과정보 제공에 관한 자원관리지침(Resource Management Guidance, RMG)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 가급적 개정된 지침과 해당 RMG의 배포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2-23년 예산 절차 개시 시점에 맞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진행될 예정임

6. 성과보고서(Annual Reports)

- 성과보고에 대한 진행상황(뉴스레터 발행 시점, 2021. 11. 05.)
 - 165개 기관이 의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
 - 118개 기관이 투명성 포털에 성과보고서를 게시
 - 60개 이상의 기관은 아직 투명성 포털에 게시 필요
 - 58개 기관이 디지털연례보고팀에 지원을 요청하여 게시 전에 보고서를 검토함
- 성과보고서는 의회에 상정된 이후 가능한 빠르게 투명성 포털에 게시되어야 함
 - 게시 전 디지털연례보고팀에 디지털 보고서를 검토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함
 - 해당 검토를 통해 모든 접근에 대한 요구사항의 충족과 템플릿의 데이터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연례보고팀이 수행한 검토에서 파악한 문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보고서에 붙여넣은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한 대체 텍스트의 일관성 없는 사용으로 인해 접근성 지침을 위반할 위험

- 자료 템플릿에서 성과보고서의 관련 부분에 대한 상호참조 누락
- 성과보고서의 디지털 버전에 불필요한 내용 페이지 및 색인 포함

7. PGPA 기관 설문조사 - 2022년까지 연기

- 재무부는 2015년부터 제공된 「PGPA법」의 효과성 및 관련 지원에 대한 피드백 등을 조사하는 연례 설문조사에 대해 2021년 조사를 2022년 초로 연기할 예정임
 - 해당 설문조사의 시기는 매년 12월이며 2015년부터 6년간 실시 중임
 -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영연방 기관 및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이행여부(the success of implementation)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 이제는 「PGPA법」의 영향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이행보다는 적용 가능성과 성공에 초점을 맞춰 수집된 정보를 반영, 개선 및 확장해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 조언함
 - 이에 따라 2021년 조사를 2022년 초로 늦출 것을 제안하며 내년 초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8. 신규 RMG-130, 영연방 평가정책 및 툴킷

- 재무부 장관은 2021년 12월 1일 발효된 영연방 평가정책 및 지원 툴킷(toolkit)을 승인함
 - 정책과 도구키트(RMG-130)는 호주공공서비스(APS) 전반에 걸쳐 평가역량과 전문성을 일상 업무에 구축하고, 정책주기 전반에 대한 평가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 정부의 호주공공서비스(Australia Public Service, APS) 개혁 의제의 일부로 개발됨
 - 영연방에서 정부 프로그램 및 활동의 설계, 전달 및 효율성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음
 - 40개 이상의 영연방 기관과 다수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한 협업 설계 및 사용자 테스트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 및 지원 툴킷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줌
 - 2022년 1월부터 재무부는 호주공공서비스 교육기관(APS Academy)과 협력을 통해 정보선언을 제공하여 영연방 전체에 정책 및 도구키트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임

9. 영연방 기관 및 공공기관 목록

- 2021년 11월 19일 영연방 기관 및 공공기관 목록의 업데이트 버전이 신규 게시됨
 - 기존 영연방 기관 및 공공기관 목록은 2021년 7월 16일 버전임

- 신규 버전의 변경된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TA(Organ and Tissue Authority): 최고경영자의 책임·권한을 업데이트함
 - 2021년 11월 1일 호주 장기 및 조직 기증과 이식 권한 개정법(거버넌스 및 기타 조치)이 발효됨
 - 2013년 「공공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법, PGPA법」의 목적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기관의 책임·권한으로 규정함
 -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OTA 이사회가 OTA의 책임·권한을 지배
 - 의회 부서: 의회 4개 부서의 고용 준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사항이 추가됨
 - 1999년 「의회서비스법」 섹션22에 따라 부서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당 부서가 1999년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고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됨
 - 4개의 부처는 의회 서비스부, 하원부, 상원부, 의회예산국임

10. 정부기관 변경사항: 현재 사용가능한 기관 가이드

- 정부기관 변경사항의 업데이트 버전 출시
 -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APSC)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기관 가이드(MoG 변경 가이드)를 발행함
 - MoG 변경 가이드에는 2021년 11월 17일 최고운영책임자위원회에서 승인한 최신 MoG 구현 원칙과 직원, 복지, 정보통신기술, 금융, 재산 및 기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강화된 실무지침이 포함됨
 - 실무자료 툴킷도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곧 제공할 예정임

11. 신규 보조금 관리 부정수급 도구 키트

- 보조금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제공 시, 부정수급 위험에 대한 고려가 중요
 - 보조금은 주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만 부정수급 위험도 수반함
 - 영연방 사기방지센터(Commonwealth Fraud Prevention Centre)의 툴킷은 호주 정부 공무원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보조금 관리의 부정수급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
 - 취약점이 어떻게 부정수급에 노출될 수 있는지 이해
 - 부정수급을 방지,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대응책을 식별

12. 위험관리 우수사례 시상

- 11월 26일 재무장관은 2021년 영연방 위험관리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함
 - 26개의 우수 수상후보가 이 상을 받았으며, 16개는 위험 이니셔티브 카테고리, 10개는 전사적 카테고리임
 - 각 카테고리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 성공적인 후보에 대한 간략한 개요 링크를 함께 제공함
 - 전사적 카테고리의 수상자
 - 금상: 호주 금융보안청
 - 은상: 국민건강기금기구
 - 동상: 웨스턴 시드니 공항(WSA Co.)
 - 위험 이니셔티브 카테고리의 수상자
 - 금상: 인프라, 교통, 지역 개발 및 통신부-항공 부문에 대한 정부 경제 Covid19 지원 패키지
 - 은상: 국방부-항공 모빌리티 그룹, Covid19 환경에서 항공기 및 인원 관리
 - 동상: 국방부-파푸아뉴기니 방위군 능력 프로그램, PNG 공군

참고자료

-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 73, 2021. 10. 1.,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69>, 검색일자: 2022. 2. 23.
-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 74, 2021. 11. 5.,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4>, 검색일자: 2022. 2. 23.
-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 75, 2021. 12. 2.,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5>, 검색일자: 2022. 2. 23.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5. 뉴질랜드

2020-21년 중앙정부 성과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 2021. 12., 뉴질랜드 감사원 -

1. 2020-2021년 중앙정부 성과보고에 대한 감사결과 개요

- 뉴질랜드 감사원은 연례감사(annual audit)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및 서비스 성과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연례감사 보고서의 전체 구성은 제1장 중앙정부의 운영환경, 제2장 정부 재무제표 감사, 제3장 정부지출 관리 기능, 제4장 정부 성과보고 개선으로 되어 있음
 - 본고에서는 연례감사 보고서 내용 중 '제4장 정부 성과보고 개선'에 대한 뉴질랜드 감사원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 뉴질랜드에서 성과보고의 의미와 중요성
 - 성과보고는 공공부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 됨
 - 뉴질랜드에서는 「공공재정법」과 「준정부기관법(Crown Entities Act)」에 따라 중앙부처와 정부 소속 독립운영기관(Crown entities)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연례보고서는 의회와 대중에게 정부부처와 정부 소속 독립운영기관(Crown entities)의 연간 성과목표에 대한 연말 성과보고와 재무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연례보고서에는 공공조직의 전략적 목적(strategic intentions)과 재무관리 책임에 대한 사항도 포함됨
 - 효과적인 성과보고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개괄적으로 작성해야 함
 - 성과보고의 내용은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며 의회와 대중이 정보에 입각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2. 성과보고 개선을 위한 감사원 권고 내용

- 첫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
 - 현재 주요 다부처 활동(2020년 공공서비스법에 따른 합작사업 등), 특정 기관(single agencies)이 제공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보고는 요구되지 않음
 - 공공 책임성 및 성과보고에 대한 연구에서 공공부문이 성과를 보고하고 다루는 방식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함
 -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뉴질랜드 거주자의 삶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 및 목표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진전을 이루었는지 알고 싶어함
 -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보다 그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짐
 - ex. 승인된 기준에 따라 승인된 계약 수(x), 지역사회가 더 안전한지 여부(o)
 - 2020년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책임성시스템에 연간 예산에 대한 웰빙 목표 설정을 도입하기 위해 「공공재정법(1989년)」을 개정함
 - 공공책임성시스템에 대한 이 개정은 국민과 의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설정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단순히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 효과적인 공공책임성시스템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국민과 의회가 정부에서 목표한 계획(set out to achieve)을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정부가 뉴질랜드인의 웰빙(well-being)에 중요한 주요 성과들에 대한 기여를 보고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 지출로부터 무엇을 얻고, 정부가 핵심 목표에 대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이해를 도울 것임
- 둘째, 주요 기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 지난해 보고서에는 COVID 대응·복구기금, 주정부 성장기금과 같은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가 시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아닌 개별 조직 활동과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함
 -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수립되면 이니셔티브 전반에 걸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지출 포함), 어떤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지침을 설정할 것을 권고
 - 우리는 많은 이니셔티브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문서를 통하여 주요 이니셔티브·우선순

위 분야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출, 성과평가 방법 등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함

- 2019-2021년 예산 중 정신건강과 가족, 성폭력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니셔티브 샘플을 살펴봄

- 각 개별 이니셔티브와 관련 우선순위 영역 전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되는 기존의 여러 세출예산 및 그 밖에도 신규 채택·승인된 예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임을 알게 되었음

- 새로운 주요 정부 이니셔티브 및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 등을 승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예산이 반영된 특정 이니셔티브가 평상시 운영지출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지출이 사용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함

- 또한, 주요 이니셔티브 및 관련 우선순위 영역에 걸쳐 지출 및 성과에 대한 단편적인 보고가 발생함

- 현재 중앙정부 조직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통해 승인된 주요 이니셔티브의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단순히 전략적 의도와 연간 서비스성과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ex. 부서에 대한 연말 세출, 정부 소속 독립운영기관(Crown entities)에 대한 성과보고서

- 우리의 견해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은 장관이 발표한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예산의 승인, 예산에 따라 발생한 지출 및 해당 공공자금으로 달성한 성과정보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셋째, 성과보고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개별 기관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임

- 작년에 우리는 성과보고에 내재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함

- 성과보고에 관한 우리의 최근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과 개선해야 할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⁴⁾

- 공공부문 성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구역 보건위원회의 경우 10년)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성과지표 및 성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함

- 성과보고에 관한 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성과정보와 지표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을 발견함

- 2016-2019년 기간 109개 연례보고서에는 100개 이상의 성과지표(output indicators),

4) Office of the Auditor-General (2021)

28개의 연례보고서에는 200개 이상의 성과지표, 어떤 기관의 단일 연례보고서에는 340개의 성과지표가 있었음

- 또한,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함
 - 예를 들어, 2016-2019년 사이 33개 기관의 연례보고서에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 연례보고서에 총 1,849개의 성과지표가 있었으나 2017년에는 그중에 30%가 신규·변경되었고, 2018년에는 거의 50%가 신규·변경됨
-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주요 정부 이니셔티브까지, 정부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성과 및 성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추세를 분석하고 식별하는 풍부한 자원 역할을 할 예정임
- 내년에는 성과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성과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정부 기관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 개별 기업 수준, 다양한 부문 및 중앙정부 전체에서 시간에 따른 지출 추세를 제공할 계획임

참고자료

Office of the Auditor-General in New Zealand, “Observations from our central government audits: 2020/21,” 2021. 12., <https://oag.parliament.nz/2021/central-government>, 검색일자: 2022. 2. 28.

New Zealand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1,” Wellington, 2021. 10. 12., <https://oag.parliament.nz/2021/central-government>, 검색일자: 2022. 2. 28.

Office of the Auditor-General, “Th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of performance reporting,” 2021. 10., <https://oag.parliament.nz/2021/performance-reporting>, 검색일자: 2022. 2. 28.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서비스 성과보고를 위한 새로운 기준

(A new standard for service performance reporting)

- 2021. 10. 6., 뉴질랜드 재무부(The Treasury) -

1. 2021년 새롭게 변화된 사항 및 고려사항

- 정부 부처 및 준정부기관(Crown entities)은 서비스 성과보고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2022/23 연례보고서에 적용해야 함
 - 2022/23 평가 및 성과보고서(Statement of Performance expectations)를 작성할 때 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새롭게 변화된 기준의 영향을 고려
 - 다양한 입법적 보고 요구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들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보고 요건과 더불어 모든 요건을 숙지해야 함
 - 기준은 다음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또는 향상된 기대치를 설정
 - 적절하고 의미 있는 성과정보 식별 및 선택
 - 성과정보의 선택, 집계 및 제시에 대한 판단 공개
 - 성과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
 - 보고의 일관성을 보장
 - 재무부는 2021/22년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PFA) 또는 「준정부기관법」(Crown Entities Act, CEA)에 따른 보고대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
 - 2021년 11월, 출시 예정 예상
 - 2021년 12월, 전략적 의도 및 성과보고서
 - 2022년 1분기, 연례보고서

2. 서비스 성과보고 표준(PBS FRS 48) 가이드(2022/23)

- 기관은 예산에 대한 성과정보 및 성과보고서에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변화된 4가지 핵심 영역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
 - 보고는 기존의 「공공재정법」(PFA) 섹션19C(3)과 「준정부기관법」(CEA) 섹션153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준수해야 함

- 2022/23 연례보고서의 지출예산 및 성과보고서(Statement of Performance expectations, SPEs)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Focus 1. 적절하고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식별 및 선택

- 기관은 지출예산과 성과보고서(SPEs)에 대한 자신의 성과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때, 기준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재무부는 새로운 기준이 기관들의 성과보고서(SPEs) 등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강력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
 - 기관은 기존에 「공공재정법」(PFA)과 「준정부기관법」(CEA) 등 보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많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성과정보를 검토·반영해야 함
- 재무부는 다음 두 가지 과제를 기관들이 주요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
 - 작년의 성과정보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 신규 예산 또는 결과 등급, 기존 예산의 새로운 자금 지원 활동 및 결과 등급에 대한 성과정보 식별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성과보고 간의 연계가 명확하도록 성과정보 개선 필요
 - 서비스 성과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초기 개괄적인 분석을 수행하면 성과정보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경우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진행 중인 변경사항들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준은 기관이 성과정보 사용자의 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서비스 성과보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함(paragraph 15(a) of the standard)
 - 기관은 ‘이 정보가 전반적인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음
 -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성과정보를 선택할 때 ‘사용자 입장’의 객관적 관점을 취하는 것임
- 기관은 현재 성과정보 세트를 검토하여 노력을 집중해야 할 영역을 식별해야 함
 - 심사 시 감사인, 모니터링 부서, 재무부 및 대중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 신규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신규 혹은 증가된 활동 등
- 보고 대상을 결정할 때, 다음의 정보 특성을 고려해야 함(Paragraph 19)
 - 책임성(accountable/responsible)은 무엇인가

-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지(예상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부서외 지출 등을 위해 제공됨을 유의)
- 보고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것
 - 다른 전략과 계획, 예산요구서와 같은 다른 문서들이 필요
- 서비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 기관 제공 서비스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
- 그 밖에 서비스 성과정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요소
 - 서비스 제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 등
- 어떤 유형의 성과정보가 가장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Paragraph 20)
 - 기준은 사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의 범위를 기술
 - 정량지표, 질적지표, 질적 설명 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
 - 재무부의 외부성과보고 개선지침(the guidance improving external performance reporting)은 성과보고에서 질적 정보와 평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
- 질적 특성의 유용성 및 질적 특성이 완전히 달성되기 어렵게 하는 포괄적인 제약 간 균형을 고려(Paragraph 8-9)
 - 정보의 질적 특성은 정보 이용자에게 성과정보를 유용하게 하고 외부보고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준에서 더욱 강조됨
 - 6가지 질적 특성: 관련성, 충실한 표현, 이해 가능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 성과보고를 선택하고 제시할 때 모든 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 질적 특성 중 관련성과 충실한 표현은 성과정보가 충실한 대표성을 갖게 해주며, 이러한 정보는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중대한 오류가 없어야 함
 - 성과정보를 선택할 때 관련성(이해 가능성 포함)은 성과보고의 목표 달성에 중요하며, 관련성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음
 - 중요성 개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무엇을 보고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성'은 필수적이며 기준은 포괄적 제약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설명함
 - 이러한 질적 특성의 완전한 달성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히 절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어떠한 하나의 정확한 형태로 규격화하기는 어려움
 - 정보의 포괄적인 제약에는 중요성, 비용-편익, 질적 특성 간의 균형 등이 있으며 성과보고 및 세부 정보 수준에서 정보 선택 등에 중요
 - 사례에 따라 질적 특성 간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히 특성 간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

- 성과보고의 지속적인 개선과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에 대한 균형 유지
 - 성과보고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선의 기회가 항상 존재함
 - 개선을 위한 한 가지 핵심 메커니즘은 기관이 자신의 성과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임
 -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는 Forcus 3, 4를 참고
 - 수정된 성과정보 세트를 고려
 - 성과정보에 대한 변경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 기관은 성과정보의 선택기준, 즉 질적 특성에 대해 수정된 내용을 검토해야 함
- Forcus 2. 기관은 서비스 성과보고의 선정, 측정, 집계, 제시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근거를 공시해야 함
- ‘결과 등급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기관은 성과정보를 식별 및 선정하고 보고할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을 위해 기관은 기준의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주요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 보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성과정보를 선택 시 강력한 프로세스를 사용
 - 주요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캡처·기록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
 - 연례보고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중요성을 포함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판단의 유형을 식별
 - 기관은 성과정보와 성과측정, 설명 등에 대해 어떻게 검토·업데이트·개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를 위해 문서화해야 함
 - 기관이 공개해야 할 주요 판단 근거는 새로운 지표 선정, 기존 지표의 변경(지속적인 개선) 및 성과 프레임워크의 전반적 검토와 관련 있음
 - 신규 지표 추가, 기존 지표 변경, 전체 프레임워크 등 정기적 검토를 위해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정보의 공개 위치에 대한 옵션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단, 일부 조직의 판단 공시 접근법은 부록3 참조)
 -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을 고려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 그 이유를 포함하여 성과정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한 프로세스를 기록해야 함
 - 해당 자원의 보유는 차후 성과정보 등에 대해 주요 판단 근거를 공개할 수 있게 하며, 다른

관련된 모든 보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함

- 재무부는 다음의 수정을 통해 2022/23년 지출예산 및 성과보고에 대해 기관들이 공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 판단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성과정보가 전년도부터 변경될 때마다 변경사항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참고사항이 포함되도록 서식 및 지원지침을 개정할 예정
 - 예산안에 대한 많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석(Notes)보다는 전체 공지(a paragraph)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다중 카테고리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음

■ Forcus 3. 기관은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보고할 필요(Paragraph 37)

- 이 섹션의 기준은 전기의 성과정보를 요구함
 - 기관들은 금년도에 보고된 모든 정량적 자료들에 전기의 비교 정보를 보고하고 해당되는 경우 정성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비교정보를 보고해야 함
 - 다만, 신규 활동이나 이전의 성과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질적인 정보의 경우 기관은 비교정보가 당기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주관적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 제공할지에 대한 판단 등이 필요
- 2022/23년 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 보고 시 2021/22년차 성과정보 비교 원칙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는 성과정보의 개선 필요성 감소, 중요한 신규 자금조달, 신규 활동 정보 미포함 등을 의미하지 않음
 - 비교정보는 기관의 신규활동이나 증가한 자금조달을 위한 사례의 일부분으로 단순한 기준 정보로 볼 수 있음
 - 전기의 상황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성이 높고 재무보고를 위한 접근방식 또한 유용할 수 있음

■ Forcus 4. 보고의 일관성 요구

- 새로운 기준은 일관된 성과정보 제공 및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함(Paragraph 40 of the standard)
- 재무부는 기관들이 성과정보의 변경을 검토할 때 강력한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일관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성과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 및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운영의 변경 등으로 성과정보가 개선되어야 함에는 구별이 필요함
- 이 기준은 보고의 개선을 위한 변경과 비교 가능성의 이점, 보고의 일관성 유지 간의 분별을 위한 균형점을 인식하게 해줌
 - 성과보고 중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적시한 기관을 찾아 제시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 섹션의 자료를 참조

참고자료

The Treasury, “A new standard for service performance reporting,” Guide, 2021.10.6.,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new-standard-service-performance-reporting>, 검색일자: 2022. 2. 28.

The Treasury, “Service performance reporting standard(PBE FRS 48): Guidance for 2022/23 Estimates and statements of performance expectations,” Guide, 2021.12.20.,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service-performance-reporting-standard-pbe-frs-48>, 검색일자: 2022. 2. 28.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2021)

– 2021. 10. 28., 뉴질랜드 재무부(Treasury) –

- 본 자료는 뉴질랜드 재무부가 2018년에 출시한 생활표준 프레임워크⁵⁾(Living Standards Framework, 이하 LSF)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된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에 대한 설명과 LSF의 도구인 대시보드, 피드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는 아동의 웰빙과 문화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2018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음
 - 아동의 웰빙과 문화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심층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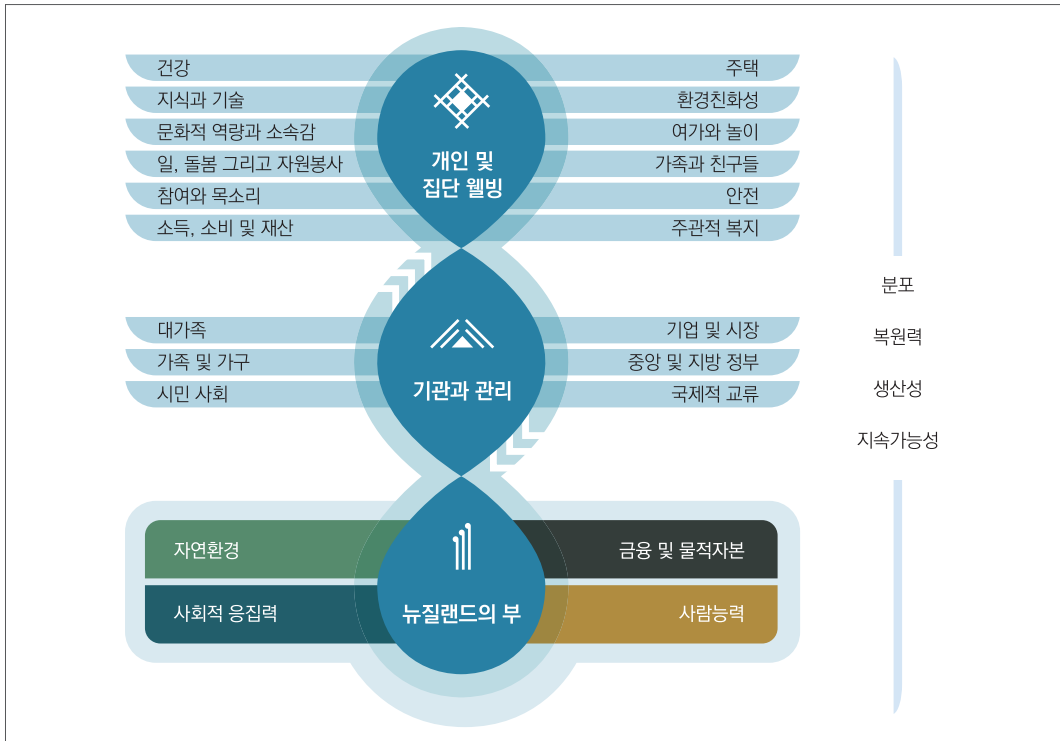
1.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 개요

- [그림 1]은 2021년 LSF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으로, 총 세 단계로 나뉘지며, 각 단계의 분석 길잡이(prompt)가 존재함
 - 1단계: 개인 및 집단 웰빙(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
 - 1단계의 프레임워크는 웰빙이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와는 달리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 웰빙의 개념을 도입함
 - 아동의 웰빙과 문화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12개 웰빙 영역의 정의를 개정하였음
 - 2단계: 기관과 관리(Our Institutions and Governance)
 -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의 새로운 단계로, 개인과 집단의 복지를 촉진하고 국가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기관이 하는 역할을 담고 있음
 - 3단계: 뉴질랜드의 부(The Wealth of Aotearoa New Zealand)
 - 개인의 능력, 자연환경 등 국민계정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의 일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한 단계임
 - 웰빙 영역의 일부분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여 서로 간의 중복되는 관계를 명확히 함
 - 분석 길잡이(Analytical prompts)

5) 뉴질랜드 생활표준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19년 봄(Vol.6 No.1), pp. 48~56 과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20년 봄(Vol.7 No.1), pp. 55~61을 참고 바람

- 분석 길잡이는 연구자들이 다른 기준을 통해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단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함

[그림 1] 2021년 LSF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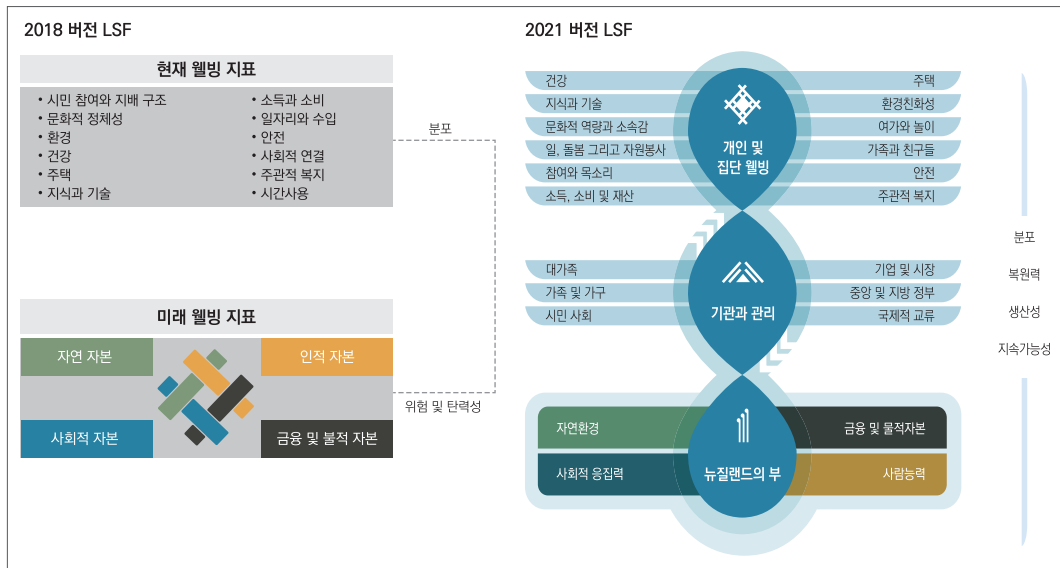
자료: Treasury,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2021," 2021, p.10

2. 2018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와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의 차이점

- [그림 2]는 2018년과 2021년 LSF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여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내용에 적합하도록 제목 변경, 새로운 프레임워크 추가 등이 있음
- 1단계는 각 영역(domain)이 개인 및 집단 웰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역의 제목을 변경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동 복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 12개 영역의 정의를 수정함
 -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은 문화가 정체성 이상의 웰빙에 기여한다는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과 소속감(Cultural capability and belonging)으로 변경됨
 -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놀이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시간 사용(Time use)은 여가와 놀이(Leisure and play)로 변경됨

- 일자리와 수입(Jobs and earnings)은 가족생활과 사회 전반에 유급, 무급으로 기여함을 반영하기 위해 일, 돌봄 그리고 자원봉사(Work, care and volunteering)로 변경됨
-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은 아이들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Family and friends)로 변경됨

[그림 2] 2018년 LSF와 2021년 LSF 차이



자료: Treasury,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2021," 2021, p.17

- 환경(Environment)은 국부의 일부로서 웰빙의 직접적인 역할과 더 넓은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환경 친화성(Environmental amenity)으로 변경됨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가 참여와 목소리(Engagement and voice)로 변경되고, 관리(governance)는 제도적 단계(institutional level)로 이동함
- 2단계는 새로 추가된 프레임워크로, 기관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 문화가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3단계는 이전에 '미래 웰빙의 지표' 또는 단순히 '자본(the capital)'으로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자본'은 금융/물리적 자본에만 사용되며, 개인의 능력, 사회적 응집력, 자연 환경 등을 포괄하여 '뉴질랜드의 부(the Wealth of Aotearoa New Zealand)'로 변경함

- 2021년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를 개발하기 위해 마오리족(Te Ao Maori)의 관점, 태평양인들의 관점(Pacific Peoples), 아동 복지의 중요 요소, 문화가 복지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춤

3.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 대시보드의 목적 및 피드백 요청사항

- 대시보드는 2018년에 재무부가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의 사용을 지원하고 웰빙 보고서⁶⁾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 도구로, 2019년에는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지표 검토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새로운 생활표준 프레임워크(LSF)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대시보드 출시를 목표로 함
 - 2022년 대시보드에는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새로운 기관의 수준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며,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음
 -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표는 기존 대시보드의 지표 평가에 사용되었던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됨
 - 측정되는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성
 -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지표와의 유사성
 - 정책 개입에 대한 민감성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
 -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세분화 가능성
 -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지만 지표 추가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지표를 많이 추가할수록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임
 - 프레임워크의 각 요소에 대한 핵심 지표만 포함하면서 아동 중심 지표와 성인 중심 지표 간 균형유지를 목표로 함
 - 전문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대시보드 관련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음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함
 - 현재와 추가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이 올바른가?
 - 지표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었는가?
 - 기준에 따라 포함되었지만 품질이 나쁜 지표가 있는가?

6) 재무부는 현재 「공공재정법」(the Public Finance Act)에 의해 4년마다 뉴질랜드의 웰빙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2022년 말에 첫 번째 웰빙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와 과거의 웰빙 동향과 웰빙의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위험 요소 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다양한 기준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있는가?
- 프레임워크의 각 요소에 추가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 제공한 데이터 자료에 대한 링크는 올바른지 여부 및 누락된 링크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뉴질랜드 재무부,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tp/living-standards-framework-2021> 검색일자: 2022. 1. 26.

재정성과평가센터,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20년 봄(Vol.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pp.55~61.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성과 보고의 문제, 진행 상황 및 가능성

(Th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of performance reporting)

– 2021. 10. 20., 뉴질랜드 감사원(Office of the Auditor-General) –

- 본 자료는 성과 보고(Performance reporting)의 문제점과 진행 상황 및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성과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성과 보고(Performance reporting)는 공공기관이 공공자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더 나아가 뉴질랜드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 왔는지 여부를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하는 주요 방식임
 - 성과 보고는 의회와 대중에게 공공 부문의 역량, 신뢰성 및 정직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제공하며, 성과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조직에 필요한 자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
 - 서비스 또는 기타 산출물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
 - 이러한 서비스 또는 산출이 계획된 결과에 미치는 영향

1. 보고서 개요

- 성과 보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의 검토, 성과 보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터뷰, 성과 보고 관련 선행연구 및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 등의 방법을 사용함
 - 성과 보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사용되는 모형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성과 보고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 교통,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2016~2018년까지 발간된 33개 공공기관 연차보고서의 성과정보를 분석함
 - 공공 부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성과 보고를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공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성과 보고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과 기회를 주제로 함
 - 이 외에도 연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성과보고의 질 관련 선행연구와 뉴질랜드, 여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성과 보고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함

2. 지난 30년간 성과 보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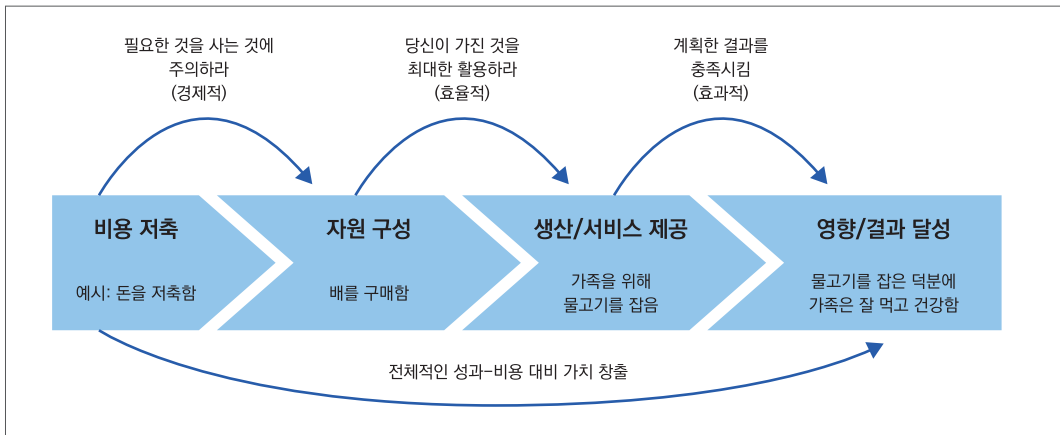
- 공공 부문은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공 재정·관리·책임 제도가 필수적이며, 이는 정기적인 성과 보고에 의존하고 있음
 - 성과 보고시스템은 다양한 조직과 인력의 복잡한 관계를 정의함
 - 사람, 공공기관 네트워크와 관련 있는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성과 보고시스템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성과 보고제도에 대한 마지막 검토는 1980년대 후반 공공 재정, 경영 및 책임 제도의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었음
 - 이러한 개혁은 공공 부문이 반응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루어짐
 - 개혁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성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1988년 「공공기관법」(State Sector Act), 1989년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년 「지방정부 개정법」(Local Government Amendment Act)을 제정함으로써 달성됨
 - 효과적인 성과 보고 달성은 수십 년 동안 중요한 문제였으며 현재에도 효과적인 성과 보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공 조직은 성과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는 성과정보의 분석, 보고 및 사용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됨

3. 성과 보고의 현황

- 첫번째로 관련 모형들을 검토하였으며, [그림 1]은 성과 보고의 일반적인 모델로서 각 단계에서 자원 사용의 경제성, 결과물 제공의 효율성, 결과 도출의 효과 등 다양한 차원의 성과를 평가함
 - [그림 1]의 모형은 일부 조직에서만 유용하게 사용되고, 조직은 제어할 수 있고, 쉽고 명확하게 정의되며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결과를 가져야 함
 - 이러한 제약으로 [그림 1]은 의회와 대중이 공공 부문 실적에서 찾는 공공 부문의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복잡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결과를 공유 및 제공해야 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네트워크 성과를 설명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위 모형은 결과가 올바른 것인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충격에 탄력적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음

[그림 1] 성과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자료: Office of the Auditor-General, "Th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of performance reporting," 2021, p.6

- 이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몇몇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2019년 재무부가 개발한 공공 가치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임
 - 공공 가치 프레임워크는 모형의 입력과 출력을 계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공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 추구, 모니터링, 재정 투입 관리, 장기적 지속 가능성 지원, 요구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성공을 측정함
- 두 번째로 성과 보고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성과 보고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과 보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검토함
 - 성과 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공공부문 계획 및 보고 문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
 - 조사결과, 성과 보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종사자들은 성과 보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작성된 많은 보고서들은 관련 규칙과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음
 - 33개 공공기관의 연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이 보고하는 결과가 각 부문에 적합하였으며, 성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정부 주택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정보 대시보드를 제작하여 성과 보고의 질을 높임
- 성과 보고를 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정보를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하지 않고,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음

-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은 매년 큰 변화 가능성이 있고 일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량의 성과정보를 접해야 함
 - 각 분야의 연례보고서들은 평균 110쪽에 달하며, 수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감사원은 이에 무엇이 중요한지 식별하기 어렵고,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목표 및 조치가 부족하고, 최신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뉴질랜드의 공공 관리 및 책임 시스템은 공공 조직의 보고된 성과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에 의존적임
- 모니터링은 성능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제공함
 -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과 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정보의 사용자들 사이에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현재 모니터링팀의 역량보다 광범위하고 통합된 성과의 필요성,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과 모니터링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의논함
- 공공 부문이 항상 성과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성과관리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은 입법부, 장관, 중앙 기관, 공공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됨
 - 입법부는 성과정보를 원하거나 직접 또는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장관들의 성과정보 활용은 가변적이고 제한적임
 - 중앙 기관에서는 성과정보를 급할 때만 활용함
 - 공공단체에서 관리자들의 성과정보 사용은 각 단체의 기능, 수준, 역할에 따라 다름
 - 공공자원이 잘 지도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활동과 서비스가 뉴질랜드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결과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공의 책임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중에게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함

4. 성과 보고의 개선 기회

- 연구를 통해 성과 보고는 효과적인 공공관리, 재정 또는 책임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성과 보고는 의회와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자체에 의미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미 성과 보고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

- 성과 보고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뉴질랜드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룬 성과 보고에 초점을 맞춤
 - 지금보다 맞춤형 성과 보고 필요
 - 정보의 통합 및 일치 필요
 - 모니터링 및 정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 제공
 - 성과 보고 관련 능력의 향상 필요
- 성과 보고를 더욱 유용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더욱 맞춤형 성과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
 - 보고서 외에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과 보고
 - 성과를 분석하고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 연구 필요
 -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로 품질, 도로 개방 여부, 안전에 초점
 - 산업 부문에서는 공공 부문과 산업의 협력 여부, 정부 투자 진행 여부에 초점
 - 의회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에 자금 지원 여부,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일을 잘 진행하는지 여부에 초점

■ 뉴질랜드의 성과 보고는 공공 조직의 의도와 할당된 지출을 개별 조직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움

■ 성과를 통합하는 기술은 공공 조직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캐나다의 'GC InfoBase'는 복잡한 정부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더 단순한 공공 부문의 성과 보고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킴
- 미국의 'Performance.gov'는 정부 전체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방정부가 연구하고 있는 목표와 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기관들이 수행하는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줌

■ 양질의 성과보고를 위해서는 성과감사와 모니터링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각 상황에 맞는 성과감사의 확장을 통해 성과정보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음

- 즉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공 부문의 성과정보도 점차 변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웰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나 장기전망에 대한 브리핑이 중앙정부의 새로운 입법요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 예산의 한계지출보다는 총지출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짐
- 또 정기적이고 표준화된 감사 절차는 재원 배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성과감사가 일반적인 감사보다 적극적이고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면, 성과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역할을 넘어 성과에 대한 개선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이 적시에 행동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총기, 가족 및 성폭력, 코로나19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시행 등에서 시행됨
- 현재 모니터링 기능은 각 분야 내 공공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회와 대중이 지역 전체, 특정 정책, 장기 및 중·단기 전체에 걸쳐 공공 부문 성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심화되어야 함
- 최근 공공 부문이 장기적인 이슈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들이 점점 더 통일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부문의 결과 기반 모니터링 및 성과 보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성과 보고가 발전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친 리더십 역량 구축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직의 목표를 알리고 반영될 성과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활동과 서비스가 뉴질랜드에 어떤 가치 및 결과를 기여하였는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뉴질랜드 감사원, <https://oag.parliament.nz/2021/performance-reporting>, 검색일자: 2022. 1. 25.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6. 아일랜드

2021년 지출검토 보고서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 2021. 12. 3.,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은 2021년 7월 첫 번째 지출검토 보고서(The Spending Review papers)*를 발간한 데 이어, 2021년 12월 현재 총 여덟 개의 보고서를 연이어 발간하며 주요 정책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COVID-19) 및 인프라 등 주요 정책 과제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지출검토는 정책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에서 정부지출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각 부처의 지출 전략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기존 지출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지출의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재정전략을 목표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도모
 - 본고에서는 지난 해 지출검토 보고서에 이어 추가로 발간된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으며, 보건, 복지, 사회정책, 인프라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아일랜드 2021 지출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 분야 | 제목 | 주요 내용 |
|-----|--|---|
| 농축산 | 경산우 환경 효율 프로그램 (Beef Environmental Efficiency Programme-Sucklers, BEEP-S) | 쇠고기-경산우*(BEEP-S) 환경 효율 프로그램의 목표 및 계획에 대한 평가 * 경산우(suckler cow): 송아지를 한 번 이상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
| | 마을재생사업 심층평가 (Focused Policy Assessment of the Town and Village Renewal Scheme) | 사업 운영 관련 잠재적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재생사업(Town and Village Renewal Scheme, TVRS) 전반에 대해 검토함 |
| 보건 | COVID-19 위기 당시 항공 부문에 대한 국가 자금 지원 검토 (Examination of State Funding to the Aviation Sector during the Covid-19 crisis)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이 컸던 항공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국가의 자금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재평가하였으며, 그 전망에 대해 논의함 |

〈표 1〉의 계속

| 분야 | 제목 | 주요 내용 |
|-------|--|--|
| 보건 | 의료분야에 대한 과거 자본투자 분석 (Analysis of Historical Capital Investment in Healthcare) | 아일랜드의 의료분야 자본투자 동향 및 추세 검토, 의료 관련 지표 조사, 국제적 동종 업체와의 비교를 통한 아일랜드 공공의료의 성과 등을 검토함. 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 개발을 권고함 |
| | 미래 의료분야 자본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찰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Future Capital Investment in Healthcare) | 공공의료 관련 자본투자의 국제적 기준과 아일랜드 정책 간 비교,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일련의 초기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또한 '2018-2027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에 따라 의료분야 투자를 분석하여 새로운 투자기준 개발 및 예상되는 지출규모에 대해 검토함 |
| | 불확실성 및 위험 대처: 의료분야의 미래 자본투자에 대한 기준등급 예측의 적용 (Dealing with Uncertainty & Risk: The Application of Reference Class Forecasting to Future Capital Investment in Healthcare) | 각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동 문제를 다루고 있음. 국제 및 아일랜드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비용 초과 가능성과 규모를 검토하는 데에 활용함. 추후 '2018-2027년 국가개발계획(NDP)' 내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임 |
| 복지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주택지원 및 총비용 확대 - 범위 검토 및 분석 (Expanding Provision of Home Support and Total Cost of Long Term Care for Older persons - A Scoping Review and Exploratory Analysis)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지원 관련 가용 데이터와 이를 다른 환경에서 검토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가정 내 지원의 증가에 따른 지원규모 및 비용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함 |
| | 장애인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지출 및 제공 동향 (Social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rends in Expenditure and Delivery of Services) | 2015~2020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지출이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이 기간 동안의 지원규모와 지원내용의 변화를 분석함 |
| | 하위기관과 초과근무 관련 지출이 아일랜드 보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Factors Affecting Agency and Overtime Expenditure in the Irish Health Service) | 보건부문의 하위기관 및 초과근무 관련 지출이 개별 서비스에 미치는 잠재적 요인을 조사하고, 하위기관의 수, 초과근무, 상근 여부 등 각 변수의 잠재적 연계성, 근무시간 증가가 보건서비스 확대에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분석함 |
| 사회 정책 | 장애 및 특수교육 지출 - 생애주기별 지원 (Disability and Special Education Expenditure - Lifecycle of Supports) | 장애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관련 지출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내 지원유형 및 지출규모에 대해 재검토함 |
| | 대유행 실업급여(PUP) 지급과 고용임금보조금제도(EWSS): 추세 및 상호 작용 (The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and the Employment Wage Subsidy Scheme: Trends and Interactions) |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실업급여(The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PUP)와 임시 임금보조금제도(the Temporary Wage Subsidy Scheme, TWSS), 고용 임금보조금제도(the Employment Wage Subsidy Scheme, EWSS) 관련 지출 및 수혜 동향에 대한 검토, 각 제도 간의 상호작용 및 통찰,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논의함 |
| 인프라 | 아일랜드의 도로 및 철도망 보호 및 신규 지출 (The Protection and Renewal Expenditure on Ireland's Road and Rail Networks) | 2007~2020년 아일랜드 도로·철도망 보호 및 신규 투자, 정비 과정 그리고 자본투자 간의 관계, 필수 정비 완료가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함 |
| | 자전거 통근 관련 제도 검토 (An Examination of the Cycle to Work Scheme) | '자전거 세금 인센티브 제도(the Cycle to Work tax incentive scheme)', 즉 자전거 통근을 권고하기 위해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

〈표 1〉의 계속

| 분야 | 제목 | 주요 내용 |
|------|--|--|
| 인프라 | 사회주택 경상지출 프로그램 분석 (Analysis of the Social Housing Current Expenditure Programme) | 사회주택 경상지출 프로그램(the Social Housing Current Expenditure Programme, SHP)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 분석함 |
| | 아일랜드 주택시장 동태 분석 (An Overview of Irish Housing Market Dynamics) | 아일랜드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주택 소유능력이 부족한 한편, 임대주택 개발도 더딘 것이 특징임. 보고에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정부지출 관련 데이터 분석 등 광범위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설명함.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비교와 통찰을 포함하고 있음 |
| | 노숙인 지원의 사회영향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SIA) of Homelessness Supports) | 노숙인 주거 지원 관련 지출 및 정책 수혜 규모를 분석함. 특히 2020년 더블린 지역(the Dublin region)의 성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
| | 비용투입 치안유지 계획 및 다년도 예산편성 추진 (Progressing the Development of the Costed Policing Plan and Multi-Annual Budgeting) | 가르다 개혁 계획(the Garda Reform plan), 즉 “우리의 미래를 위한 치안 서비스(A Policing Service for our Future)” 를 위해 여러 가지 재정 조치를 계획. 관련 발간물 중 ‘지출검토(Expending Reviews)’는 공공지출개혁부,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최초의 보고서임 |
| 환경 | 환경기후통신부 주관 재무외기금 검토 (Review of non-Exchequer Funds under the aegis of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Communications) | 환경 및 기후 지출 분야의 세 가지 재무외기금인 ‘환경기금, 에너지효율기금, 기후행동기금’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을 검토하고, 각 기금의 근거, 집행과정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찰함. 그리고 지속적인 기금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함 |
| 외교 | 해외임차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리방안 (Review of the Management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verseas Leased Property Portfolio) | 2016~2020년 외교부의 해외임차재산 포트폴리오 관리 및 관련 비용을 검토함 |
| 기업지원 | 국가지원 대출제도 평가 - 프레임워크 (Evaluating the State-Supported Loan Schemes - a Framework) | 기업이 이용가능한 국가지원 대출제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보고는 기존의 국제 관행과 아일랜드 평가모형을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 |
| 행정 | 신임 공무원의 생애비용과 10년 이상 근무시 예상 퇴직금과의 관련성 (Lifetime cost of New Entrants to the Civil Service in the context of projected retirements over the next 10 years) |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향후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예상 퇴직금과, 10년간 신임 공무원에게 투입되는 생애비용 간 관련성을 분석함 |
| | PAY(직무 추가 연한)에 대한 검토 (Review of Professional Added Years) | 기술직 및 전문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에 더하여 연금 수령 연수가 추가된 PAY(Professional Added Years)에 대해 살펴봄 |
| | 아일랜드 교도소의 업무 및 훈련 프로그램 검토 (Review of the Programme of Work and Training in the Irish Prison Service) | 아일랜드 교도소 소관 업무 및 훈련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세입·세출 및 노동시장 관련성,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 등을 검토함 |
| | SAFE-PSC-MyGovID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The SAFE-PSC-MyGovID Framework for Public Service Identity Management) | SAFE, Public Services Card, MyGov의 세 가지 공공서비스 관리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 |

출처: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지출검토(The Spending Review)- 4~8부

참고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Fourth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11.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87f49-minister-mcgrath-publishes-the-fourth-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일자: 2022. 1. 24.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Fifth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11. 12., <https://www.gov.ie/en/press-release/00e3b-minister-mcgrath-publishes-the-fifth-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일자: 2022. 1. 24.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Sixth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11. 19., <https://www.gov.ie/en/press-release/7aabd-minister-mcgrath-published-the-sixth-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일자: 2022. 1. 24.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Seventh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11. 26., <https://www.gov.ie/en/press-release/1540b-minister-mcgrath-publishes-the-seventh-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일자: 2022. 1. 24.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Eighth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12. 3., <https://www.gov.ie/en/press-release/1c109-minister-mcgrath-publishes-the-eight-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일자: 2022. 1. 24.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2021년 연례 컨퍼런스

(IGEES Annual Conference 2021)

– 2021. 12. 22., 아일랜드 경제평가서비스(IGEES) –

- 2021년 12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 IGEES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정부경제평가서비스(Irish Government Economic and Evaluation Service, 이하 IGEES)의 역할과 경제·노동시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참고 아일랜드 정부경제평가서비스

- ◆ 아일랜드 정부경제평가서비스(IGEES)는 지출검토 수행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조직으로, IGEES의 발간물은 지출검토의 기본 자료로 활용됨
- ◆ 2012년에 설립된 IGEES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각 부처에 소속되어 지출검토와 분석을 담당하는 하위 기관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지출검토를 위해 가용한 정보의 생산, 교육·훈련, 정책의 성과평가, 지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등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지속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출검토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고 증거 기반 정책 도모, 실무부처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을 마련하는 IGEES의 주요 역할에 전문가 및 청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공무원 전반에 걸쳐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3일간 진행된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요약·정리하였으며, 기후, 보건, 경제 등 인프라 등 주요 검토 분야와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아일랜드 2021년 연례 컨퍼런스 주요 내용

| 분야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기후 | Climate Policy and Expenditure Frameworks (Laura Kevany) 기후 정책 및 지출 프레임워크(로라 케바니) | - 아일랜드 온실가스 배출원인 파악 및 기후변화 관련 도전과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지출 계획 | 1일차 |
| | Good Stick, Bad Carrot: The Impacts of Removing Fossil Fuel Subsidies and Increasing Carbon Taxation in Ireland (Mert Yakut) 좋은 채찍, 나쁜 당근: 아일랜드의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탄소세 인상 효과(머트 야쿠트) 좋은 채찍, 나쁜 당근: 아일랜드의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탄소세 인상 효과(머트 야쿠트) | - 아일랜드가 2020년 비ETS(non-ETS)*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2030년 목표도 놓칠 가능성 농후 - 탄소과세 등 환경세 개혁과 화석연료 보조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non-E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다루지 않는, 회원국 수준에서 결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 1일차 |
| 농축산 | Beef Environmental Efficiency Programme Sucklers (BEEP-S) (Charlie Banks and Anthony Cawley) 쇠고기-경산우(BEEP-S) 환경 효율 프로그램(찰리 뱅크스 & 앤서니 코울리) | - 쇠고기-경산우(BEEP-S) 환경 효율 프로그램의 목표 및 계획에 대한 평가 *경산우(suckler cow): 송아지를 한 번 이상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 아일랜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쇠고기 부분의 수익성 및 환경문제 등 남아있는 과제 - 동물복지와 유전체학(genomics) 수단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쇠고기 관련 제도,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고찰 | 1일차 |
| 교육 | LGBTI+ Youth Capacity Building Grant Programme (Fiona Corcoran) LGBTI+ 청소년 역량강화 보조금 프로그램(피오나 코르크وران) | - 정부가 주도하는 '2018-2020년 LGBTI+ 국가청소년 전략'의 목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 이행평가 수행 - 성 관련 다양성 인정, 추가교육에 대한 수요, 사전 및 사후 평가 등 | 2일차 |
| 보건 | Driving Evidence Informed Policy Making Spending Review Healthcare (Mark Hennessy) 증거 기반 의료정책 지출검토(마크 헤네시) | - 보건소 개인보호장비 수요 및 지출추계 - 첨단 의약품 지출 검토 - 의료 분야 자본투자의 국가개발계획(NDP)* 이력 - 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식별 및 근거자료 제시, 정책결정자의 참여 유도 *NDP(국가개발계획):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공공자본투자 관련 기본계획 | 2일차 |
| | Applications of Economic Modelling for Shaping Health Policy (Patrick Moran & Terence Hynes) 보건정책 형성을 위한 경제모델링의 응용(패트릭 모란 & 테렌스 하인즈) | - 보건정책 중 의료인력 계획 등 장기 프로젝트 관련 논의 -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트리 구성 - 정책문제의 특성 이해, 문제에 대한 개념화와 합의도출을 통한 증거 기반 모델 구축 - 사전·사후 평가의 틀 개발, 부처간 협업 및 홍보 지원 | 2일차 |
| | Impact of Covid-19 on remote working in Ireland (Patrick O'Brien) Covid-19가 아일랜드의 원격근무에 미치는 영향(패트릭 오브라이언) |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시장의 큰 변화, 특히 원격근무의 활성화는 구조적 변화 또는 '단계적 변화(step-change)'를 유발함 - 잠재적으로 생산성과 혁신성 향상, 노동력 참여율 향상, 경쟁력 향상, 이동 패턴 및 노동력 공급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현재 불확실 - 향후 원격근무 문화의 지속에 따라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데,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원격근무 허브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 3일차 |

〈표 1〉의 계속

| 분야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경제 | Capital Demand Analysis & the NDP (Jane Burmanje) 자본 수요 분석 및 NDP(제인 버마니) | - 아일랜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자본 수요 분석 및 국가개발계획 검토 1) 극심한 주택 수요·공급 문제 2)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문제 3) 기후변화 관련 교통 및 에너지 투자 4)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 5) 교육 인구통계 감소 문제 | 2일차 |
| | Outlook for Consumer Price Inflation (John Harnett and Eimear Flynn)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존 하넷 및 에이머 플린) |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에 대한 고찰(기저효과, 수요-공급 불균형, 에너지 가격변화 등) - 인플레이션 전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금융정책의 방향 등에 따라 일 시적일지, 지속적인일지 예측) | 3일차 |
| | The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and the Employment Wage Subsidy Scheme: Trends and Interactions (Aoife Doyle and Jeff Dwan O'Reilly) 대유행 실업급여(PUP) 지급과 고용임금보조금제도(EWSS): 경향과 상호작용(에이이프 도일 및 제프 드완 오레일리) | - PUP 및 EWSS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었으나, 지출규모, 수혜범위 및 추진방식 측면에서 전례가 없었음 - 두 제도에 걸친 총지출은 공공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공공재정과 사회보급금(SIF) 적자를 유발 - 본 논문은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보다, 국고의 재무적 영향 및 시장왜곡(노동공급, 임금수준 결정 등)과 같은 정책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룸 | 3일차 |
| Tenure Shift from Ownership to Rental & Policy Implications (Eoin Corrigan) 소유에서 임대 및 정책적 의미로의 주택점유율 전환(어인 코리건) | - 아일랜드 '내집마련(homeownership)' 비율 폭락 - 노동시장과의 연관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 가계부채의 심각성, 세대원 수의 변화, 주택담보대출에의 접근성, 거시경제적 위험 등 다양한 원인 검토 | 2일차 | |

출처: 아일랜드 정부경제평가서비스(IGEES), 「IGEES 2021년 연례 컨퍼런스(IGEES Annual Conference 2021)」

참고자료

The Irish Government Economic and Evaluation Service(IGEES), *IGEES Annual Conference 2021*, 2021. 12. 22., <https://igees.gov.ie/igees-annual-conference-2021/>, 검색일자: 2022. 1. 24.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7. 캐나다

2020-2021 부처별 결과보고서 발간

(2020-21 Departmental Results Reports)

- 2021, 12., 재정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

- 캐나다 재정위원회 사무국이 발표하는 부처별 결과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s) 및 사업계획서(Departmental Plans)는 본 동향지에서 시리즈로 다루어 왔음
- 캐나다의 부처별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는 기존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안 추계 과정의 일부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됨
- 2017년부터 캐나다 재정위원회 사무국은 ‘캐나다 정부 인포베이스(GC InfoBase)’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각 부처의 성과 측정 결과 및 성과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였으며, 최근 2020-2021 부처별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하였음
- 각 부처가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는 프로그램별로 달성된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여 캐나다 정부 인포베이스에 업데이트함
 - 2020-2021년에는 총 86개 부처가 1,541개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성과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2,722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고 발표함
 - 52.7%에 해당하는 1,242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31.3%에 해당하는 739개의 지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377개의 지표는 측정이 불가하였음

참고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gc.ca/ems-sgd/edb-bdd/index-eng.html#start>, 검색일자: 2022. 1. 28.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8. 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정책 전략 조정 및 관리

(Digital strategy: Assessment instead of systematic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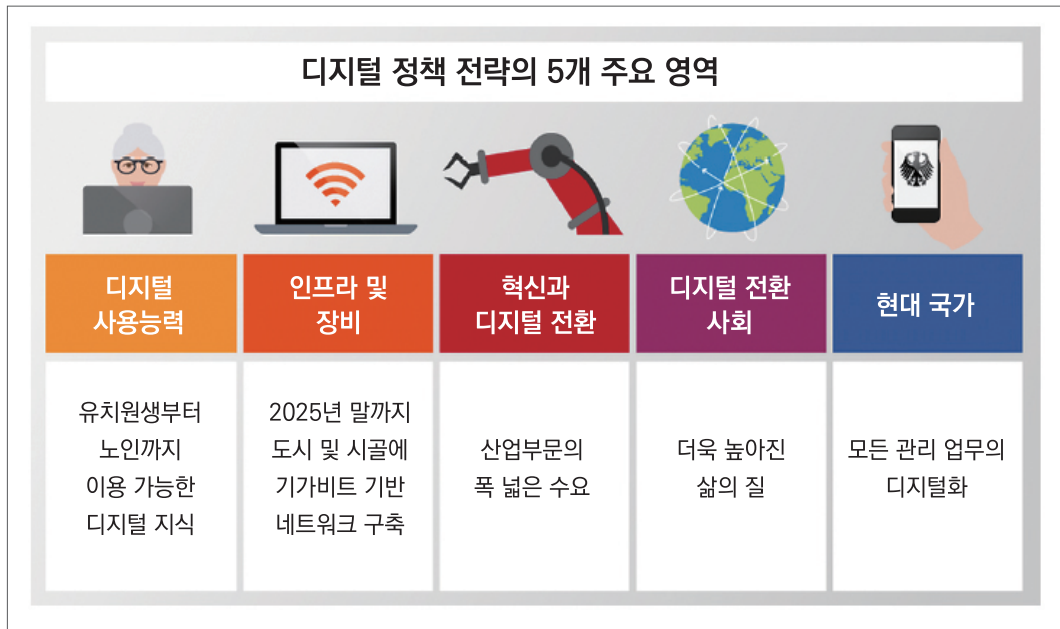
- 2021. 11. 24., 독일 감사원(Bundesrechnungshof) -

- 본 보고서는 독일을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디지털 국가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2020년 독일은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는 EU 28개 회원국 중 12위를, 디지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21위를 기록하였으나, 개혁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디지털 국가, 포괄적인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모든 연령대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목표로 함
- 2018년 6월 27일, 독일의 디지털 내각(Digital Kabinett)⁷⁾은 연방정부를 위한 공통 디지털화 전략(Digitalisierungsstrategie) 개발을 결정하였으며, 2018년 11월 디지털 내각은 111개의 디지털화 사업(Digitalisierungsvorhaben)을 통해 디지털화 전략을 채택함⁸⁾
 - 디지털 내각을 통한 정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
 - 연방 외교부의 잠재적 협동 및 협력 기회를 파악함
 - 대중에게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
 - 의회에 우선순위과제를 제시함
- 디지털화 전략의 목표는 부처별 계획을 나열하거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공통의 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촉진하는 데 있음

7) 디지털 내각(Digital Kabinett)은 정치 수준에서 디지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중앙 통제 기관임.

8) 2021년 6월, 디지털화 전략에는 총 147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버전의 디지털화 전략은 www.digital-made-in.de에서 확인 가능함.

[그림 1] 디지털 정책 전략의 5개 주요 영역



자료: Bundes rechnungshof, "Digital strategy: Assessment instead of systematic control," 2021, p.9

- 감사원은 2019년 디지털화 전략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디지털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도록 권고함
 - 디지털화 전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
 -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디지털화에 대한 효율성 연구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지 여부
 - 디지털화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인적 자원 여부
 - 디지털 정책 전략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 계획 수립
 - 디지털 정책 전략 성공을 위한 절차와 기준 계획 여부
 - 디지털화 보안 방법 고려

- 디지털 내각은 연방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프로젝트의 명칭을 구체화하고 이행 단계를 보완하는 등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디지털화 전략에 정부의 디지털화 목표 달성에 위협을 주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권고사항을 제시함

- 경제적 분석 및 전략적 목표 누락
 - 감사원은 연방정부가 디지털화의 경제 적자와 관련된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우선순위 선정의 부재
 - 140개 이상의 디지털화 전략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⁹⁾과 다른 정책의 차별성이 없음
 - 감사원은 디지털화 전략 중 예산, 목표달성의 기여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만들어 각 정책의 경중을 달리할 것을 권고함
-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부재
 - 현재 디지털화 전략은 법, 재정, 기술적 요건과 같은 필수요소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며, 이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의 발전이 필요한지 알 수 없고 재정 투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감사원은 프로젝트의 상호관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프로젝트 목표 검증 불가
 - 정부는 디지털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를 원했지만, 프로그램 147개 사업 중 약 63개 사업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은 SMART 기준(SMART-Kriterien)¹⁰⁾을 준수하여 디지털화 전략에서 사업의 목표를 정의하도록 권고함
-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 부재
 - 정부는 대시보드를 통해 디지털화 정책 성공 여부의 측정과 투명성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나, 대시보드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할 수 없으며,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음
 - 감사원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이행 단계를 조정을 통해 ‘디지털화 설계(Digitalisierung gestalten)’ 대시보드에서 모든 단계의 진행상황을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밝힐 것을 권고함

9) 그 예로 네트워크 확장, 온라인접근법(Online Access Act, OZG)에 따른 연방정부의 115개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또는 IT 서비스 통합관련 정책 등이 있음.

10)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의 구체적 제시, 종료 시기 및 측정가능 여부 등을 표기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전략(SMART-Kriterien)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성(Spezifisch), 측정 가능성(Messbar), 수용 가능성(Akzeptiert), 현실성(Realistisch), 기한이 정해짐(Terminiert)을 뜻함.

참고자료

독일 감사원, <https://www.bundesrechnungshof.de/en/audit-reports/products/advisory-reports/digital-strategy-assessment-instead-of-systematic-control> 검색일자: 2022. 1. 24.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CONTENTS

1. 국제기구
2. 국제회의

Ⅱ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1. 국제기구

G20 국가의 성인지 예산

Gender Budgeting in G20 Countries
- 2021. 11., 국제통화기금(IMF) -

1. G20 국가의 양성평등 및 재정정책 동향

- 지난 15년간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수준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COVID-19로 인해 성평등 격차는 더욱 악화되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 리더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이며, 여성은 많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은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G20 국가의 성인지 예산의 제도, 정책 및 공공재정관리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음
-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 태도와 행동의 변화와 같은 많은 요인에 좌우되는 양성평등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2. 성인지 예산 동향 및 접근 방식

- 모든 G20 국가는 양성평등 중심의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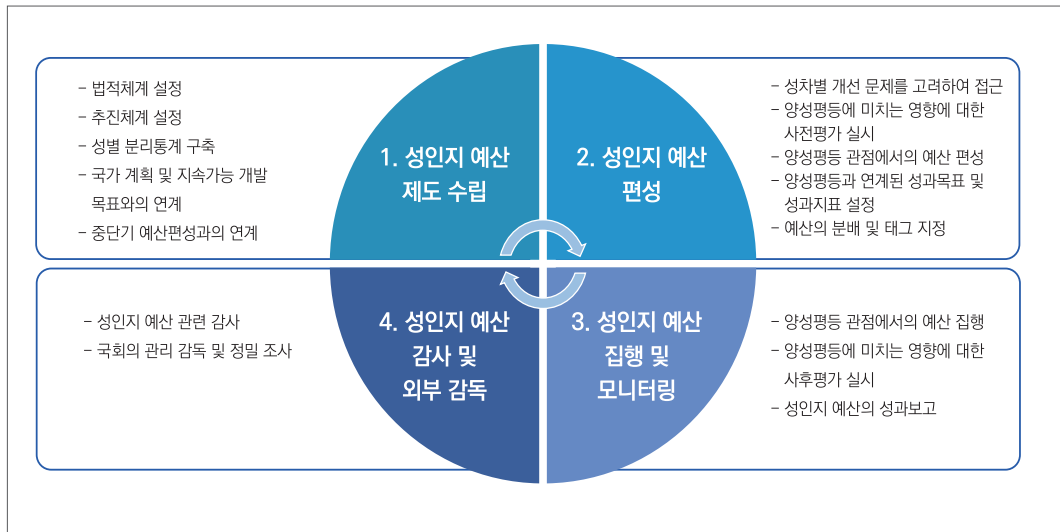
용하기 위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G20 국가의 성인지 예산의 제도, 정책 및 공공재정관리의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달성한 나라는 없음
- 국가별로 상이한 강점과 약점의 수준은 성인지 예산 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남
 - 성인지 예산은 제도 수립 과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감사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강점과 약점의 경향은 G20 국가 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IMF는 양성평등 대응 정책과 공공재정관리를 통해 예산 주기 각 단계에 걸쳐 성차별 개선 문제를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의 총체적 접근 방식을 장려함

- 이러한 총체적 접근법은 G7 국가의 성인지 예산 평가에 명시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함
 - [그림 1]은 성인지 예산 주기를 구성하는 4개의 핵심 단계를 나타내며, 각 예산 주기별 사 용할 수 있는 공공재정관리 도구를 제시함

[그림 1] 예산 주기 동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



자료: IMF 홈페이지,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11/12/Gender-Budgeting-in-G20-Countries-506816>, 검색일자: 2022. 1. 24

■ G20 국가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일괄된 방식이 아닌 각각의 다양한 단계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편성 시 공공재정관리는 예산편성과 자원 배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추가기능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에는 공공재정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
- 모든 국가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검토에 걸친 전 과정에서 성차별 개선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산의 편성, 집행, 검토에 걸친 과정 중 예산의 편성 시에만 성차별 개선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면 성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긴 하겠지만, 예산 집행 및 검토 과정에서 실적이 목표치에 달성하였는지, 또는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부분별 양성평등 추진 전략은 매우 부정확하고, 비용 추계가 어려우며, 정부의 중단기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 양성평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중단기 예산전략 수립 시 연계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많은 국가에서 양성평등을 국가적, 부처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 구현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함

3.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도전과제 및 성공 요인

-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의 성과는 국가의 발전 수준과는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
- 각국은 성인지 예산을 수단으로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성평등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음
- 소수의 국가만이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초기의 영향을 평가하거나 사후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은 성별의 격차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정책과 프로그램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더 나은 정책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입안자들은 분석한 정보에 따라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인지하고, 정책 시행 후에는 성과평가를 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성인지 예산 집행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및 성과기반 예산 책정 노력을 강화하고 사후 평가를 위한 정책 입안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공적인 성인지 예산 개혁을 위해선 강력한 정치적 지원, 재정당국의 추진력,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
 - 성인지 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권에 변화가 있어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 있도록 이를 공식화해야 함
 - 성인지 예산 분석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고려한 예산 주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지침 개발 권한을 재정당국에 부여하고 품질 점검을 강화해야 함
-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을 줌
 - 각국은 성인지 예산의 도입으로 인해 양성평등을 고려한 예산 분배와 재정정책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음
 - 성인지 예산의 도입이 양성평등을 얼마만큼 개선하고 달성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 COVID-19 유행은 정책 설계 및 도입과정에서 성차별 개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은 예산 구성 및 편성 단계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출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줌
 - 보다 나은 분석을 통해 정책이 양성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가시적으로 제시한다면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COVID-19 유행은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양성평등 정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참고문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ender Budgeting in G20 Countries*, 2021. 11. 1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11/12/Gender-Budgeting-in-G20-Countries-506816>, 검색일자: 2022. 1. 24.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How Digitalization of PFM can Improve Service Delivery

– 2021. 11., 국제통화기금(IMF) –

1. 배경

-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공공재정관리 디지털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추가적인 동기를 제공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몇 가지 혁신적인 도구가 등장했으며 현재 더 많은 도구가 개발 중에 있음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는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일괄된 전략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중요함
- IMF의 재정부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공재정관리 디지털화 경험 공유를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세미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디지털화의 진행 상황 보고
 -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등장한 각국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전략적 과제를 확인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를 제시
 - 세미나는 각 국가의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채택해야 함
 -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임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범부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잘 조직된 국민 중심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 추진되어야 함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야 함
 - 공공재정관리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선 협조적인 정치 환경,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의 향상, 그리고 범부처 간 협업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
 - 공공재정관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출과 현금흐름 관리가 특히 중요함

- 애자일 방법론¹¹⁾(Agile Methodology)의 사용이 필요함
 - 정부는 적절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공공재정관리 디지털화에 대한 민첩하고 유연한 모듈식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함
 - 폭포수 방법론¹²⁾(Waterfall Methodology)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에서 개발 및 자금 조달에 더욱 용이한 애자일 방법론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대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험은 견고한 재정관리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식별하고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화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지출관리와 재정정책 간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필요함
 - 지금까지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 지출관리와 재정정책 간의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재정관

11) 주어진 요구 사항에 대해 작은 단위로 실행과 결과를 반복하며 품질을 향상해 나가는 개발 방법.

12) 전체 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계획을 세운 뒤,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개발 방법.

리 정보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함
 - 디지털화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 동기, 해결 과제 및 한계 등 중요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
 - 공공재정관리 디지털화의 성과는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내외부적으로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로 측정이 가능함

-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사용자 및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함
 - 일부 개발도상국 시스템 사용자 및 공무원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선 온라인 서비스의 이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정부와 교류하기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 디지털화 진행 시 사전예방적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 공공재정관리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험한 경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
 -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직원교육, 기술 발전 활용 및 프로세스 강화를 포함하는 세 가지 접근방식이 필요함
 - 업무 연속성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중요성 고려,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의 운영 전환의 보장,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함

-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공공재정관리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거버넌스 구조, 데이터 관리, 인적 자원 관리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참고문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blog-pfm.imf.org/pfmblog/2021/11/-how-digitalization-of-pfm-can-improve-service-delivery-.html>, 검색일자: 2022. 1. 24.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2. 국제회의

2021년 제10차 KIPF 정부성과관리 국제포럼: COVID-19 회복과정에서의 재정관리

Public Financial Management for the COVID-19 Recovery
- 2021.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개요〉

- **주제:** Public Financial Management for the COVID-19 Recovery
- **일시:** 2021년 12월 16일
- **장소:**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Webinar)
-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참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OECD

-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OECD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COVID-19 회복과정에서의 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for the COVID-19 Recovery)’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함
 -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원장과 기획재정부의 배지철 심의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OECD의 Andrew Blazey와 Alfrun Tryggvadottir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책 제안 및 OECD의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지침에 관하여 발표함.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박사가 코로나19 이후 다부처 협업을 통한 공통이슈 해결의 필요성과 예산 분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감

Presentation 1

- Evaluations of COVID-19 Responses with Recommendations for Public Policy Evaluation
- Andrew Blazey (OECD)

- 최근 코로나19와 그 여파로 인해 정책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근거 구축의 필요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증거 구축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 개선에 도움이 됨
 - 증거 구축은 또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줌
- OECD는 코로나19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향후 적절한 정책 대응을 위해 18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평가하였음
 - 국가별 대응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67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시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감염병을 예측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부의 능력
 - 위기 대응 관리: 위기 발생 시 대처하는 정책적 역량
 - 국가별 대응 방법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 분야의 대비에 대한 근거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함
- OECD는 좋은 정책평가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를 제도화해야 함
 - 정부 전체에 걸쳐 평가를 활용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평가를 활용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평가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함
 - 평가의 질을 높여야 함
 - 평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계획,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함
 -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품질 기준과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제도적 기술과 역량을 개발해야 함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조직 및 정부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 평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Presentation 2

- Spending Reviews in OECD Countries with Best Practices for Spending Reviews
- Alfrun Tryggvadottir (OECD)

- 전략적 지출검토는 정부의 현재 지출을 분석하여 정책 옵션을 개발, 평가 및 채택하는 제도로 예산 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전략적 지출검토는 정부의 총지출 수준을 관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여 프로그램 및 정책 내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전략적 지출검토를 사용하는 OECD 국가는 2011년 16개 국가에서 2020년 기준 31개 국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OECD의 전략적 지출검토 지침
 - 명확한 목표 및 범위 수립이 필요함
 - 전략적 지출검토의 목표는 시작부터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약관에 명시되어야 함
 - 서로 다른 목표는 지출검토의 구조와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가 매년 검토할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출검토는 전략적, 주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전략적 지출검토에서의 정치적 부분과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함
 - 정치적 리더십은 특히 지출검토의 목표와 범위가 정해지는 시작점과 권고안 채택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부처 공무원은 지출검토를 위한 분석 및 과정을 계획하고, 전략적 지출검토에서 채택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게 됨
 - 재정당국과 관계 부처의 모든 관계자는 지출검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함
 - 전략적 지출검토 전반에 걸쳐 명확한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지출검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재정당국과 관계 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임
 - 관리 그룹은 검토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관련 장관들에게

전달해야 함

- 실무단은 재정당국과 관련 부처의 직원,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출검토 주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전략적 지출검토는 예산 과정과 연계되어야 함
 - 전략적 지출검토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간에 맞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예산편성 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지출검토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음
 - 지출검토의 평가 및 성과정보는 예산편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책임감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출검토의 권장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지출검토를 통해 도출된 권장 사항은 실무단의 분석내용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관련 부처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출검토를 통해 도출된 권장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재정당국은 지출검토 권장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음
 - 지출검토 보고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지출검토를 통해 도출된 권장 사항을 대중에 공개하여 지출검토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지출검토 프레임워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지출검토의 사용이 증가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지출검토가 국가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줌
 - 지출검토는 현재 관찰된 강점과 잠재적 약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운영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함
 - 개별 지출검토를 통해 향후 지출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의 재분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지출검토는 향후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Presentation 3

- Crosscutting Goals & Improving Agility in Resource Allocation
- Nowook Park (KIPF)

■ 다부처 협업을 통한 공통이슈 해결의 필요성

- 다부처 협업을 위해선 사일로 현상의 극복이 중요함
 -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유행, 사회보장, 저성장, 저출산 문제와 같이 하나의 부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공통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부처 간 세분화 및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와 협업을 위한 기술적 발전이 중요함

■ 신속한 예산의 이동과 분배의 필요성

- 재정 여력을 마련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요해짐
 - 지속 불가능한 연금 및 사회 보험 문제
 - 의무 지출의 증가
 - 정부 부채의 증가추세
 - 예산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 부처 간 공통이슈 해결 과정 및 요소

-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 구체적인 목표 수립
 - 전문성과 역량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능력
 - 재원의 지속적 확보
 -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갈등 해소 구조의 수립
 - 규칙을 정하고 추진하는 능력
- 간접 관리와 직접 관리(Indirect and direct management) 역량이 중요함
 - 다부처 사업관리는 다른 조직과 일한다는 점에서 간접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설득과 협상에 기초한 협업 능력이 중요함
 - 다부처 사업관리는 협업 능력과 더불어 보다 정치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과정, 역할 분담, 성과관리 시스템 등의 수립이 필요함
 - 다부처 사업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조직을 넘어서는 권한, 정당성 및 신뢰도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가보다 협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가능함
 - 다부처 사업 추진에는 단일 부처 사업 추진보다 많은 거래 비용이 발생함

■ 다부처 협업예산에 관한 최근 한국의 사례

- 2021년에는 12개의 협업예산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22년에는 다부처 재정 현안이 증가하고 협업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협업예산 중점과제를 17개로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하여 관리할 예정임

- 신속한 예산의 이동과 분배를 위해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전략적 지출검토가 필요함
 - 전략적 지출검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필요함
 - 재정준칙의 도입과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총량적 재정규율을 정치과정에 도입
 - 전략적 지출검토 프로세스에 대한 중기적 관점 확보
 - 정부 차원의 지출검토 거버넌스 구축
 - 조직 및 인사관리 방식 개선
 - M&E 역량 및 시스템 강화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Ⅲ.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CONTENTS

1. 국내 연구 동향

Ⅲ.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 장우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p. 8~37 –

1. 연구목적

-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주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정경제의 구현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경쟁정책 당국의 정책성과 개선 가능성 모색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과징금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떻게 부과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의 개선에 있어 중요한 과정임

2.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과징금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은 <표 1>, <표 2>와 같음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정책분류와 관련 법률: 경쟁정책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
|------------------------------------|--------------------|---------------------------------|---------------|
| 경쟁 정책 |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 | 제3조 |
|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가격남용 | 제3조의2 |
| | | 출고조절 | 제3조의2 |
| | | 사업활동 방해 | 제3조의2 |
| | | 진입제한 | 제3조의2 |
| | |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 제3조의2 |
| | 기업결합심사 | | |
| | 경제력 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제도 | 제9조 |
| | | 채무보증제한제도 | 제10조의2 |
| | |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 제11조 |
| | | 지주회사제도 | 제8조의2 |
|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제11조의2 |
| |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 제11조의3 |
| | 부당공동행위 (담합) | 가격의 결정유지 변경 | 제19조 제1항 |
| | |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 제19조 제2항 |
| | | 거래제한 | 제19조 제3항 |
| | | 시장분할 | 제19조 제4항 |
| | | 설비제한 | 제19조 제5항 |
| | | 상품의 종류규격제한 | 제19조 제6항 |
| |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 제19조 제7항 |
| | | 입찰담합 | 제19조 제8항 |
|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 제19조 제9항 | |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제26조 제1항 |
| 사업자 수 제한 | | 제26조 제2항 | |
| 사업활동 방해 | | 제26조 제3항 | |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 | 제26조 제4항 | |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 제23조 제1항 제1호 | |
| | 차별적 취급 | 제23조 제1항 제1호 | |
| | 경쟁사업자 배제 | 제23조 제1항 제2호 | |
| | 부당한 고객 유인 | 제23조 제1항 제3호 | |
| | 거래강제 | 제23조 제1항 제3호 | |
| | 거래상지위 남용 | 제23조 제1항 제4호 | |
| | 구속조건부거래 | 제23조 제1항 제5호 | |
| | 사업활동 방해 | 제23조 제1항 제5호 | |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지원행위, 부당내부거래) | 제23조 제1항 제7호 | | |
| 특정불공정거래행위 | 신문업 | 제3조의 제21항 제23조 제1항 신문업 고시 | |
| | 병행수입 | 제23조 제1항 병행수입 고시 |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 제29조 | |

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11.

〈표 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정책분류와 관련 법률: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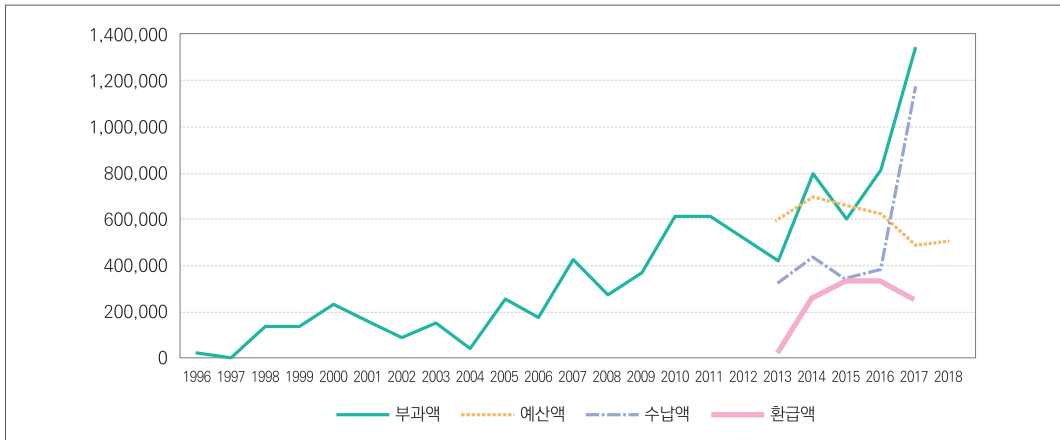
| 대분류 | 중분류 | 관련 법률 |
|--------|---------|-------------|
| 소비자정책 | 소비자정책일반 | 소비자기본법 |
| | 불공정약관심사 | 약관법 |
| | 부당표시광고 | 표시광고법 |
| | 방문다단계판매 | 방문판매법 |
| | 할부거래 | 할부거래법 |
|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 기업거래정책 |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 |
| | 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법 |
| | 유통거래 | 대규모유통법 |
| | 대리점거래 | 대리점거래법 |

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12.

- 2017년까지의 자료 기준으로 추세상 과징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성장을 거처온 우리 경제의 규모로 볼 때 유의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림 1] 연도별 과징금 예산액, 부과액, 수납액, 환급액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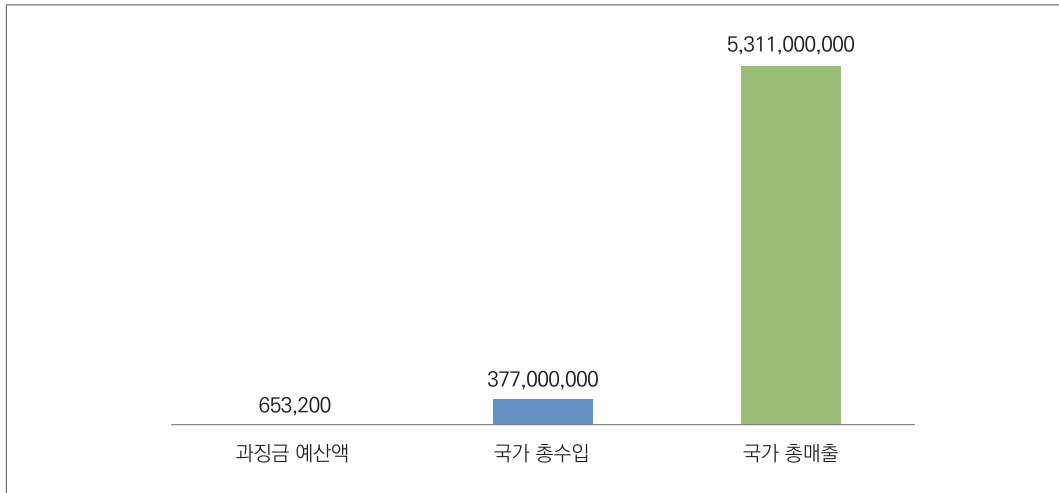


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13.

- 2015년 예산 기준 과징금의 국가 총수입 대비 비중은 0.1569%,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의한 국가 생산부문의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불과하여, 공정경제 조타의 주된 도구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기대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2015년 과징금 예산액, 국가 총수입, 국가 총매출 규모 비교

(단위: 백만원)



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13.

3. 데이터 구축

■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008~2019년 의결서 자료를 전수 기준으로 확보하는 한편, 해당 의결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와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거쳐, 결과적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음

- 확인 가능한 법인등록번호와 의결서에 제시된 업종 및 기업 주소와 대표자 이름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의결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합성을 재확인한 후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연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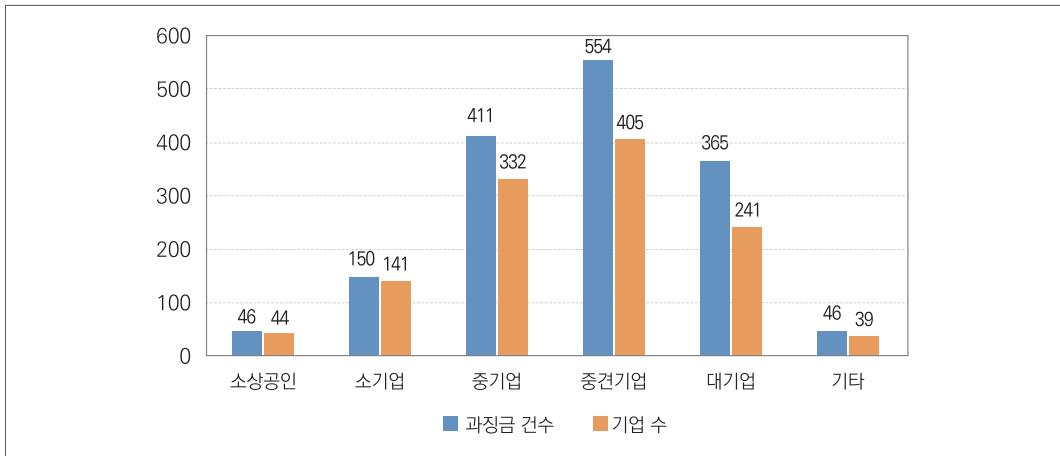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살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 살펴봄

- [그림 3]과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되는 1,202개의 과징금 부과기업 중 대기업은 241개, 중견기업은 405개, 중기업은 332개, 소기업은 141개, 소상공인은 44개로 분포됨
 - 대기업의 경우 241개 기업이 총 365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비해 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요한 점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금액 비중이 22.30%에 달하

는 반면, 소기업은 이 수치가 3.33%, 중기업은 1.45%, 중견기업은 0.47%, 대기업은 0.17%에 불과하다는 점임

[그림 3] 2011~2017년 과징금 건수/기업 수 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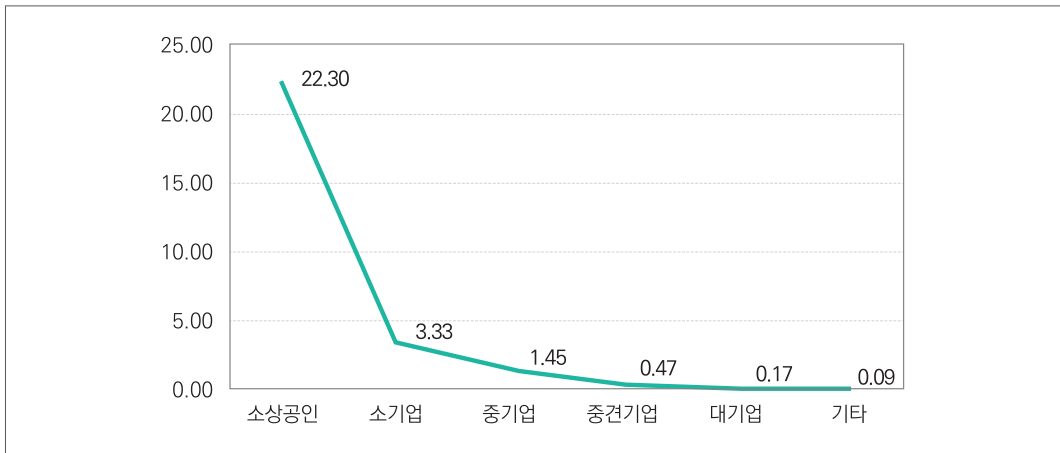
(단위: 건, 개)



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21.

[그림 4] 2011~2017년 과징금 부과기업 기업규모별 과징금/매출액 비율

(단위: %)



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p.21.

4.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1) 과징금 부과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

- 만일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별 기업이 영업활동에 충분한 악영향을 받는다면 과징금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과징금 부여가 개별 기업의 영업지표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과징금의 억제적 효과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 과징금 부과 여부가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 과징금 부과기업의 매출액 증분은 평균 400억원 줄지만, 영업이익의 증분은 평균 100억원 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이 적절히 이뤄지고 과징금 부과가 행위 억제를 위한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임
 - 오히려 이는 해당 기업에 평균보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존재하여 이로부터 부당 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일관적임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위반행위 억제에 충분한 유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함의함
- 대기업/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과징금의 효과를 살펴봄
 - 과징금 부과기업은 부과받지 않은 유사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과징금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과징금이 전체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

- 과징금의 부과 목적 중에는 시장경쟁의 제고 등 산업·시장구조 개선 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만일 과징금 부과가 해당 시장의 집중도나 경쟁도를 개선하는 데 유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면 과징금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반대로 만일 해당 시장의 집중도나 경쟁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방식 및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음

- 분석 결과 과징금의 부과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됨

5. 결론 및 한계

- 과징금이 개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구조의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과징금이 공정경제를 위한 유효한 도구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요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특히 행위 예방적·억제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오히려 과징금이 역진적인 부과와 미흡한 효과로 인해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한계
 - 과징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형사 고발 등의 억제수단에 대한 실증분석은 아직 수행하지 않았으며, 현존하지 않는 다른 대안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정의상 자료가 없어 수행할 수 없었음
 - 또한 과징금 부과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점에 대해 가설만 제기했을 뿐 심도 있게 원인까지 규명하지는 않았음

참고자료

장우현,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pp. 8~37.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IV. 국가계약 동향

CONTENTS

1. 국내 동향
2. 국외 동향

IV. 국가계약 동향

1. 국내 동향

-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조달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나, 부차적인 목적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는 시장임
-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현황과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제도',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소개하고자 함
- 그 밖에도 현재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인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안)과 2021년 4차 혁신제품 지정(안), 2021년도 혁신조달 추진성과와 혁신조달 연계형 R&D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그리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022~2024년)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2021. 12. 6., 중소벤처기업부 -

-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품목을 지정하였음
- 이 밖에도 '경쟁제품 지정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6일(월)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213개(632개 세부품목)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경쟁제품 지정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

-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임
 -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이러한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1월 30일(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이며,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되어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음

〈표 1〉 경쟁제품 지정 변동 현황

(단위: 개)

| 구 분 | 현 행 | 추 천 | '22.1.1 ~ '24.12.31 지정 | | | 증 감 (현행대비) |
|------|-----|-----|------------------------|-----|----|---------------|
| | | | 합계 | 기존 | 신규 | |
| 제 품 | 212 | 223 | 213 | 195 | 18 | +1 |
| 세부품목 | 614 | 649 | 632 | 581 | 51 | +18 |

-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되었음
-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대한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함
 -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되어 20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됨
 - 또한,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 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됨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함
-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 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담합이 발생하여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임
-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번에 결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2022.1.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방안

■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간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함

- ①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 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됨
 -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은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게 됨
 -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 제도화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임
- ②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방안
 -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할 계획임
 - 또한,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하여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
 -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됨

〈표 2〉 직접생산 위반행위 제재 강화(안)

| 위반행위 구분 | 현행 제재 | | | 개정(안) |
|-------------------|-------|----------|---|----------|
| | 취소 범위 | 재신청 제한기간 | | 재신청 제한기간 |
| · 재신청 사유 미준수 | 해당 품목 | 3개월 | → | 6개월 |
| · 생산시설 매각 등 기준 미달 | 해당 품목 | 6개월 | → | 1년 |
| · 조사 거부 | 모든 품목 | 6개월 | → | 1년 |
| · 하청, 타사 상표 부착 | 모든 품목 | 6개월 | → | 1년 |
| ·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 | 모든 품목 | 1년 | → | 2년 |

-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임
- 또한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1개 품목과 그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었던 품목부터 검토될 예정임
- ③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
 - 그동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하였음
 -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21.12.31.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됨
 -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표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조정(안)

| 구분 | 인증 종류 | |
|----------|---|------------------|
| 신규(1종) | 재난안전제품인증 | |
| 유지(11종) | ① 성능인증, ② 우수조달물품지정, ③ 신제품인증(NEP), ④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⑤ 신기술인증(NET), ⑥ 우수조달공동상표, ⑦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⑧ 혁신제품, ⑨ 녹색기술제품, 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⑪ 산업융합품목 | |
| 통합(3→1종) | ①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②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③ 성과공유기술개발 | ⇒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 일몰(4종) | ① 우수산업디자인(GD), ② 정보통신기술(ICT)융합품질인증, ③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④ 공공기관 개발선행품 | |

- 권칠승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

■ 추진경과

-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49개 품목을 추천(9.30)
 - 추천요건 : 품목별 조달실적 10억원, 직접생산기업 10개
 - 대기업 및 수입품이 없는 품목은 산업보호 및 발전 필요성 있는 경우만 가능
- 추천서 보완요구를 통해 사실확인 및 쟁점 검토(10.5~11.23)
- 5개 분과별 전문가회의(관계부처+전문가)를 통해 1차 요건 검토 → 2차 쟁점 논의 방식으로 품목별 지정 타당성 검토(2021. 11. 3 ~ 17, 9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개최(11.30)

■ 경쟁제품 지정 결과

- 추천된 649개 품목(제품 223개) 중 17개 품목(제품 10개)을 제외한 632개(제품 213개)를 최종 선정

〈표 4〉 경쟁제품 지정 변동 현황

| 구분 | 현행 | ⇒ | '22년 | 증감 |
|------|------|---|------|-------|
| 제 품 | 212개 | | 213개 | (+ 1) |
| 세부품목 | 614개 | | 632개 | (+18) |

- 현재 지정된 품목 614개 중 33개 품목이 제외됨
 - 추천제외 <29개>: 독과점 유의품목(6개), 요건미달(20개), 미신청(3개) 품목
 - 지정제외 < 4개>: 추천 이후, ‘법전, 포스터, 골뱅이통조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신규품목은 51개이며, 이 중 경쟁제품에 처음 지정된 제품은 30개*

*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 등)이 8개로 가장 많음

*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화학물질보호복, 보건용/비말차단 마스크'도 지정

〈표 5〉 현행 대비 주요 변동 품목

| 구 분 | 품목명 |
|----------------|---|
| 신규 지정 (5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8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지하재방송장치, 바닥보행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 비상경보기,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 ▶ 【운동기구(7개)】 레그익스텐션머신, 레그컬머신, 벤치프레스, 체스트웨스트, 랫플다운머신, 스미스머신, 종합운동기구 ▶ 【소방제품(6개)】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공작차, 산불진화복,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호스 ▶ 【건자재(6개)】 직포매트, 보행매트, 식생매트, 교량이음장치, 샌드위치패널, 원심력철근콘크리트판 ▶ 【가구(5개)】 스톨의자, 실습대, 교탁, 칠판보조장, 약품장 ▶ 【코로나19 품목(3개)】 화학물질보호복, 비말차단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 【특별고용지원업종(5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 【기타(11개)】 진동방지장치, 벌크컨테이너백, 폴리에틸렌로프, LED수중조명등, 유도등, 전기집진장치, 공기살균기, 진탕배양기, 건조기, 정수용산기장치, 디자인서비스 |
| 범위 조정 (3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없는 공공주택 공급(22개)】 승객용엘리베이터, 자연석판석,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그림타일, 모자이크타일, 부조타일, 플로어링보드, 목재문,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목재문틀, 야외운동기구, 퍼걸러, 기타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가정용싱크대, 장롱, 신발장, 찬장, 옥외용벤치 ▶ 【산업경쟁력(5개)】 드론,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안내전광판 ▶ 【유효한 경쟁입찰 어려움(5개)】 레미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시설물경비서비스 ▶ 【기타(3개)】 소방선, 카레, 컴퓨터서버 |
| 지정 제외 (33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방음판, 체스트프레스머신, 시약보관대, 신문용지절지, 유조선, 수로측량선, 맥플레이트, 고압나트륨램프, 주철가로등주, 수중조명등, 향온합습기, 화장로, 연관보일러, 수중인라인펌프, 무균대, 산소발생기, 국술, 침치통조림, 반상기, 남성용스웨터, 지갑, 서류가방, 손가방, 소지품케이스, 기초번호판, 산업용작업대, 이동식스툴테이블, 기초물리실험장치, 논리회로실험장치, 체육시설단성포장재, 골뱅이통조림, 법전, 포스터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022~2024년)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1. 12. 6.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1. 12. 24., 기획재정부 외 -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1. 12. 2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달사업법」 제5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 2021. 12. 24.(금) 10:30~12:00
- **장소:**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조달청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한국조달연구원장
- **안건: (의결)**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안), 2021년 4차 혁신제품 지정안
(보고) 2021년도 혁신조달 추진성과
혁신조달 연계형 R&D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운영방안

- 금번 회의에서 공공조달의 혁신성·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안)*」을 논의하고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음

*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2020.10.)에서 의결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구체화

1] (전략1)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 ① 공공조달 전반에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도입 확산
- ②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목표 달성

2] (전략2) 혁신조달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는 생태계 조성

- ③ 혁신조달 정책연구, 혁신제품 발굴·평가, 교육·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혁신조달 숲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설립
- ④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잠재적 혁신조달 수요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팅 확산 및 민간 전문가(벤

처협회, 벤처캐피탈 등)를 통해 유망 조달기업,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 육성
 - 인큐베이팅 과제: (2021년) 19개 → (2022년) 80개
 스카우터 규모: (2021년) 20명 → (2022년) 50명

※ 【참고】 인큐베이팅 · 스카우터 개념 및 주요사례

- ▶ (인큐베이팅) 공공문제 발굴-과제화-solution 탐색 등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
- ▶ (스카우터) 전문가 그룹이 유망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

| 육상 노면 태양광 모듈(인큐베이팅) | 액체생검 암 진단패널(스카우터) |
|--|--|
|  <p>▶ 기존 제품보다 경량화 → 공공건물 및 도심 내 태양광 부지 부족 문제 해결 * '공공건물 탄소중립' 과제 공모 제품</p> |  <p>▶ 혈액으로 암 진단 정밀의료 제공 → 기존 조직검사 대비 신속·간편 * 바이오헬스 분야 VC 전문가를 통해 발굴</p> |

⑤ 공공문제 해결 R&D → 혁신제품 개발·구매 →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산

3 (전략3) 혁신촉진형 공공계약제도 개편

⑥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낙찰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가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시범특례제도*를 활성화

* 現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계약제도 시범운영→성과평가 통해 정규 제도화
 예) 공공 SW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형 SW계약제도 도입 등

⑦ 공공계약 과정의 공정성(중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환경·고용 등 사회적 가치 구현

4 (전략4) 조달제도·행정 인프라 고도화

⑧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다기화된 공공조달 특례제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제 도입 등 종합 정비

*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 조달·계약 관련 법령 운영 중

⑨ '차세대 나라장터' 등 디지털·지능형 조달시스템 구축

⑩ 조달계약·지출* 통계 작성 일원화** 등 정책 인프라 정비

* (조달청)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계약기준) (중기부) 총 공공구매 실적(지출기준)

** 관련 법령·시스템 개편을 통해 집계주체를 일원화하고, 조달청·중기부가 합동발표

■ 아울러, 관계부처 및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번 회의에서 총 192개의 혁신제품을 신규로 지정하였음

- 이를 통해, 현재까지 혁신제품 누적 건수는 총 968개로 확대되어 당초 금년 목표였던 900개를 초과 달성(☞ [첨부] 주요 혁신제품 사례)
 - 혁신제품 누계(개) : ('20) 345 → ('21.1) 461 → ('21.6) 688 → ('21.9) 776 → ('21.12) 968
- 특히, 금년 신설된 「한국판 뉴딜 연계 혁신제품 지정 트랙」을 통해 ‘폐섬유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섬유패널 데크’ 등 44개의 제품을 신규 지정 (누적 97개)

한국판 뉴딜 연계제품 주요 사례

| 확장형·이동식 음압 병동 |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간 자유로운 결합·확장·이동 가능 ▶ 경기도 의료원, 원자력병원 등 기관에서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용형 로봇기술을 적용한 재활 로봇 ▶ 분당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재활치료에 기여 |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예외적 허용, 구매담당자 면책 확대 등 조달특례가 적용되고, 의무구매(전체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2%)* 대상에 포함되어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받음
 - * 혁신구매목표: ('20) 물품구매액('18년, 41.7조원)의 1.0%인 4,173억원(4,690억원 달성, 112%) ('21) 물품구매액('19년, 45.7조원)의 1.2%인 5,477억원('20년 대비 31%↑)

■ 한편, 회의에 앞서 제2차 「혁신조달 경진대회」(12.15일)에서 대상·금상을 수상한 혁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하였음

- ‘착용형 스마트 에어백’은 추락감지센서를 적용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추락사고 등 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을 제고하였고,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8개 기관에서 활용 중
- ‘횡단보도 철주(pole)’는 ICT 기반으로 실종자 얼굴인식, 불법 주정차 단속, 보행신호 경고 등 기능을 통합·제공하고, 제주국제공항, 시흥시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활용 중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발굴·구매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혁신조달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 더 나아가 공공구매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ESG 등 미래가치 실현과 공공문제의 창의적 해결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논의·의결된 「공공조달 혁신 중장기계획(안)」에서 제시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향후 관계부처 간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 초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 고 **주요 혁신제품 사례**

1 발표 기업 (제2차 「혁신조달 경진대회」〈12.15 개최〉 수상 기업)

| 제품명 | 제품사진 | 제품 설명 및 공공부문 도입 현황 |
|---|--|--|
| <p>착용형 스마트 에어백</p> <p>세이프웨어(주)</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 경진대회 대상) ▶ 추락감지센서를 통해 추락 시 인체 착용형 에어백 작동, 통신업을 통해 사고자 위치 즉시 파악 가능 ▶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방지를 통해 국민안전 제고 ▶ 한국공항공사, 한전, LH 등 68개 기관에서 도입 |
| <p>스마트 횡단보도 철주</p> <p>(주)제브라앤시퀀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술 융합 스마트 횡단보도 폴 (※ 경진대회 금상) ▶ 실종자 얼굴인식,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보행신호 경고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교통사고 예방, 실종자 조기 발견 등 국민안전 제고 ▶ 제주국제공항, 시흥시 등 공공기관·지자체에서 도입 |

2 신규 혁신제품(12.24일 지정) 주요사례

| 제품명 | 제품사진 | 제품 설명 및 예상 수요기관 |
|--|---|--|
| <p>초기화재시 긴급 대피를 위한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p> <p>(주)비에스지</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개인 휴대 및 대량 보관이 용이한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고내열성 하이브리드 필터 사용) ▶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등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적 ▶ 예상수요기관 :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지자체, 관광사 등 |
| <p>의료용 저온 플라즈마멸균기</p> <p>플라즈맵</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균챔버, 플라즈마 발생기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용 멸균기 ▶ 60도 이하 저온의 멸균기능으로 수술·의료기구 등 멸균·보관 가능 ▶ 플라즈마 멸균 기술을 이용한 저온, 초고속 멸균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교차 감염 예방에 기여 ▶ 예상수요기관 : 의료원,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소 등 |

| 제품명 | 제품사진 | 제품 설명 및 예상 수요기관 |
|--|---|--|
| 옥상 노면 블록형 경량 태양광 발전모듈 (주)한축테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옥상 노면에 설치 가능한 경량 블록형 태양광 발전 모듈 ▶ 설치하중을 줄인 경량 설치구조로 옥상 공간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 → 태양광 부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 ▶ '21년 '혁신수요 인큐베이팅'(탄소중립 분야) 연계 제품 ▶ 예상수요기관 : 각 지자체, 관공서 등 건물옥상 활용 가능 |
| 폐섬유를 재활용한 섬유패널 기반의 데크 및 벤치 주식회사 세진플러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원단, 폐현수막 등 폐섬유를 재활용하여 제조한 친환경 섬유 패널 가공제품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 → 내구성이 뛰어나 공공시설 벤치·데크 등으로 활용 ▶ 폐섬유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발생 저감 ▶ '21년 '혁신제품 스카우터'(탄소중립 분야) 발굴 제품 ▶ 예상수요기관: 각 지자체, 관공서, 국립공원, 수목원 등 |
| 유선 화재경보 시스템을 보완한 IoT 스마트 무선 화재 경보시스템 (주)로제타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모델링과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한 화재 경보시스템 ▶ 무선 화재센서로서 설치가 간편하며, 다양한 곳에 설치가 가능 ▶ 화재 발생 시 무선 송신장치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및 소방서에 화재상황을 전달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가능 ▶ 예상수요기관 : 각 지자체, 관공서, 요양병원, 문화재 등 |
| 친환경 태양광 탄소중립 CCTV 카메라 (주)토브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탄소중립 CCTV 카메라 ▶ 태양광 충전식 카메라로서 전기 배선이 어려운 현장 등에 설치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감 및 가격 경쟁력이 우수 ▶ 예상수요기관 : 각 지자체, 관공서, 건설현장 등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선정 및 혁신제품 192개 신규지정」, 2021. 12. 24.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2. 국외 동향

국방조달 연례평가와 우주 지휘통제체계 사업 연례 성과보고 향상을 위한 기회의 확인

– 2021. 12., 미국 정부책임처(GAO)

〈보고서 추천 배경〉

- ◆ 기존의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계약 및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주된 내용이었음
- ◆ 하지만, 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등 크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계약 및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 ◆ 이에 해외 선진국 중 4차 산업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혁신조달과 관련하여 유사하고 입수 가능한 미국의 국방조달시장 프로그램 성과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함
- ◆ 미국의 국방조달시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 지난 수십년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 중인 GAO 보고서가 있으며, 해당 보고서 내에 공공조달 성과평가 수행에 있어서 전반적 문제점 및 각 사례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올해 연구동향으로 소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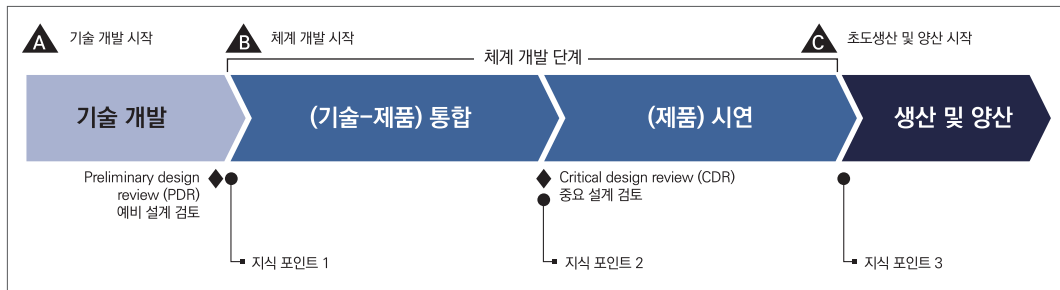
〈주요 약어 정리〉

| | |
|-----------|---|
| GAO |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책임처 |
| MDAP | : Maj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 |
| MTA | : Middle-Tier Acquisition 중간 단계 획득 |
| ROI | :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 |
| DOD | : Department of Defense 美 국방부 |
| GPRA |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정부 성과 및 결과법 |
| NDAA |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 |
| OUSD(A&S) | :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국방 획득 및 운영유지 차관실 |
| USD(A&S) | :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국방 획득 및 운영유지 차관 |

1. 미국 GAO 검토 배경

- 미국 법전의 제10편 국군(Armed Force)과 관련된 규정에는 GAO가 국방부의 무기체계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¹³⁾
 - 이에 GAO는 ‘무기체계 연례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방부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프로그램의 특성 및 성능, 그리고 지식 기반 획득 지침(knowledge-based acquisition practices)의 계획과 실제 구현, 선정된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 보안 규정의 구현 등을 평가하고, 국방부의 획득 지침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의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1] 국방부 주요 역량 획득 경로 및 GAO가 식별한 지식 포인트



지식 포인트 1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 시간, 자금 및 기타 자원의 확인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결정

지식 포인트 2

설계가 안정적이고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의 확인
대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시작의 결정

지식 포인트 3

제품의 생산이 비용, 일정 및 품질 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고객(수요기관)을 위한 첫 번째 유닛(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결정

- 즉,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사업의 내용과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방법론(계약방법 및 지침)을 국방수권법을 통해 관리·감독·환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었다고 판단됨
- 이러한 법적 제도적 토대 위에서 미국 GAO는 비용 및 획득 현황을 기준으로 검토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 및 정책 지침 및 국방부 보고서를 검토하며, 프로그램 사무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를 수행하고 있음

13) U.S. GAO-21-222 「Weapons Systems Annual Assessment, Why GAO Did This Study, 1st line.

■ 그 결과 2020년 회계기준 GAO 연례평가보고서는 국방부에 다양한 계약방법 및 경로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무기체계)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보고 전략 개발을 GAO가 권고하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결론을 보고하였음

- 이에 추가적으로 2021년 12월에 발간된 우주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GAO 보고서는 이전의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개발 착수 전, 주요 기능이 이행되지 못한 지난 3개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무기체계 연례평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3가지 사업 모두 비용 증가 문제와 일정 지연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술하였음
- 본 연구 동향에서는 우주지휘통제 프로그램 연례보고서에서 소개된 8가지 주요 법정 보고 요소와 함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보고서 개선 필요사항(국방조달 세부 프로그램의 ROI(투자수익률) 지표 측정방안 개선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 이 중 매년 발간하는 무기체계 연례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 기반 획득 관행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해당 지식 기반이 미비한 제품의 연구개발 착수 및 양산을 수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개발인정의 지연과 예산 및 비용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수요 제품의 지식수준 또는 기술의 수준(기술성숙도)을 잘 파악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발일정 및 비용 통제에 대한 감독을 사후적으로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비용변화에 대한 상세한 관리 감독 거버넌스를 통해 국고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가 산업발전 및 혁신조달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추가적으로 주요 제품 획득방법별(계약방법별) 프로그램 개수, 규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관련 분야에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며, 상기 내용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하여 최초 추정치 대비 실제 집행액 등을 확인하기 용이하였음

〈표 1〉 GAO 검토대상 국방부 주요 국방획득 프로그램 투자규모 및 프로그램 수

(단위: 개, 십억달러)

| 프로그램 유형 | 검토된 프로그램 수 | 국방부 | 공군 | 해군 | 육군 | 총 계획 투자액 |
|-------------------------------|------------|-----|----|----|----|------------|
| 주요 국방획득 프로그램(MDAP) | 84 | 2 | 27 | 38 | 17 | \$ 1,791.4 |
| 미래 주요 국방획득 프로그램 (Future MDAP) | 6 | 0 | 1 | 2 | 3 | \$ 15.1 + |
| 중간단계 획득 프로그램 (MTA) | 17 | 0 | 11 | 1 | 5 | \$ 30.5 |

출처: U.S. GAO-21-222「Weapons Systems Annual Assessment」, pg. 24.

■ 우주 지휘통제체계 성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연례 성과보고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두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피평가기관(국방부)이 관련 권고 및 개선사항을 받아 들여 성과보고서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였음
- 첫 번째로, 관리 감독의 용이성을 위해 이전 보고서로부터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상황 및 문맥적 해설을 권고하였고,
- 두 번째로, 예산 투입활동 및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운영상의 이점에 있어 투자수익률(ROI) 지표를 포함한 사용자 관점의 평가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음

2. 프로그램 연례보고서 법정 보고요소 사례

■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연례보고서에 문서화된 주요 법정 보고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및 2021년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연례보고서는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요약된 8가지 필수 보고요소를 각각 다루었음

〈표 2〉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연례보고서에 문서화된 주요 법정 보고요소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필수 (법정) 보고요소 | | 2020 GAO 평가 | 2021 GAO 평가 | GAO 코멘트 |
|-------------------------------|--|-------------|-------------|---|
| 1 | 프로그램 획득 전략에서 장관이 수립한 지표의 수정에 관한 설명 | 완료 | 완료 | 연례보고서에서는 획득 전략 초안에서 수립하고 정의한 5가지 측정기준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러한 측정기준에 대한 수정사항은 보고하지 않았음. |
| 2 | 차기 회계연도의 단기 목표 | 완료 | 완료 | 연례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간략히 정리했음. |
| 3 | 이전 회계연도의 지속적 목표, 달성된 목표 및 연기된 목표에 대한 설명 | 완료 | 완료 | 연례보고서는 진행 중인 목표, 달성된 목표 및 연기된 목표를 요약하였음. |
| 4 | 이전 회계연도에 직면한 문제점과 교훈 | 완료 | 완료 | 2020년 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요약하였음. 1) 기능에 대한 사용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 팀 수 확장 2) 신속한 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관행에 발맞춘 재무 관리 정책 3)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통합 2020년 연례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공군은 배운 교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 2021년 연례보고서는 새롭게 확인된 도전이나 교훈이 없다고 밝혔음. |
| 5 | 이러한 교훈을 이전 회계연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노력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거나 계획된 변경사항 | 완료 | 완료 | 연례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음. 또한, 2020년 연례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공군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관행에 발맞춰 재무 관리 정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 2021년 연례보고서는 새롭게 확인된 수정사항은 없다고 밝힘. |

〈표 2〉의 계속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필수 (법정) 보고요소 | | 2020 GAO 평가 | 2021 GAO 평가 | GAO 코멘트 |
|-------------------------------|--|-------------|-------------|--|
| 6 | 지난 회계연도 대비 수정/보완으로 인한 비용, 일정 및 성과 개선효과 | 완료 | 완료 | 연례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이 파악한 이슈의 예산 관련 영향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2021년 연례보고서는 새롭게 확인된 비용, 일정, 성과 개선효과가 없다고 밝힘. |
| 7 | 지휘관의 통합 우선순위 목록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군 요구사항의 전체 조사 | 완료 | 완료 | 2020년 보고서는 독자에게 지휘관의 통합 우선순위 목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밀 부록'을 참조하도록 지시하였음. 2021년 보고서에는 공군이 요구사항 및 사용자 우선순위에 대한 실태/설문조사를 요건 및 계획위원회 과정을 통해 실시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
| 8 |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 잠재적인 미래의 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 완료 | 완료 |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설명서에 문서화된 것 외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제안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3.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주요 정보 부족에 따른 연례보고서 유용성 제한사항

- GAO가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술한 핵심 정보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상황별 정보'와 'ROI 지표 중 사용자 관점의 운영상의 이점과 관련한 지표'라고 기술하였음

1)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상황 정보

- 상기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의 법정 보고요소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구체적 상황별 정보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음
 - 두 번째 법정 보고요소(차기 회계연도의 단기목표)에 대응하여,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최고 제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21년 보고서에는 의사결정자가 이러한 능력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맥락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하였음
 - 그 원인으로 프로그램이 제공하기로 한 최고 역량 및 기능이 2020년 보고서에는 20개로 문서화되어 있으나, 2021년 보고서에서는 14개로 통합 재선정되어, 2020년 보고서에 요약된 20개 기능 중 6개 기능만을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추적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세 번째 법정 보고요소(이전 회계연도의 지속적 목표, 달성된 목표 및 연기된 목표에 대한 설명)에 대응하여,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연례보고서는 의사결정자들이 지속적이고 연기된 프로그램 목표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예를 들어 2020년 보고서는 하나의 프로그램 증가분(새로운 소프트웨어 코딩 시스템에 발

- 사 추적 능력 개발 노력을 통합하는 것)의 목표가 다음 프로그램 증가분으로 연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나,
- 2021년 연례보고서는 이 목표가 궁극적으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음
 - 일례로 추가 작업이 남아 있어 목표가 이후 날짜로 연기되는 경우,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복된 목표는 삭제될 수 있음
 - 이렇듯 의사결정자에게 목표가 연기되거나 제거되는 이유 또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달성되는지 여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러한 목표의 상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기 보고서의 개선사항으로 권고를 하고 있음
- 다섯 번째 법정 보고요소(학습된 교훈을 통합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획된 수정)에 대응하여, 연례보고서는 모든 학습된 교훈을 문서화하지만,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훈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 상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얻은 교훈의 예시로는 프로그램 사무실과 이용자 등 우주 지휘 통제 프로그램 참여자 전반의 관계 형성의 필요성, 프로그램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체 평가의 중요성, 사용자 중심 설계 준수 등이 있음
 - 그러나 연례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이 식별한 모든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음
 - 추가적으로 2021 회계연도 통합세출법에 따라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공식 지정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어 2020년 보고서에 문서화된 과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고했음
 - 이렇듯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부지출 책정액을 단일 연구개발 시험평가 지출로 재조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이 적시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음¹⁴⁾
 -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제도가 함께 평가되는 모습으로 판단되는 대목임
 - 2020년 보고서의 여섯 번째 법정 보고요소(전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일정 및 성과 효과)에 대응하여 다섯 번째 보고요소에서 강조된 변경사항의 비용, 일정 및 성과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증가 이벤트를 통해 문제를 빠르고 초기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능력 덕분에 비용, 일정, 성과 저하 효과가 최소

14) U.S. GAO-22-104685, "Space Command and Control," p.18. 본문 주석 25번. 프로그램 관계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 시범 프로그램의 효율성 중 많은 부분이 2022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서화되었음.

한으로 유지된다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에는 비용, 일정 및 성과저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범위를 줄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각 수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일정 및 성과저하 효과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수정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음

- 일곱 번째 법정 보고요소(수요기관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에 관한 영향에 대한 전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감독을 하기 위한 완전한 정보가 부족함을 기술하였음

■ 위와 같은 법정 보고요소를 기반으로 보완이 필요한 추가 배경적·상황적 정보가 사업 종료를 위한 나머지 3년 동안의 프로그램 상태를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지식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여 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프로그램 사용자 관점의 지표 추가 필요성

■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연례보고서에 보고된 투자수익률 지표는 프로그램의 획득 전략 초안과 일치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의 이익에 있어 사용자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음

- 아래의 표와 같이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의 획득 전략 초안은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5가지 측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표 3〉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의 획득 전략 초안

| 지표 (Metric) | 해설(Description) |
|--------------------------------|--|
| 배포 빈도 (소프트웨어 수시 업데이트/납품 빈도) | 배포 빈도는 소프트웨어 제작팀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빈도를 측정함 이는 응답 시간, 팀 화합도, 개발자 역량, 개발 도구 효율성 및 팀 효율성의 직간접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음 |
| 리드 타임 (lead time) | 리드 타임(lead time)은 소프트웨어 제작 환경에서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임 리드 타임은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프로세스에 비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
| 평균 복구 시간 | 평균 복구 시간(Mean time to restore)은 해당 장애로부터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임 |
| 배포 실패율 | 배포 실패율은 배포가 실패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 투자 수익률 | 투자 수익률은 제공된 노력의 가치 또는 편익을 측정하며, 프로그램 효율성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예: 작업 완료 시간 또는 비용 절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측정함 |

- 배포 빈도는 소프트웨어 수시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의 납품빈도로 소프트웨어 제작팀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이는 응답시간, 팀 화합도, 개발자 역량, 개발 도구 효율성 및 팀 효율성의 직간접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음
 - 리드 타임은 소프트웨어 제작 환경에서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평균 복구시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장애로부터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임
 - 배포 실패율은 해당 소프트웨어 배포가 실패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투자 수익률은 제공된 노력의 가치 또는 편익으로 측정하며, 프로그램 효율성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예: 작업 완료시간 또는 비용 절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측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위의 표와 같이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의 연례보고서의 지표는 프로그램 노력에 따른 효율성 향상(increased efficiencies)만을 보여줌
-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사업추진의 노력과 관련된 운영상의 이점을 사용자 효용 관점으로 일관되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21년 보고서에서는 무선 주파수 선택을 자동화하는 웹 기반 조정 애플리케이션인 슈어파이어(Surefire)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수일이 걸리는 처리시간을 분 단위로 변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또 다른 예로는 ‘Vue’라는 애플리케이션은 레이더와 위성을 통한 우주 물체 식별과 정보 수집의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센서 정확도를 60% 향상시키고, 수동 처리시간을 6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시켰다고 보고하였음
 - 두 개의 사례 모두 투자 지표에서는 과업 완수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효율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할 수 있음
 - 하지만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 관계자에 따르면, 슈어파이어(SureFire)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에 대한 처리시간을 단축시켰지만, 시간 절약이 추가적인 운영 능력이나 조직 효율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음
 - 그 원인으로 슈어파이어 애플리케이션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메일 통신을 지정된 웹 페이지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한 이메일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이렇

게 절약된 시간이 다른 행정소요(지정된 웹 페이지로의 접속)로 상쇄되었다고 보고하였음

- 즉 조달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효율성 지표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공공 수요기관의 운영자 입장에서 진정한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GAO가 권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결론: 미 GAO의 권고와 수감기관 의견, 그리고 평가

- 미 GAO의 검토 결과, 국방부에 다음 두 가지를 권고하였음
 - 첫째, 공공조달 수요기관인 공군은 이전의 연례보고서로부터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와 관련한 배경 및 상황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연례보고서에 담을 것을 권고하였음
 - 상기 예시로는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를 명문화한 8가지 주요 보고서항과 같은 단기 목표 변경 등이 있음
 - 둘째, 공공조달 수요기관인 공군은 향후 연례보고서에 투자수익률(ROI)을 기술하기 위하여 우주 지휘통제 프로그램 인도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사용자 관점에서의 운영상의 이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 2020년 및 2021 회계연도의 프로그램 연례보고서는 법정 요소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이 개선된다면 의사 결정자들에게 더 유용하도록 개선될 것임을 언급하였음
- 상기 권고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과 GAO의 평가
 - 상기 두 가지 권고 내용에 대해 국방부 내에서 국방획득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인계할지, 수요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공군에 인계할지에 대한 논의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수요기관 최고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인계하고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음
 - 국방부는 첫 번째 권고안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였고, GAO는 향후 보고서에 추가적인 상황별 정보를 포함하려는 공군의 계획을 지지하고, 이 정보가 수요 프로그램의 상태와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평가를 마쳤음
 - 두 번째 권고안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였고, 미 공군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공공조달 제품의 사용자 관점의 운영상의 이점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음. 이에 GAO는 이러한 미 공군의 계획과 노력을 지지하며, 이러한 정보가 프로그램이 제품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미래의 투자를 알리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

참고자료

US GAO-22-104685, “Space Command and Control, Opportunities Exist to Enhance Annual Reporting,” 2021. 12.

US GAO-21-222, “Weapon System Annual Assessment,” 2021. 6.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공공조달 개혁

– 2020. 12.,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

〈보고서 추천 배경〉

-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새로운 공공조달 체제 도입을 위해 2020년 12월 정부 녹색(Green Paper)를 발간함
- ◆ 녹색서는 현대적인 공공조달 규정 제정을 통해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의 관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및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영국은 매년 공공조달에 약 2,900억파운드(한화 약 469조 6천억원)를 지출함. 이러한 정부 지출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공공조달을 개방함으로써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함
 - 특히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공공조달 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면서 영국은 새로운 공공조달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유연성을 강조함
 - 또한 최근 코로나(이하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긴급 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현 공공조달 체제의 복잡성 문제를 되돌아보게 됨
-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2020년 12월, 녹색서를 통해 현 공공조달의 관료적이고 절차 중심적인 체제를 비판하며,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절차를 조정하는 유연한 공공조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녹색서는 6가지의 공공조달 원칙을 제시하며 현 공공조달 체제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를 간소화 및 단순화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개혁을 통해 영국은 앞으로의 공공조달이 더 발전하고, COVID-19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를 기대함

1. 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달

- 영국의 공공조달은 전체 공공지출의 약 3분의 1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공공조달의 개선은 납세자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

수 있도록 함

- 또한 최근의 COVID-19 사태를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효과적 규제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됨.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품, 개인 방역물품, 청소 및 위생용품 등의 조달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통해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공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됨
- 영국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GPA)에 명시된 원칙과 규칙¹⁵⁾을 기반으로 수립될 계획임
 - 더불어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에 따른 조달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임

1. 공공조달의 원칙

- 공공조달 원칙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차별 없는 절차를 보장하며 규제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고 부패를 해결하고자 제정됨
 - 영국 정부는 다음의 6가지 원칙이 새로운 공공조달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공익(public good)
 - 공공조달은 경제, 사회, 윤리, 환경 및 공공안전을 포함한 전략적 국가 우선순위의 실현을 지원해야 함
 - 구매담당부서(commercial teams)는 공공조달을 수행할 때 물품, 용역 및 공사의 1차적 이익을 넘어 부차적인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야 함
 - 비용 효율성(value for money)
 - 비용 효율성은 단순히 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용역 또는 공사의 사용 기간 동안 최소한의 지출로 전 생애(whole-life) 품질 및 효과성에 대한 최적의 조합 확보를 의미함
 - 공공조달의 역할은 올바른 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를 최고의 사회적 비용 효율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것임
 - 투명성(transparenty)
 - 투명성은 시스템의 정직성, 책임감, 부패 방지의 핵심 원칙임. 이를 통해 절차 및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들이 공공자금 지출에 책임을 지도록 함

15) GPA에 명시된 규칙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 투명성(transparenty), 공정성(impartiality)을 의미함.

- 정직성(integrity)
 - 정직성은 신뢰를 강화하며 사기 및 부정행위를 방지함. 조달 전문가는 항상 고객의 요구를 신경써야 하며 공공조달은 좋은 거버넌스, 공공자금의 건전한 관리,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의 전문적 관계를 촉진해야 함
- 공급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 of suppliers)
 - 이는 모든 공급업체가 낙찰 전과 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여 다양한 유형 및 크기의 공급업체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원칙임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 차별금지 원칙은 새로운 조달 규정에 적용되며 수요기관이 국내 공급업체를 차별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이는 조달 관련 국제 무역협정(international trade agreement)에 따른 권리를 가진 공급업체에도 적용되며, 여기서 차별금지란 국외의 공급업체, 물품 및 용역이 국내의 공급업체, 물품 및 용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2. 국가 공공조달 성명서(National Public Procurement Statement)

- 조달 절차가 공급업체의 운영 방식을 조사하고 계약에서의 모든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기관이 국가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
 - 국가 우선순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 공공조달 성명서(National Public Procurement Statement)에 발표될 것임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전달
 - 미래 조달의 수단을 포함한 상업적 전달(commercial delivery)
 - 벤치마킹 성과를 포함한 상업적 기능
- 사회적 가치 요인을 조달과 관련짓는 것은 계약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국가 공공조달 성명서(National Public Procurement Statement)는 모든 수요기관이 조달 및 상업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 영국의 새로운 사업, 일자리 및 기술 창출
 - 공급업체 다양성, 혁신 및 회복력 향상
 - 기후변화 대처 및 폐기물 감소

- 수요기관은 효과적인 상업적 전달(commercial delivery)을 위해 구매담당부서가 충분한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아서 적절한 조직 능력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요기관은 새로운 개혁 및 잠재적 이익 실현을 위한 적절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함
 - 국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요기관은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및 수정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GPA를 포함한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감독 및 책임 부서

- 국무조정실 장관(Minister of the Cabinet Office)은 법적 지침과 조달 정책 노트(Procurement Policy Notes)의 발행을 포함하여 공공계약 규정 및 정부의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은 공공조달 평가 서비스(Public Procurement Review Service, 이하 PPRS)를 담당함. PPRS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공공조달과 관련된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임
 - PPRS는 2015년 중소기업 및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낙찰 및 계약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수요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정부는 독립적인 전문단(panel of experts)의 지원을 받아 공공조달을 감독하고 수요기관의 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새로운 부서는 특정 조달의 개별 공급업체에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 모든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의 이익을 위해 조달 수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달에 대한 개입 및 감독을 수행함
-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에 새로운 부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전문단은 지역 정부의 현재 또는 이전 고위 대표, 의료 및 기타 부문 전문가, 상업 전문가, 공급업체 대표 및 법조계 회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

- Q1. 제안된 공공조달의 6가지 원칙에 동의합니까?
- Q2. 공공조달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Q3. 전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제재(sanction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II. 규제 프레임워크 개혁

- 영국 의회는 공공조달에 대한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EU 지침을 영국 법률로 전환하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킴
 - 2015년 공공계약 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이하 PCR)
 - 2016년 공공사업계약 규정(Utility Contracts Regulations 2016, 이하 UCR)
 - 2016년 양허계약 규정(Concession Contracts Regulations 2016, 이하 CCR)
 - 2011년 국방 및 안보 공공계약 규정(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1, 이하 DSPCR)

- 2019년 1월,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은 법률 변경을 제안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의료 서비스 공공조달에 대한 법률 변경 제안도 이에 포함됨
 - 2019년 9월, NHS는 NHS 법안(NHS Bill)에 대해 정부 및 의회에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보건사회복지부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녹서는 의료 서비스 공공조달을 포함하지 않음

1.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A single regulatory framework)

- 현 공공조달 규정은 중복되고 복잡한 규정이 많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됨. 따라서 정부는 PCR, UCR, CCR 및 DSPCR을 국가 우선순위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단일 규정 법률로 통합할 것을 제안함
 - 이는 낙찰 계약 중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 및 절차에 대한 복잡성을 줄이고 조달 과정을 더 명확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됨

- 통합 규정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PCR, UCR, CCR 및 DSPCR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4개 규정 각각을 별도로 개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임

- 구매담당부서는 일반적으로 PCR에 더 익숙하며, UCR과 CCR은 PCR보다 더 유연한 규정이 라고 할 수 있음

2. 새로운 규정의 구조

- 정부는 새로운 규정의 기본 구조가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따르도록 하며 공공사업(utilities), 양허 및 국방 및 안보 조달(concessions and defence and security procurement)에 대한 고유한 규정을 포함하여 공통의 주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국방부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제안된 방위 및 안보 관련 요소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 정부는 구매담당부서가 PCR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UCR 및 CCR이 허용하는 유연성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

Q4. 현 규정을 단일의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Q5. UCR, CCR 또는 DSPCR의 부문별 특성(sector-specific features) 중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까?

III. 올바른 조달 절차 사용

- 공공조달의 관료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절차는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접근을 방해함. 따라서 조달 절차의 복잡하고 경직된 규칙을 버리고 구매담당부서가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현재의 공공조달 절차

- 현재 PCR, UCR 및 DSPCR에 걸쳐 하한선(thresholds)을 초과하는 계약을 낙찰하는 데 사용하는 7가지의 조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공개 절차(open procedure)
 - 사전 공지 없는 협상 절차(negotiated procedure without prior publication)
 - 제한 절차(restricted procedure)
 - 경쟁적 대화 절차(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 협상을 통한 경쟁적 절차(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 혁신 파트너십 절차(innovation partnerships procedure)
 - 디자인 콘테스트(design contests)
- 정부는 위와 같은 기존의 7가지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현대적인 3가지 절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competitive, flexible procedure): 구매자가 민간, 자선 및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협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하는 절차
 - 공개 절차(open procedure): 구매자가 현재와 같이 더 간단한 ‘표준규격품(off the shelf)’ 경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절차 유지
 - 제한된 입찰 절차(limited tendering procedure): 사전 공지 없는 협상 절차를 유지하되 제한된 입찰 절차로 이름 변경

2.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

- 정부는 공공조달 원칙과 GPA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정을 지닌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이 절차는 현재 특정 의료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 조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가벼운 체제(Light Touch Regime, 이하 LTR)’와 유사함
 - 이는 구매담당부서에 시장의 요구 및 자체적 요구를 충족하는 조달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최대의 유연성을 부여함
 - 새로운 절차는 제한 절차, 경쟁적 대화 절차, 협상을 통한 경쟁적 절차, 혁신 파트너십 절차 그리고 디자인 콘테스트의 5가지 기존 절차를 대체할 것임
 -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음
 - 제안된 공공조달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투명성 원칙 및 조건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해야 함
 - 낙찰 통지(contract notice)는 수요기관 및 입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해야 함(일정 및 참여 조건 등)
 - 낙찰 통지에 제공된 정보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선택 및 평가에 대한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함
 - 최종 입찰 참여 및 제출에 대한 시간 제한은 합리적이고 GPA의 최소 기간 이내여야 함
- 구매담당부서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며, 보다 효과

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는 수요기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의 관행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됨
- 또한 스타트업 및 신규 진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이 새로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가 아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익숙화 비용(familiarization costs) 및 많은 시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유연성으로 인해 구매자 간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나쁜 관행으로 이어져 조달의 전체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협상은 전체 조달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절차 후 협상으로 인해 공급업체는 최초 입찰에서 최선의 제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음

3. 공개 절차

■ 정부는 공개 절차를 수요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절차로 유지하되 국방 및 안보 조달로 그 가용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함

- 개방 절차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절차이며, 경험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위해 기본의 표준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용함

4. 제한된 입찰 절차

■ 정부는 사전 공지 없는 협상 절차를 유지하되 제한된 입찰 절차로 이름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이 절차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정은 사전 공지 없는 협상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됨
- 수요기관은 의무적인 배제 사유에 따르는 공급업체에 계약을 낙찰해서는 안 되며, 공급업체와 협상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위기상황 등에서 제한된 입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의 사용 범위를 늘릴 것을 제안하며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사람들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한 경우
- 사회적 도덕, 질서 또는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위기상황 시 제한된 입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 선포 권한을 국무조정실 장관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수요기관은 국무조정실 장관에게 위기 선포를 요청할 수 있음

5. 혁신 조달

- 과학과 혁신은 성장 및 생산의 중요한 원동력임. 혁신 기술은 산업,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영국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 경제에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고 있음
 - 현재의 공공조달은 높은 진입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공부문 수요 이동에 취약함. 따라서 기업의 사전 예방적 참여 위험(proactive engagement from business high-risk)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 독서는 구조, 절차, 방법 및 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하여 혁신이 조달 접근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특히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는 수요기관이 혁신을 촉진하는 조달 절차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독서의 제안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나타냄

6. 사회, 건강, 교육 및 기타 서비스

- PCR 내에 나열된 사회, 건강,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LTR로 알려진 보다 가벼운 조달 규정이 있음
 - LTR의 범위에 속하는 용역 계약은 낙찰 통지에 명시되어야 함. 수요기관은 자체 조달 절차를 결정할 수 있지만 투명성 및 동등한 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새롭게 제안된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에서의 유연성은 현재 LTR 아래 허용되는 대부분의 조치를 허용할 것이므로 LTR을 유지하는 것은 큰 장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부는 LTR을 없앨 것을 제안하며, 이는 조달 규정 전반에 걸쳐 더 큰 일관성을 제공할 것임

- Q6. 변경된 조달 절차에 동의합니까?
- Q7. 제한된 입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로 '위기(crisis)'상황을 포함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합니까?
- Q8. 제안된 개혁안이 조달에 더 효과적으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 Q9. 수요기관과 소통할 때 본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혁신적인 해결책이나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Q10. 더 효과적인 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Q11. 혁신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공공조달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까?
- Q12. 새로운 경쟁적 유연 절차를 고려했을 때 사회, 보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LTR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IV. 공급업체 선정 및 낙찰

- 올바른 공급업체에 올바른 계약을 낙찰하는 것은 효과적인 공공조달을 위한 기본사항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공급업체가 필요하며, 규제 체제는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수요기관을 뒷받침해야 함
 -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기간 동안 최소한의 지출로 품질과 효율성의 최상의 조합을 확보해야 함
 - 제Ⅳ장은 구매담당부서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포함하여 더 넓은 평가 기준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안함

1. 가장 유리한 입찰(Most advantageous tender)

- 현행 PCR은 수요기관의 관점에서 평가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이하 MEAT)을 기반으로 입찰 평가를 요구하며, 다른 규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
 - MEAT는 비용 효과성 접근법(cost-effectiveness approach)을 사용하여 가격 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최저 가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격과 '품질'의 조합을 의미함
 - 품질 기준은 기술적 장점, 기능적 특성, 환경적 특성, 고객 서비스, 배송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정부는 GPA에 따라 입찰 평가가 가장 유리한 입찰(Most advantageous tender, 이하 MAT)을 기반으로 할 것을 제안함
 - MAT를 기반으로 하여 수요기관이 입찰을 평가할 때 더 넓은 기준 및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어야 함
 - 이러한 접근법은 MEAT에 따른 현행 규정에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임

2. 조달계약 목적과의 관련성

- 정부는 낙찰 기준이 계약의 목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유지하되 특정 예외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예외 사항은 국무조정실 장관의 법적 지침에 명시된 특정 상황으로 제한됨
- 낙찰 기준과 계약 목적의 관련성은 수요기관이 개별 계약과 관련된 기준을 사용하여 입찰을 평가하고 입찰의 비용 및 이점을 필요조건과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중요함
 - 특정 예외 사항을 허용하는 것은 수요기관이 공급업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달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해줌
- 그러나 계약의 목적과 관련성을 없애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만 계약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허용하고, 이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것임

3. 배제 사유

- 사기, 절도, 부패 및 입찰 공모는 공공조달에서의 주요 위험 사항임. 정부는 공급업체가 사기 및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배제 사유를 명시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함
- 정부는 의무 및 임의 배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첫째, 수혜자(beneficial owner)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자동으로 배제됨
 - 둘째, PCR 규정 제5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및 기업이 수혜자인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함

- 셋째, 세금 미납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무적 요소가 현행 PCR 규정 제57조 제2항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의적 요소가 현행 PCR 규정 제57조 제8항에 포함되도록 함
- 넷째, 기소 유예를 다루는 명백한 배제 사유를 포함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제 사유를 포함하고 기존의 배제 사유를 개정할 수 있도록 1차 입법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것을 제안함

■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이하 DPA)은 기관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기소를 중지하는 협정임. 이는 사기, 뇌물 수수 및 범죄에 관한 문제 해결에 사용됨

- DPA에 따라 기관은 벌금을 지불하고,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감독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해 보상할 수 있음
- 합의 기간 동안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DPA는 종료되고 기소가 재개될 수 있음
- DPA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는 DPA가 명시적으로 임의 배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DP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금지 목록

■ 정부는 수요기관이 공공조달 절차에서 제외해야 하는 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죄 판결을 받은 공급업체의 중앙 관리 금지 목록(centrally managed debarment list)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임

- 중앙에서 관리되는 금지 목록은 공급업체 관리에 일관성과 전략적 관점을 부여하며 부적절 공급업체에 대해 알 수 있음
- 공급업체는 목록에 올라가고 항소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통보를 받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신청할 수 있음

5. 실적 부진

■ PCR, UCR 및 CCR은 공급업체의 저조한 실적 및 성과를 임의 배제 사유로 포함하지만, 그 사유가 적용되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 공급업체가 사전 공공계약(prior public contract)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지속적

이고 큰 결함이 나타나야 함

- 저조한 성과가 사전 종료, 손해 및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져야 함

■ 과거의 성과는 종종 선정 기준에서 기술 및 전문 능력 부분의 일부로 평가됨. 그러나 현행 규정은 기술 및 전문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요기관은 과거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자체 성과평가 또는 조달 과정 중 제공되는 문서 등에 의존해야 함

■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급업체의 성과를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상 공급업체는 과거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계약 종료, 손해 또는 기타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음
- 정부는 공급업체가 이전 공공계약 및 수요기관과의 사전 계약 또는 사전 양허 계약에 따라 실질적 요구사항의 이행에 지속적인 또는 큰 결함을 보인 경우, 배제될 수 있음을 제안함
 - 정부는 이전 계약의 저조한 성과로 공급업체가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임
 - 성과가 저조한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동시에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6. 선정 및 낙찰 기준

■ PCR, CCR 및 DSPCR은 일반적으로 공급업체에 초점을 맞춘 선정 기준과 입찰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낙찰 기준을 따로 구분함

- UCR은 선정 기준을 제한하지 않으며, 대신 기관이 공급업체의 배제 및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규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정 기준은 입찰자의 경제적, 재정적 상태와 입증된 기술 및 전문 능력에 따른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함. 낙찰 기준은 어떤 입찰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됨

-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선정 및 낙찰 기준이 모두 단일 단계 절차(single stage process)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 간의 차이점은 특히 공개 절차의 경우 혼돈될 수 있음

- 정부는 중앙 플랫폼 내의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supplier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제출되는 기본 공급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 단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함
 - 이 정보는 한 번 제출되므로 공급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요기관은 공급업체의 입찰 자격 판단을 위해 정보에 기준(하한선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일부 수요기관은 수요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PCR 규정 제60조로 인해 공급업체의 경제적, 재정적 상태와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함
 - 따라서 정부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을 없애고,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
|--|
| <p>Q13. 계약 체결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EAT)'이 아닌 '가장 유리한 입찰(MAT)'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p> <p>Q14. 낙찰 기준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한 특정 예외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데 동의합니까?</p> <p>Q15. 수요기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없애고 명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합니까?</p> <p>Q16. 재정적 사기 그리고 수혜자(beneficial ownership) 비공개가 자정(self-cleaning)을 조건으로 의무 배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p> <p>Q17. 배제 사유로 추가되어야 하는 다른 사항(임의적 배제 사유로서의 탈세 등)이 있습니까?</p> <p>Q18. 규정 제57조 2항을 개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및 단체가 수혜자(beneficial owner)인 경우, 공급업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p> <p>Q19. 규정 제57조 3항의 세금 미납이 규정 제57조 1항의 의무적 배제와 규정 제57조 8항의 임의적 배제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p> <p>Q20. 임의적 배제 사유에 DPA를 포함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p> <p>Q21. 중앙 관리 금지 목록에 대한 제안에 동의합니까?</p> <p>Q22. 과거 실적을 더 쉽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합니까?</p> <p>Q23.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을 통한 간소화된 선정 단계에 대해 동의합니까?</p> <p>Q24. 규정 제60조에서 공급업체 자체 평가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p> |
|--|

V. 최고의 조달방법 사용

- 현행 규정에는 다양한 조달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일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다름. CCR에서는 이러한 조달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

1. 현행 동적 구매 시스템(Current Dynamic Purchasing System)

- 동적 구매 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 이하 DPS)는 PCR 및 UC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일반적인 물품 및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초기 단계에서 DPS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업체를 수용하고, 기간 내내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체가 DPS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DPS에 있는 모든 공급업체가 제한된 절차에 따라 계약 별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은 DPS 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된 최우수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업체에 낙찰되며, 수의 계약은 허용되지 않음

2. 현행 자격 시스템(Current Qualification System)

- 자격 시스템(Qualification Systems, 이하 QS)은 UCR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공공사업(utility)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일부 조달에서 QS의 목적은 공급업체를 특정 물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등록부에 사전 자격을 부여하여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임
 - 다른 조달에서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시장의 공급업체를 구분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3. 현행 프레임워크 협약(Current Framework Agreements)

- 프레임워크 협약(Framework Agreements, 이하 FA)은 공급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은 가격 및 품질 활용에 대한 수요를 종합할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을 가속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됨
 - FA의 최대 기간은 예외적인 상황(시장 폐쇄 등)을 제외하고, PCR에서는 4년 그리고 DSPCR에서는 7년으로 규정함. UCR는 계약이 낙찰되는 기준만 설정하며, 기간은 8년으로 규정함
- 구매담당부서는 기존 조달방법의 복잡성, 비유연성 그리고 제한성으로 인해 적합한 조달 수단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4. 동적 구매 시스템(DPS+)

- 정부는 온라인 및 기타 시장의 공급업체에 이상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조달방법이 될 DPS+에 대

한 입법을 제안함

- 새로운 공급업체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를 사용하여 DPS+ 내에서 조달이 수행될 수 있음
- DPS+는 일반적인 물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조달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됨
 - 홍보 공지(advertising notice)는 DPS+를 설치하려는 기관을 시장에 통보하고 참여 조건의 세부사항을 설명해야 함
 - 신규 공급업체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파인드어텐더(Find a Tender) 서비스에 시간으로 계속 개방되어 있어야 함
 - 신청 공급업체가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수락해야 함. 공급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없음
 -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이 DPS+에 따라 낙찰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음
 - DPS+에 따른 조달은 새로운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함
 - DPS+에 따라 계약이 낙찰되면 계약 통지서를 발행해야 함

5. 프레임워크 협약(Framework Agreements)

- FA는 많은 양의 물품 및 콜오프(call-offs)¹⁶⁾ 계약을 요구하는 시장에 이상적이며, 특히 수의계약 콜오프가 허용되고 시장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함
 - 정부는 더 긴 계약 기간을 허용하면서 신규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FA를 개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이를 통해 특히 건설 및 인프라 분야와 같이 장기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효율성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대해 '폐쇄형'과 '개방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FA를 수요기관에 제공할 것을 제안함
- 폐쇄형 FA는 최대 4년 동안 FA상의 공급업체 외의 다른 공급업체에 대해 특정 시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관료주의를 축소할 수 있음

16) 콜오프 계약은 FA 아래 체결되는 개별 계약으로 수요기관은 공급업체에 계약에 명시된 가격 및 조건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량 주문을 용이하게 하는 조달로 간주됨(출처: <https://www.converge.today/article/call-off-contracts-what-are-they-and-how-are-they-used>, 검색일자: 2022. 2. 14.)

- 개방형 FA는 모든 공급업체가 FA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함. 만약 구매담당 부서가 4년 이상의 FA를 원할 경우, 신규 공급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FA를 3년 후 최소 한 번이라도 개방해야 함
 - 수요기관은 공고에 FA 재개를 게시하고 FA가 처음 낙찰되었을 때 적용된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신청자를 평가해야 함
 - FA상의 공급업체는 기존 입찰을 기반으로 협약을 유지하거나 업데이트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함
 - 이러한 새로운 개방형 FA에서 신규 진입자는 FA에 낙찰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됨
 -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이 폐쇄형 및 개방형 FA 모두에 적용될 것을 제안함
 - 모든 조달방법을 중앙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모든 입찰 공고를 중앙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달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킴
 - 단일 공급업체 프레임워크(Single supplier frameworks)는 폐쇄형 FA에서만 허용됨
 - 수요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배제 사유가 적용될 경우, FA에서 공급업체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함

Q25. 새로운 DPS+에 대한 제안에 동의합니까?

Q26. 개방형 및 폐쇄형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에 동의합니까?

VI. 공개적이고 투명한 계약

- 영국은 조달 절차를 자동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에 투자했으며, G7 국가 중 최초로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 이하 OCDS)을 사용함
 - 또한 공공조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앙화(centralized) 및 반중앙화(semi-centralized)된 서비스 도구를 개발함
 - 컨트랙트 파인더(Contracts Finder): 영국의 현행 및 향후 공공계약을 위한 단일 무료 포털
 - 공급업체 등록 서비스(Supplier Registration Service):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가 구매 관련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Digital Marketplace):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 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계약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및 문서 공개
- 계약 및 지출 분석 엔진(Contract and Spend Insight Engine, 이하 CaSIE):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관리 도구

- 이러한 서비스 도구에도 불구하고 조달 데이터 공유 및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 조달 지출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데이터 격차 및 한계가 여전한 난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영국은 개방된 공통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조달에 대한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공통된 시스템 운용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정부는 조달 계획부터 계약 낙찰, 성과까지 조달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 및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입찰 문서에 명시하도록 제안함

1.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

- OCDS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위한 무료의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계약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및 문서를 게시하는 방법을 설명함
 - 정부는 모든 수요기관이 OCDS를 준수하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조달 및 계약 데이터를 게시하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함
 - 이는 수요기관, 공급업체, 계약, 지출 및 성과에 관한 데이터가 OCDS에서 호환 가능하며, 공개 및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고 게시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공공부문의 모든 전자조달 관련 시스템이 OCDS를 준수하고, 다른 공공조달 시스템과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2. 중앙 플랫폼

- 정부는 공공조달을 위한 디지털 전략 로드맵 개발을 제안함.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는 중앙 플랫폼 개발을 의미함
 - 서비스(services): 다른 시스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 신원 등에 관한 일련 서비스
 - 투입(inputs): 조달 공고 및 자료와 같이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정보
 - 산출(outputs): 사용자 요구에 맞춘 데이터

- 인터페이스(interfaces): 서비스, 투입 및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과 함께 명시된 인터페이스
- 공급업체가 계약 공고를 검색하고 이전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컨트랙트 파인더(Contracts Finder)가 유지될 것임
 -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는 계속해서 전용 공공조달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조달 플랫폼은 기존 조달 웹사이트와 통합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함
 - 중앙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해야 함
 - API 및 온라인에 게시된 모든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
 - 파인더어텐더(Find a Tender) 서비스 및 컨트랙트 파인더(Contracts Finder) 공고
 - 입찰에 대한 전자 조달 시스템 링크
 - 상용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
 - 공급업체별 그리고 공급업체 간 가격 및 성과 비교
 - 또한 중앙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함
 - 공급업체 등록
 - 상용 도구 등록
 - 지출 데이터 및 KPI를 포함한 계약 성과
 - 중앙 금지 목록
 - 불만사항 등록
 - 법적 이의 제기 등록

Q27. 계획부터 조달, 계약 체결, 성과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 상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Q28. 수요기관이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OCDS)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Q29. 공급업체 등록 정보를 포함하여 상업 데이터를 위한 중앙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Ⅶ. 조달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

-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review system)은 수요기관의 규칙 위반에 대해 적절한 제재 역할을 하고 관련 법률 규칙 해석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 공공조달 체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평가 시스템은 전통적인 법정 기반(court-based) 시스템이며 아래에 명시된 대로 계약 전과 후의 조치 및 해결책을 포함함
 - 계약 전 조치
 - 계약 낙찰 자동 정지
 - 자동 정지 해제
 - 조달 절차 중단
 - 결정 또는 행위 시행 중단
 - 결정 및 행동 보류
 - 수요기관에 대한 문서 수정 요구
 - 손해 배상
 - 계약 후 조치
 - 손해 배상
 - 비효과성
 - 수요기관에 대한 벌금 부과
 - 계약 단축

1. 평가 시스템 개혁

- 정부는 공급업체의 조달 접근성 개선 그리고 수요기관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법정 소송의 영향 감소 등을 위해 조달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원함
- 현재 영국과 웨일스에서의 대부분의 조달 문제는 고등 법원의 기술 및 건설 법정(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이하 TCC)에서 공판함
 - TCC를 통한 사법 절차는 사건의 모든 측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관련 조달 문서의 공개 및 증인 진술을 필요로 함
 - 그러나 긴 재판 과정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장기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관은 때로 합의금을 지불함

- 따라서 TCC 가이드는 소송 진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조달 절차에 대한 지침(Guidance Note on Procedures)을 포함함
 - 정부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민사소송규칙위원회(Civil Procedure Rules Committee)가 TCC와 연계하여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al Rules)을 제정하고 조달 법적 과제를 심의할 수 있는 지침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함
 - 변화의 목적은 향후 평가 시스템을 더 빠르게 하고 비용 부담을 적게 하여 공급업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2. 계약 전 해결책(Pre-contractual Remedies)

- 신속한 평가 시스템으로의 개혁은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때 공급업체가 조달을 재개하거나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호도를 공식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서 이에 대한 선호도를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 도입 및 계약 후 손해 배상을 반영함

3. 자동 정지 폐지

- 현재 법원이 정지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는 1975년 American Cyanamid 사건(특허 침해 의혹)이 확립한 원칙에 의한 것임
 -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17년 조달 소송에서 자동 정지 해제를 위한 공판 중 약 3분의 2가 수요기관에 유리한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자동 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 적용할 테스트를 개정하여 더 적절한 테스트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함
 - 이 테스트는 청구인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해결책에 대한 공익성, 긴급성, 규정 준수 및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4. 손해액 한도 제한

-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심리는 보통 본심 재판 이후에 이루어짐
 - 재판에서 진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법적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며 계약이 대채 입찰자에게 낙찰된 경우, 계약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수익금도 지불해야 함
 - 현재 규정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지급되는 손해액의 범위는 입찰 비용 및 법적 비용과 함

께 손실액의 합계에 해당함

- 높은 손해액은 수요기관이 조달을 더 잘 수행하고 능력을 최적화하도록 장려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시도 등을 꺼려 혁신을 억제하는 위험 회피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정부는 조달 규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법적 수수료와 1.5배의 입찰 비용으로 정할 것을 제안함
 - 이는 조달 규칙 위반에 대한 억제 방법이 될 것이며, 비효율성을 조성하고 혁신을 억제할 정도의 높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됨

5.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의 조달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수요기관이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 비공식 경쟁을 원하면, 실패한 입찰자가 계약의 자동 정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낙찰이 지연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연 위험은 수요기관이 비공식 경쟁에서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위기 및 긴급 상황 조항(crisis and extreme urgency provisions)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계약이 계약 자동 정지에서 제외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공식 경쟁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규정 위반 법적 소송에서 이긴 공급업체는 비효율성, 계약 단축 및 손해에 대해 더 큰 보상을 받게 됨

6. 의무적 낙찰자 정보 공개 폐지(Removing mandated debrief letters)

- 정부는 더 이상 계약 체결 단계에서 낙찰자 정보 공개(debrief letters)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입찰 참가자(losing bidders)에게 낙찰자(winner)의 특성 및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
 - 새로운 투명성 조항에 따라 입찰자는 각 입찰자의 평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채택되지 않은 이유 및 낙찰자의 상대적 장점을 명확히 볼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 서한을 없앨 것을 제안함
 - 이는 특히 입찰자가 많은 경쟁에서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며, 공급업체의 향후 입찰 개

선에 도움이 됨

- Q30. 제안된 법정 개혁이 저비용의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토 시스템이라는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규칙 및 절차가 있다면 추가 사항을 제안해주십시오.
- Q31. 독립적인 수요기관 평가 절차가 평가 시스템에 유용한 추가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Q32. 저액 청구(low value claims)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쟁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재판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Q33. 계약 전 구제책이 계약 후 손해보다 우선권을 지녀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합니까?
- Q34. 자동 정지 목록 테스트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수정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다면 기술해주십시오.
- Q35. 피해를 입은 입찰자(agrieved bidders)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제한하는 제안에 동의합니까?
- Q36.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입찰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까?
- Q37. 위기 또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비공식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 정지 해제가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Q38. 새로운 체제의 투명성 조건 맥락에서 더 이상 낙찰자 정보 공개(debrief letters)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VIII. 효과적인 계약 관리

- 효과적인 계약 관리는 조달 절차가 끝난 후 성과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함. 규제 체제는 계약이 새로운 수요 및 기회를 충족하도록 유연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을 지원해야 함

1. 신속한 지불

- 긴 지불 기간 또는 연체는 기업이 현금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불은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많은 기업에 중요한 문제임
- PCR은 수요기관이 30일 이내에 청구서(invoices)를 납부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1998년 상업부채 연체법(Late Payment of Commercial Debts Act 1998)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음
 - PCR은 또한 공공부문 기관의 청구서 납부 준수 의무에 대한 통계를 매년 공시하도록 요구하

며, 보고서는 수요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함

- 민간부문 기관은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의 성과 비교를 어렵게 함

■ 정부는 공공계약 공급망 전체에 걸쳐 지불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내의 모든 공급업체가 다음의 사항을 통해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보장하도록 제안함

- 모든 기업이 수요기관과 직접 공급망에서 체납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접근 권한 제공
- 공급망 내의 모든 공급업체의 지불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특정 권한 제공
- 공공 및 민간부문 보고사항을 조정하여 지불 성과를 모두 GOV.UK 사이트에서 제공

2. 계약 수정

■ PCR, UCR 및 CCR은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공공계약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그러나 수요기관은 시행하고자 하는 계약 수정의 합법 여부에 대해 불확실할 수 있으며, 특히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명확성을 제공하며 많은 도전 및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최대의 유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국방 및 안보 계약에도 적용될 것을 제안함

■ 정부는 PCR에 기반한 새로운 규정 및 조항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서 계약 수정 허용
- 규정 제72조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
 - 규정 제72조의 완전한 개정보다는 재정리하는 것이 현행 법률과 관련 사례법의 친숙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PCR을 출발점으로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3. 계약 수정 통지

■ 계약 수정 통지는 현재 특정 유형의 수정에 대해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고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정부는 특정 요건에 따라 계약 수정 정보가 항상 공개될 것을 제안함
- 계약 수정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 조달 체제에서는 큰 변화이며, 정부는 수

요기관이 다음과 같은 계약 수정 상황 시에만 통지 발행에서 면제될 것을 제안함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초기 계약 금액의 10% 이하 또는 공사의 경우 초기 계약 금액의 15% 이하로 금액 증감
- 초기 계약 기간이 기존 계약 기간의 10% 이하로 증감
- 계약 범위 변경 불가

-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의 계약 수정을 제외하고, 수정 통지를 발행해야 하는 모든 계약은 수정 시 10일의 정지 기간이 적용됨
 - 즉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는 계약 수정 통지 발행으로부터 10일 후에 수정사항 반영이 가능함

4.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초과 지불 감소

- 계약 정지 기간은 수요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의 지속적인 전달 및 제공을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기존 계약에 대한 연장 형태로 나타남
 - 계약 연장은 짧은 통보와 함께 경쟁 없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기존의 공급업체가 정지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편법을 쓰는 잘못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업체가 기존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줄임으로써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센티브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자 함
- 따라서 법적 문제로 인해 신규 계약의 체결이 중단되는 동안 서비스의 전달 및 제공을 위해 기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계약 연장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수익률은 정부 기준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연장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연장 기간 동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됨

5. 피드백을 활용한 공급업체 우수성 제고

- 수요기관은 공급업체에 성과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공급업체가 이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정부는 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급업체의 조달 수행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설계, 테스트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Q39.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까?

- 공공부문 공급망의 기업은 지불 지연을 확대시키기 위해 수요기관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가?
-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계약 공급망에서 공급업체의 지불 실적을 조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지불 보고 요건을 한군데에 정렬하고 게시해야 하는가?

Q40. 계약 수정에 대한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까?

Q41. 계약 수정 통지(특정 면제사항 제외)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Q42. 기존 공급업체가 새로운 계약 낙찰에 이익을 제기했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의 연장에 대해 이익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참고자료

Cabinet Office, *Transforming public procurement*, 2020,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green-paper-transforming-public-procurement>, 검색일자: 2022. 1. 26.

Converge, *Call Off Contracts-What are they and how are they used?*, 2020, <https://www.converge.today/article/call-off-contracts-what-are-they-and-how-are-they-use>, 검색일자: 2022. 2. 14.

(작성자: 이아름 연구원)

공공조달 개혁: 자문에 대한 답변

– 2021. 12.,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

〈보고서 추천 배경〉

- ◆ 영국 정부는 2020년 발간한 녹색(Green Paper)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2021년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함
- ◆ 정부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향후 새로운 공공조달 체제에 적용할 것이며 이에 관한 지침의 발행 및 학습 프로그램 시행 등을 계획 중임

■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은 EU 기반의 공공조달 규정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는 단순화된 방식을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됨.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영국 국무조정실은 ‘공공조달 개혁(Transforming Public Procurement)’이라는 녹서를 통해 향후 공공조달 입법에 대한 제안서를 발간함

- 정부는 새로운 공공조달 체제를 위해 녹서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을 요청함.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자문 내용과 정부의 답변을 함께 정리함
- 자문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619개의 답변이 접수됨
 - 구체적으로 수요기관 226개, 공급업체 269개, 그리고 교수, 법률 전문가, 일반 대중 등의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124개의 답변을 받음
 - 수요기관의 226개 답변 중 거의 절반은 지방정부였으며, 중앙정부 부처와 주택 및 교육 기관으로부터 32개의 답변이 있었음
 - 공급업체의 답변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등이었음
- 본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1. 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달

■ 녹서는 공공조달의 6가지 원칙인 공익(public good), 비용 효율성(value for money), 투명성(transparency), 정직성(integrity), 공급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 of

suppliers),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를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새로운 국가 조달정책 성명서(National Procurement Policy Statement)에 수요기관이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을 제안함
- 이를 위해 평가 권한을 가진 새로운 공공조달 감독기관의 설립을 제안하며, 수요기관의 조달 규정 준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함

1. 공공조달의 원칙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 제안된 공공조달의 6가지 원칙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과반수(477명 중 92%)가 원칙에 찬성했으며, 원칙에 대한 정의 및 실무적 이행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함
- 지방정부의 많은 응답자들이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를 덜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균등한 대우(equal treatment)’로 바꿀 것을 제안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녹서에서 기술한 대로 공공조달 원칙을 법률에 도입할 것이며,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을 계획임
- 우선, 법률 초안의 공공조달 원칙을 ‘목표(objectives)’와 ‘원칙(principles)’으로 나누어 구별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의무를 더 명확히 할 것임
 - 투명성 원칙은 정보의 품질 및 접근성에 대해 최소 기준을 정할 것임
 - 차별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수요기관이 국내 공급업체와 해외 공급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의무를 의미함
 - 공급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은 평등한 대우 및 조달 절차에서의 공정성을 모두 포괄하여 수요기관에 명확성을 제공할 것임
- 위의 원칙 외에도 녹서에 명시된 다른 개념들은 ‘목표’로 구분되며, 조달 과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새로운 부서 설립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 공공조달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이 질문에 대한 460개의 답변 중 약 절반(52%)이 새로운 부서의 설립에 찬성함.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및 공공부문의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지방정부 등은 중앙집권적 통제에 대한 걱정을 내비침
- 응답자들은 공공조달에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새로운 부서가 공공조달 평가 서비스(Public Procurement Review Service, 이하 PPRS)를 대체하거나 더 강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응답자가 새로운 부서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서의 개입이 조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답변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새로운 부서의 설립에 관한 제안서를 수정함. 부서는 조달감독부(Procurement Review Unit, 이하 PRU)로 명명되며, 국무조정실 안의 작은 팀으로 구성될 것임
- PRU는 현재의 PPRS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지만, PRU의 주요 역할은 조달 규정 위반을 해결하는 것임
 - 이를 위해 PRU는 주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며, 공식 권고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새로운 법률은 PRU에 수요기관 조사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며,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향후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함
- 국무조정실 장관은 이미 2015년 중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제40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조달 수행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운 조달법을 제안함
 - 수요기관의 조달 수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함
 - 수요기관은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수요기관은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하는 통보에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함
 - 장관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3. 전문단(panel of experts)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3. 전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제재(sanction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많은 응답자가 전문단은 공공부문에서 일했거나 공공부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일부는 은퇴한 사람보다는 현직에 있는 사람일 것을 제안함
- 또한, 다양한 유형의 수요기관 대표가 전문단에 포함되도록 하여 조달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별도의 전문단(separate panels) 또는 교대 전문단(rotating panels)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음
- 제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이 처벌은 혁신과 개선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변하며, 경범죄에 대해서는 조언하고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개입하여 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제안함

■ 정부의 답변

- 전문가 선임 절차 등 PRU 및 전문단에 대한 정책은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예정임
- 최종 전문단은 PRU와 협력할 수 있도록 넓은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PRU 관계자들에게 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음

II. 규제 프레임워크 개혁

■ 녹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현행 조달 규정을 단일의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통합할 것을 제안함

- 2015년 공공계약 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이하 PCR)
- 2016년 공공사업계약 규정(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s 2016, 이하 UCR)
- 2016년 양허계약 규정(Concession Contracts Regulations 2016, 이하 CCR)
- 2011년 국방 및 안보 공공계약 규정(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1, 이하 DSPCR)

1.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4. 현 규정을 단일의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응답자의 대다수(474명 중 81%)가 현행 규정을 단일하고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음
- 공공사업 및 방위 부문에 현 규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수요기관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방 안보 측면에서도 공공조달 전반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함
- 일부 응답자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조달 규정에 따른 비임상 서비스(non-clinical services)가 새로운 법률의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을 제안하며, '사용자 중심(user focussed)'의 서비스 제공에 더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부의 답변

- 단일 프레임워크는 조항 간 중복을 없애고 조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촉진함
- 단일 프레임워크의 원칙, 절차, 참여 조건, 계약 낙찰, 법적 사항 및 해결책에 대한 새로운 조항은 현행 규정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한 용어로 제시될 것임
- 정부는 보건 및 사회 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Bill)을 통한 개혁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NHS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과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일관성 있는 조달 체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2. 현행 조달 규정의 특성 유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5. UCR, CCR 또는 DSPCR의 부문별 특성(sector-specific features) 중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43개의 답변 중 일부만이 UCR, CCR 또는 DSPCR의 부문별 특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 UCR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 및 조직의 대다수는 특히 조달 절차와 관련된 현재 UCR의 유

연성, 자격인정 시스템 및 프레임워크 협약(Framework Agreements, 이하 FA)을 유지하기를 원함

- 일부 응답자는 국가 안보, 군비 프로젝트 및 정부 간 조달에 대해 DSPCR의 특정 면제 조항을 유지할 것을 요청함
- CCR에 대해서는 양허계약 체결에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기를 요청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공공사업 부문에 새로운 조달 체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계약을 낙찰하는 기관이 '공공사업체'임
 - 계약은 일반적으로 UCR과 일치하는 규정된 공공사업 활동과 관련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대한 것임
 - 계약의 추정 금액이 현재 물품 및 용역 계약의 하한선인 378,660파운드(한화 약 6억 1,400만원)을 초과하고 공사 계약의 하한선인 4,733,252파운드(한화 약 76억 7,800만원)을 초과함
- 독서에서 제안된 세 가지 조달 절차(공개 절차, 제한 절차,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는 현행 UCR 아래 공공사업체의 자유 및 유연성을 유지할 것임
- CCR의 경우 양허계약의 정의, 금액, 기간 등을 다루는 구체적인 조항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임
- 정부는 민감한 국방, 안보, 민간 조달에 대한 면제 사항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며, 조달 절차에 대한 국방 및 안보 조항이 충분히 유연하도록 보장할 것임
- 정부는 현재 계약 개정 및 제한 입찰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FA 기간 등에 대해서도 방위 및 보안 조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이 이루어질 것임

III. 올바른 조달 절차 사용

- 독서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된 조달 절차를 정비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대적 절차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competitive, flexible procedure): 구매자가 민간 및 사회적 기업 부문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할 자유를 주는 절차

- 공개 절차(open procedure): 구매자가 더 간단한 '표준규격품(off the shelf)' 경쟁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
 - 제한된 입찰 절차(limited tendering procedure): 구매자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
- 정부는 또한 '위기(crisis)' 상황에서 제한된 입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현재 가벼운 체제(Light Touch Regime, 이하 LTR)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조달 행위가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고 LTR을 없앨 것을 제안함

1. 변경된 조달 절차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6. 변경된 조달 절차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응답자들 중 50%가 이에 동의했지만, 이들은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가 현재 수행 중인 조달에 설계와 맞춤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함
- 또한 LTR이 없다면 완전한 조달 체제(full procurement regime)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고, 오히려 유연성이 없어지면서 의료 및 사회부문 용역계약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정부의 답변¹⁷⁾

- 수요기관은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에서 조달 과정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이는 입찰 공고(Tender Notice)에 명시될 것임
 - 입찰 공고는 참여 조건, 계약 기간, 평가 기준, 다단계 절차 등에 대한 것을 다루며, 이를 통해 공급업체에 가시성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법적 의무의 일관성과 준수를 위해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계획이며, 절차 수행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할 것임

17) LTR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12번 질문에서 상세히 이어짐.

2. 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7. 제한된 입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로 '위기(crisis)'상황을 포함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62개의 답변 중 50%가 이에 동의했으며, 일부 응답자는 '위기'의 정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함
- 한편 위기 선언 절차로 인해 오히려 긴급 조달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위기 상황에서의 계약 낙찰 방법에 대한 대중의 가시성 보장에 관한 우려도 있었음

■ 정부의 답변

- 긴급 상황에서 제한된 입찰을 허용하는 현행 조항(PCR 제32조)은 긴급 상황 시 대부분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COVID-19 사태를 통해 상황이 장기화될 때 이러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
- 정부는 '위기'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언'하는 권한을 각료(Minister of the Crown)에게 부여하는 형태로 제한된 입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이는 각국이 공공보건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GPA) 제3조를 기반으로 함

3. 공공조달 혁신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8. 제안된 개혁안이 조달에 더 효과적으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Q9. 수요기관과 소통할 때 본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혁신적인 해결책이나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Q10. 더 효과적인 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Q11. 혁신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공공조달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새로운 체제의 시행을 뒷받침할 학습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일부 응답자는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적극 촉

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

- 또한 혁신적인 입찰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 효율적인 조달, 적절한 계약 기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참여 장벽이 문제로 언급됨
- 일부 응답자는 ‘혁신’에 대한 공통의 이해 구축을 강조하며, 입찰자들의 혁신 요소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 효과적인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었음
 - 통합된 디지털 조달 시스템 구축,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성,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정부의 조달 수행 및 혁신 기회에 대한 통찰력 제공 필요
 - 물품 및 용역의 표준화, 범주화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통해 데이터 품질, 일관성, 거버넌스 및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분석 가능
 - 민감한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지적 재산권 조건, 기밀성뿐만 아니라 수요기관 및 공급업체에 대한 관료주의, 자원 및 비용 증가 가능성 등과 같은 한계 및 장벽 극복 필요
- 다수의 응답자들은 혁신 촉진을 위해 사전조달 시장(pre-procurement market)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 규정의 추가 개혁이 필요한지 또는 추가 지침을 통한 명확성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응답이 있었음
 - 초기 시장 참여: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지침, 교육, 사례 공유 및 학습 등을 통해 솔루션을 공동 설계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를 촉진 및 장려해야 함
 - 혁신을 막는 규제: 혁신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 규제의 부담 및 제약을 해결해야 함
 - 혁신 및 도구: 파일럿 및 테스트 서비스를 상업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혁신, 도구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해야 함
 - 혁신 투자 인센티브: R&D를 지원하고 자금, 보조금을 통해 공급 측면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조치로 혁신을 주도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새로운 법률 내에서 혁신 조달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는 공공서비스 제공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임
- 정부는 수요기관이 입찰 평가에 더 넓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이하 MEAT)이라는 용어를 '가장 유리한 입찰'(Most advantageous tender, 이하 MAT)로 변경할 것임

4. LTR 폐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2. 새로운 경쟁적 유연 절차를 고려했을 때 사회, 보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LTR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총 619명의 응답자 중 43%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는 46%가 LTR 폐지에 찬성했으며 29%는 반대함
 - LTR이 공공부문의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응답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 성인 및 자녀돌봄, 양육, 특수교육 등과 같은 개별 돌봄 서비스는 단기간에 필요한 맞춤형된 전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공공조달과 다르게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LTR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온전한 체제(full regime)의 적용을 받는 계약 수를 증가시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신중히 고려하여 새로운 법률이 특정 서비스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도록 보장할 것임
 - 또한 LTR 제도를 사용해 조달한 적이 없는 서비스를 아예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 현 LTR은 경쟁을 기본으로 간주하며, 지방정부가 부적절한 조달을 처리하고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경쟁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지 고려중이며, 다른 입법 요건과 상호작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IV. 공급업체 선정 및 낙찰¹⁸⁾

- **녹서는 낙찰 기준이 ‘계약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정부가 정한 특정 예외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입찰평가는 수요기관의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유지하되 더 넓은 관점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부정 및 사기와 같은 행위에 대한 배제 조치 시행과 중앙 관리 금지 목록 도입을 제안함
 - 또한 공급업체의 과거 실적 및 성과가 평가에서 보다 쉽게 고려될 수 있도록 조달 체제를 개혁할 것을 제안함

1. 가장 유리한 입찰(MAT)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3. 계약 체결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EAT)”이 아닌 “가장 유리한 입찰(MAT)”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총 492개의 답변 중 77%가 이에 동의함. 응답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의해 수요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봄
 - 그러나 ‘경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량 부족으로 MAT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녹서에 제안된 바와 같이 이를 법률에 도입할 예정이며, 용어의 변경은 수요기관이 평가 기준을 결정할 때 더 넓은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임
 -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낙찰 기준이 비례성(proportionality) 개념을 포함하여 요건에 비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18) 16번부터 19번까지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19번 답변에 요약되어 있음.

2. 낙찰 기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4. 낙찰 기준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한 특정 예외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데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24명의 응답자 중 69%가 이에 동의했으며, 탄소 중립(Net Zero) 정책과 현대 노예제도(Modern Slavery)와 같이 이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음
-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개별 조달 프로젝트에 다양한 예외조건이 도입되면 평가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답변함
 -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수요기관도 추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많은 응답자가 수요기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규정에 대한 목록을 정부가 작성할 것을 제안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계약의 목적과 관련 없는 낙찰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2차 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임
- 이러한 예외 규정 및 면제 조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키고자 함
 - 수요기관이 차별금지, 투명성,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 어떠한 조치도 이를 저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됨
 - 수요기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관은 낙찰 기준을 변경하거나 개정해서는 안 됨
 - 계약의 목적과 관련 없는 낙찰 기준은 장관이 정한대로 이행되며, 수요기관은 특정 2차 법률이 없는 경우 연관성 없는 낙찰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입찰 평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5. 수요기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없애고 명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04명의 응답자 중 58%가 이에 동의했지만, 실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포함. 응답자들은 이러한 평가가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함
- 이에 동의하지 않는 17%의 응답자들은 입찰 평가 범위에 규정을 더 추가하는 것이 수요기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해충돌 또는 부정행위의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평가가 오직 수요기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더 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임

4. 의무 배제 사유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6. 재정적 사기 그리고 수혜자(beneficial ownership) 비공개가 자정(self-cleaning)을 조건으로 의무 배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77개의 답변 중 90%가 이에 동의했지만, 많은 응답자들이 새로운 배제 사유의 범위 그리고 효과적인 자정(self-cleaning)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함
-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공급업체가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는지 수요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이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함
- 많은 응답자들은 수혜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무 배제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기 때문에 이는 의무적이기보다는 임의적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기타 배제 사유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7. 배제 사유로 추가되어야 하는 다른 사항(임의적 배제 사유로서의 탈세 등)이 있습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02명의 응답자 중 54%가 탈세를 배제 사유로 제안했으며, 그 밖의 응답은 다음과 같음

- 현대 노예제도(Modern Slavery)
- 환경 위반 행위(environmental misconduct)
- 성과 저조
- 데이터 보호 실패
- 건강 및 안전 위반
- 많은 응답자들이 배제 사유의 범위 및 공급업체 평가에 대한 명확성과 지침을 요구했고, 한편 임의적 배제 사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임의적 배제 사유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요기관에 대한 도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6.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혜자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8. 규정 제57조 2항을 개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및 단체가 수혜자(beneficial owner)인 경우, 공급업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59개의 응답 중 75%가 이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공공조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함
- 다양한 부문의 응답자들의 공통 우려사항은 무엇이 ‘수혜자’를 구성하는지 정의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다양한 조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해 질문함

7. 세금 미납 조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19. 규정 제57조 3항의 세금 미납이 규정 제57조 1항의 의무적 배제와 규정 제57조 8항의 임의적 배제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60개의 답변 중 78%가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치가 배제 체제(exclusions regime)를 단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일부는 세금 미납이 의무 배제 사유 또는 임의 배제 사유 둘 중 하나에만 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 수요기관은 공급업체 배제 적용 시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공급업체의 세금 상태 확인, 자정

(self-cleaning)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원함

■ 정부의 답변¹⁹⁾

- 응답자들(특히 수요기관)은 배제 사유 범위에 대한 모호성, 배제 사유 적용을 위한 공급업체 고려사항, 과거 위반행위가 고려되는 기간, 그리고 공급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함
- 정부는 새로운 수요기관이 배제 사유를 고려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을 발행할 것이며, 지침은 자기 선언(self-declarations)의 형태 및 방식, 평가 및 자정(self-cleaning), 배제 사유의 적용 여부, 임의적 배제 사유 등을 포함함
- 또한 체제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배제 적용 방식을 바꿀 예정임
 - 의무 및 임의 배제 사유 모두에 대해 5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함
 - 5년의 기간에 대한 시작점은 의무적 배제 사유는 유죄 판결 날짜 또는 규제 결정 날짜이며, 임의적 배제 사유는 수요기관이 사건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알게 된 시점 또는 판결 날짜임
 - 의무적 배제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수요기관이 공급업체가 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음을 명확히 함
 - 필요한 경우 2차 입법에 의해 배제 사유를 개정할 권한을 지님
- 하도급업체 및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제 조항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대체로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임
- 새로운 배제 체제의 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배제 사유의 도입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현행 제도의 배제 사유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유만이 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8. 금지 목록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1. 중앙 관리 금지 목록에 대한 제안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13개의 답변 중 80%가 이에 찬성했으며 4%는 반대함. 찬성자들은 금지 목록이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요기관의 일관된 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답변함

19) 16번부터 19번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

- 한편, 응답자들은 금지 목록의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일부는 객관적 입증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배제 사유 평가에 대해서는 금지 목록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다른 응답자들은 금지 목록이 영국의 공급업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급업체에 상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 공급업체들은 특히 금지 목록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목록이 공공연하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움
 - 자정(self-cleaning)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상소를 통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음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공급업체가 배제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급업체를 금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조정실 장관에게 부여하기로 함
 - 금지 목록은 의무 배제 사유와 임의 배제 사유를 모두 다루며,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업체도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음
- 정부는 응답자들의 우려사항을 참고하여 금지 목록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를 계속해서 고려 중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임
 - 수요기관에 의해 배제된 공급업체는 금지 목록 포함 대상에 고려됨
 - 새로운 조달감독부(Procurement Review Unit)는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 및 자정(self-cleaning) 증거 조사, 사례 검토, 장관에게 권고할 책임 등이 있음
 - 공급업체는 자정(self-cleaning)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5년의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지 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급업체는 금지 목록 포함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

9. 과거 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2. 과거 실적을 더 쉽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35명의 응답자 중 83%가 이에 찬성했으며, 9명만이 반대함. 응답자들은 대체로 실적 부진에 대한 배제 기준이 현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 과거 실적 및 성과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 또는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실적 부진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응답자들은 조달 목표나 핵심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 KPI)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잘못된 계약관리, 납품실패 또는 완전한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일부 응답자들은 서로 다른 계약 유형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KPI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요기관이 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방식을 취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고려하여 과거 실적을 참여 조건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실적에 따른 배제는 향후 공공계약의 이행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만 한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배제 사유를 허용할 계획임
 - 이전 계약이 계약위반 또는 공급업체의 이행부진 등으로 해지된 경우
 - 공급업체가 수요기관이 마련한 계약 조치에 따라 실적 부진 또는 위반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 수요기관에 공급업체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주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 성과 기록부(Contract Performance Register)를 도입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며, KPI 및 공급업체 성과가 이에 포함됨
 - 정부는 공급업체의 성과 부진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기록부에 표시할 것이며, 수요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장됨

10.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3.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을 통한 간소화된 선정 단계에 대해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59명의 응답자 중 56%가 이에 동의했지만, 37%는 시스템 소유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일부 응답자는 ‘간소화된 선정 단계’에서 제안된 것 외에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른 응답자들은 경쟁 및 건전한 시장 유지를 위해 수요기관이 더 넓은 공급업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냄

■ 정부의 답변

- 제안된 시스템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효과적인 단일 전자데이터 시스템이며 공급업체가 직접 시스템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은 조달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조달 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정보는 정확히 검증 가능해야 함
- 참여 조건 기준 설정은 수요기관의 책임이며,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됨
 - 예를 들어 수요기관은 조달 참여에 대한 재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은 공급업체의 감사 및 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급업체는 매번 새롭게 이를 업로드할 필요는 없음
- 수요기관은 공급업체가 배제 사유에 적용되고 자정(self-cleaning)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제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통보해야 함
 - 증거로 무엇을 제출할지는 공급업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제출된 증거는 해당 배제 사유를 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11. 정보 요청 범위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4. 규정 제60조에서 공급업체 자체 평가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46명의 응답자 중 76%가 이에 동의했지만, 정보에 대한 추가 지침 및 명확성을 요청함
- 한편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급업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정부의 답변

- 공급업체는 배제 사유 또는 참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함
- 공급업체가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은 대체 정보 및 증거를 수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등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해야 함

V. 최고의 조달방법 사용

- 녹서는 모든 유형의 조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적 구매 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 이하 DPS+)의 도입과 ‘개방형 프레임워크(open framework)’를 사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협약(Framework Agreements, 이하 FA)에 대한 입법을 제안함

1. 동적 구매 시스템(DPS+)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5. 새로운 DPS+에 대한 제안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14명의 응답자 중 70%가 이에 찬성했지만 DPS+의 개방 기간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의문을 나타냄
 - 공급업체는 DPS+의 사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침 및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요청함
- 일부 공급업체는 낙찰 통지서의 발행은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수요기관 측은 통지서 발행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DPS+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왜 공개 절차가 아닌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응답자의 답변을 고려하여 현행 DPS에 비해 향상된 유연성이 반영된 본 조달방법을 다이내믹 마켓(Dynamic Market)으로 명명할 것임
 - 이 방법의 사용은 일반적인 조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률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유형의 물품, 용역 및 공사 조달에 사용할 수 있음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체가 다이내믹 마켓(Dynamic Market)에 참여하면 경쟁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됨

- 신규 공급업체는 협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 및 계약 체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이내믹 마켓(Dynamic Market)은 최소 2단계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유일한 절차는 경쟁적이고 유연한 절차임
- 다이내믹 마켓(Dynamic Market)은 전자 기반 시스템이며 공급업체가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에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정보를 관리하게 됨
 - 정부는 수요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공급업체를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2. 개방형 및 폐쇄형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6. 개방형 및 폐쇄형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총 352명의 응답자 중 73%가 이에 동의했으나, 공공사업 부문의 응답자는 64%가 반대함
 - 공공사업 부문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기간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일부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폐쇄형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이내믹 마켓(Dynamic Market) 중에서 수요기관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수요기관에 적절한 지침과 교육을 요청함

■ 정부의 답변

- 공공사업 부문의 우려사항과 관련해서 이전에 UCR이 다루었던 공공사업은 폐쇄형 프레임워크에서도 장기 계약을 낙찰할 수 있도록 제안함
 - 모든 유형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정당성이 입찰 공고에 공지되고 계약이 프레임워크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최대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개방형 프레임워크의 최대 기간은 8년이며, 최소 두 개의 공급업체를 포함해야 함. 이는 수요기관의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체 조달 절차를 수행할 때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하나 이상의 공급업체가 있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프레임워크에서 수요 기관은 공급업체에 콜오프²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 콜오프 계약은 FA 아래 체결되는 개별 계약으로 수요기관은 공급업체에 계약에 명시된 가격 및 조건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량 주문을 용이하게 하는 조달로 간주됨(출처: <https://www.converge.today/article/call-off-contracts-what-are-they-and-how-are-they-used>, 검색일자: 2022. 2. 14.)

- 두 개의 프레임워크 모두 배제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급업체가 콜오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중지할 수 있음
- 정부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달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계획임

VI. 공개적이고 투명한 계약

- 녹서는 계획에서부터 조달, 계약 체결, 성과 및 완료까지 상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며 데이터가 공유 및 분석될 수 있도록 모든 수요기관이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 (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 이하 OCDS)을 사용하도록 제안함

1. 투명성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7. 계획부터 조달, 계약 체결, 성과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 상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02명의 응답자 중 91%는 투명성이 공급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며,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함
 -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응답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다른 응답자는 특정 정보 공개가 공급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냄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달 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임
 - 낙찰 공지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정부는 평가서를 모든 참가자와 공유하도록 하고,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들은 각자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보낼 것을 제안함
 - 이는 상업적 기밀성을 보존하며 시장 경쟁의 균형을 맞추고 낙찰자 선정 이유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함
 - 또한 정부는 정보가 한곳에 있을 수 있도록 정보를 입찰 공지(Tender Notice)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계약 이행 공지(Contract Implementation Notice)를 도입하여 공공계약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OCDS)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8. 수요기관이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OCDS)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02명의 응답자 중 77%가 이에 동의했으며 소수의 응답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침, 교육 및 개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함

■ 정부의 답변

- OCDS의 도입은 데이터 품질 및 정보 처리 상호 운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 정부는 OCDS를 시행하기 위해 수요기관 전자 입찰 시스템 등의 제공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3. 중앙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29. 공급업체 등록 정보를 포함하여 상업 데이터를 위한 중앙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25개의 답변 중 80%가 이에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공급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요기관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찬성자들 중 59%는 중앙 통제의 정도와 플랫폼 구축의 실용성, 특히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응답자들은 기존의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 방안,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 등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냄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디지털 플랫폼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
 - 플랫폼은 중앙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됨
- 중앙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는 허가에 따라 게시되며 기타 정보를 등록하거나 접근하기 위해서는 추가 등록이 요구됨

Ⅶ. 조달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

- 독서는 신속한 문제 해결 및 높은 접근성을 위한 조치의 도입을 포함하여 법원 절차에 대한 개혁을 제안함

1. 법정 개혁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30. 제안된 법정 개혁이 저비용의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규칙 및 절차가 있다면 추가 사항을 제안해주시십시오.

■ 응답자들의 답변

- 385명의 응답자 중 80%가 이에 찬성했지만, 이러한 개혁이 오히려 더 많은 도전 및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평가 시스템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
 -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및 기술 및 건설 지침(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Guidance)의 변경은 법무부 및 민사소송규칙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됨

2. 자동 정지 목록 테스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34. 자동 정지 목록 테스트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수정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 응답자들의 답변

- 315명의 응답자 중 60%는 조달 특정 테스트의 개발이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의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에 동의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조달에서 사용하기 위해 테스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고안 중인 새로운 테스트는 단순한 단일 테스트임을 강조함

3. 자동 정지 해제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37. 위기 또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비공식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 정지 해제가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60명의 응답자 중 70%가 이에 동의했지만, 7번 질문(위기 조항 관련)에 대한 답변처럼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투명성과 면밀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 전 통지를 요구할 것임

4. 의무적 낙찰자 정보 공개 폐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38. 새로운 체제의 투명성 조건 맥락에서 더 이상 낙찰자 정보 공개(debrief letters)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420명의 응답자 중 20%는 이에 동의했고, 30%는 반대함. 나머지 절반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불확실하다고 답변하며 투명성 조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함
- 반대자들은 조달 절차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또한 낙찰자 정보 공개는 예전부터 공급업체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해왔던 것을 강조하며 투명성 조항이 과연 입찰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응답자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낙찰자 정보 공개 폐지가 입찰자에게 결코 정보를 적게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정부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계약 정지 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재평가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낙찰 공고는 수요기관의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시장에 조달 결과, 예상 계약 금액 및 모든 입찰자의 신원을 통보함
 -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 의사를 알리는 낙찰 통지를 발행할 때 수요기관은 입찰자들에게 낙찰자에 대한 평가 문서를 추가로 제공할 것임
 - 모든 입찰자에게는 낙찰자의 정보를 자신의 정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정되지 않은 자체 평가 문서가 제공됨
 - 수요기관은 원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낙찰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VIII. 효과적인 계약 관리

- 녹서는 공공부문 공급망의 지불 지연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또한 위기 상황에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해 수요기관이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1. 지불(payment)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39.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까?

- 공공부문 공급망의 기업은 지불 지연을 확대시키기 위해 수요기관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가?
-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계약 공급망에서 공급업체의 지불 실적을 조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지불 보고 요건을 한군데에 정렬하고 게시해야 하는가?

■ 응답자들의 답변

-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으며 아래는 각 질문에 대한 찬성자의 비율 및 답변임
 - 319명의 응답자 중 70%가 지불 지연 확대를 위해 수요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찬성함
 - 307명의 응답자 중 86%가 공급망에서 지불 실적을 조사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제안에 찬성함
 - 279명의 응답자 중 87%가 공공 및 민간부문 지불 보고 요건을 정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 응답자들은 특히 과거 체제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공급망 지불 실적에 대한 특정 조사 권한에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함
- 한편 공급망 내 기업들이 지불 지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사항은 계약상 프라이버시 유지에 관한 것이었음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응답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불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하청업체로부터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며 이는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와의 계약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
- 또한 지침을 통해 공급업체가 익명으로 컴플레인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고 하청업체가 어떠한 정보를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임

2. 계약 수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40. 계약 수정에 대한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응답자 320명 중 74%가 이에 동의했으며 지방정부가 가장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위기 상황에서 계약 수정을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함
- 그러나 일부는 건설이나 공공사업 계약의 경우 계약 수정이 유연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공공사업 및 UCR 사용자들은 현 체제 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던 조치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정부의 답변

- 정부는 계약의 수정을 돕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현행법의 조항들은 수요기관의 규정 준수 및 요구 충족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불명확함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수요기관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3. 계약 수정 통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Q41. 계약 수정 통지(특정 면제사항 제외)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 응답자들의 답변

- 392명의 응답자 중 76%가 이에 동의했지만, 수정 통지를 작성 및 발행하는 업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는 통지를 요구하는 기준점이 너무 낮다고 답변함
- 방위사업 부문의 일부 공급업체들은 계약 수정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추가 절차와 행정비용이 추가되어 별 장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큰 규모의 계약의 경우 수정사항이 상당하여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음

■ 정부의 답변

- 계약 수정 통지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계약 기간 동안 공적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시적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계약 수정 통지는 제3자에게 수정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
- 계약 수정 통지가 수요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응답자들의 답변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국무조정실 장관에게 면제 하한선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참고자료

Cabinet Office, *Transforming public procurement: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2021,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green-paper-transforming-public-procurement/outcome/transforming-public-procurement-government-response-to-consultation>, 검색일자: 2022. 1. 26.

Converge, *Call Off Contracts - What are they and how are they used?*, 2020, <https://www.converge.today/article/call-off-contracts-what-are-they-and-how-are-they-use>, 검색일자: 2022. 2. 14.

(작성자: 이아름 연구원)

◆ 편집

장우현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편집총괄)
임소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실무총괄)
강경민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변이슬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소준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심태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아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은솔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응준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형석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2년 봄(Vol. 9 No. 1) |

2022년 3월 27일 인쇄

2022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표), <http://www.kipf.re.kr>

등 록 세종, 바00027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SN 2635-712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